

광명지역 삼일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

성동수 편저

광명문화원

광명지역 삼일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



3·1 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 발상지 기념비

◆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관리번호】 14-1-05

【관리자】 광명온신초등학교

【소재지】 광명시 노온사동 361-2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3월 27일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이정석(李貞石)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일본경찰에 강제연행되어 노온사리 경찰주재소에 구금되자 지역주민 200여명이 모여 주재소를 중심으로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이정석의 구출을 꾀했으나 모두 체포되어 추동자들은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언도받았다. 광복 후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및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고, 광명시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애국심을 기리고자 3·1 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 발상지 기념비를 건립(1995.11.25)하게 되었고, 2002년 11월 30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

3·1 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 발상지 기념비

이곳은 일제(日帝)의 강권적(強權的)인 식민지 통치에 항거 一九一九년 三·一 독립만세 운동시기에 광명지역의 첫 봉화(烽火)를 올려 민족혼을 빛낸 곳이다.

이 고장의 三·一 운동은三月 二十七日 당시 시흥

군 서면 소하리 거주 이정석(李貞石)

이 독립운동을 선동한 끝에 이튿날

일본경찰에게 강제연행되어 노은

사리 경찰주재소에 구금되면서부

터 비롯되었다.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원(李宗遠)은 아들의 구금사

실을 기독교인 최호천(崔浩天)에

게 알람으로서 당시 배재고보학

생 윤의병(尹宜炳), 농민 류지호

(柳志浩), 최정성(崔正成), 김

인한(金仁漢), 최주환(崔周煥),

김거봉 등은 모임을 가진 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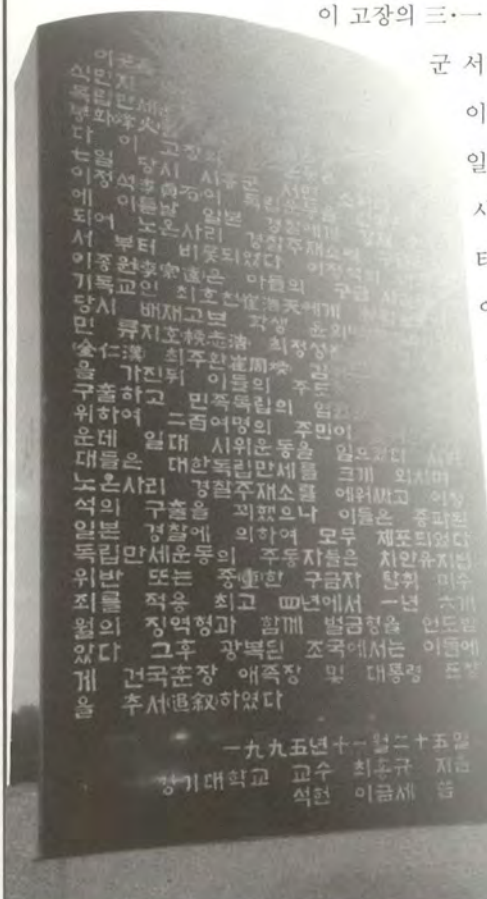
들의 주도하에 구금자를 구출

하고 민족독립의 염원도 밝히

기 위하여 二百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 데



일대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들은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노온사리 경찰주재소를 에워싸고 이정석의 구출을 꾀했으나, 이들은 증파된 일본 경찰에 의하여 모두 체포되었다. 독립만세 운동의 주동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 또는 중(重)한 구금자 탈취미수죄를 적용 최고 四년에서 一년 六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언도받았다. 그 후 광복된 조국에서는 이들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및 대통령 표창을 추서(追叙)하였다.

一九九五년 十一月 二十五日

경기대학교 교수 최홍규 지음

석현 이금세 씀

발 간 사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지난 과거를 얘기합니다.

‘지나간 일을 접고 앞으로 올 새날을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 사라져 버린 무화된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 현재 속에 와 있는 과거, 즉 현재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과거를 파악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가능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디에도 식민의 세월을 놓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광명도 마찬가지여서, 곳곳에 항일의 흔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광명지역 항일운동의 역사!

이곳도 다른 지방과 다름없이 사람이 살고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역시 민족의 주체성을 살려나가기 위해 피땀 흘린 역사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며, 좁은 광명지역 내에서 때로는 기뻐서,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건, 아픈 상처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일이며 그 삶의 기록들이 모여 우리의 땅
이 되고,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장 사람들이 살고 투쟁했던 땅
과 고향들이 모이고 모여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집결이 우
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향토 사료라는 것이 진부한 지방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
고 있는 삶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의 다름아님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이제 문화
원에서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이런 자료들이 발간되어 보다 깊이 있는 역사적 논
의로 발전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도 함께 해 봅니다. 지금의 작은 걸
음이 훗날 우리를 기억하게 될 우리의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항일운동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듯이 말입니다.

광명문화원 원장 안수남

격 려 사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미래를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의 문화적 주변성에서 탈피하여 문화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광명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고, 유·무형의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연구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라 하겠으며, 광명의 문화, 역사 등 여러 분야의 밑도 있는 논의들은 시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조들이 광명지역을 배경으로 삶의 개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바를 기록한 <광명지역 3·1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책에 수록된 광명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그 빛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자료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결실을 맺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신 필자 성동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광명문화원 안수남 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 수록된 연구 및 자료 발굴의 결과들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 활동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광명지역 3·1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06년 12월

광명시장 이효선

<광명지역 3·1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을 발간하면서



2006년이 저물어 가는 문턱에서 광명지역에서 일어났던 1919년의 3·1독립만세운동과 1898년과 1904년에 발생한 시흥군 민요사건(농민항쟁)에 관한 사료(史料)를 수집하고 집대성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으면서 경성방송국 단파방송사건도 첨부하여 마무리하면서 나의 능력과 역량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공개되어왔던 부분을 밝혀 독자나 후세에게 좋은 역사적인 사료나 문헌을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팔십 평생을 향토를 사랑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황혼을 뜻있고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광명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내 고장의 선열들께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그 기개와 기상을 후대들이 그 혼을 이어받아 의로운 정신을 함양하게 되고 구

한말 선인들이 부정부패와 불의에 항거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목숨을 걸고 항쟁한 자손들이 그 뜻을 이어 의로운 마음 영원히 간직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발단과 계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아쉬움을 표한다면 3·1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있어 관계기간은 관심이 더하였으면 하는 마음과 100여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농민항쟁”에 관한 발상지 기념물 조성과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역사적 조명을 받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낳고 자라고 성장하여온 고장 「광명」에는 무궁무진한 유적과 유물들이 풍부합니다. 향토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힘을 합하여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도록 노력합시다.

2006년 12월 1일

<향토사 연구가> 성동수

차례



발간사

격려사

〈광명지역 3·1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을 발간하면서

1.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17

〈3·1운동사〉 국가보훈처 공훈록에서 머리말을 대신하여 | 이은상 19

2. 3·1독립만세운동 25

제1장 3·1독립만세운동의 배경 27

제2장 3·1독립만세운동의 추진 32

제3장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41

제4장 3·1독립만세운동의 의의 53

3. 서울·경기도의 3·1독립만세운동 57

제1장 국토상의 위치 59

제2장 항일운동의 전통 60

◆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시흥군) | 정진각 62

4.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69

제1장 3·1독립만세운동 개관 71

제2장 광명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배경 75

제3장 광명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80

제4장 시흥에서의 만세운동 | 시흥군지 86

제5장 서면 | 현, 광명시 88

5.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재판 판결 번역문 89

제1장 판결번역문 91

제2장 판결 96

□ 3·1독립만세운동 유공자·항일독립운동가 111

6.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_성우경 145

제1절 19세기 조선왕조의 사회적 상황 147

1. 세도정치와 지배체제의 문란 147

2. 수취제도의 문란 153

3. 농민의 저항 157

제2절 제1차 농민봉기 159

1. 농민봉기의 동기 159
2. 농민봉기의 성격 167
3. 농민봉기의 발발 173
4. 농민봉기의 결과 178

제3절 제2차 농민봉기 181

1. 농민봉기의 원인 181
 2. 농민봉기의 경과 189
 3. 증언 196
 4. 농민 봉기의 결과 202
- 시흥지방 농민 봉기에 관한 사료 205
 - 시흥군 민요 재판 선고 기록문서 208
 - 판결선고서 국역문 210
 - 피고재판일지 214
 - 연루자 명단 215
 - 광명지역 독립운동가_성우경 218

7.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해외연락사건과 성기석 225

제1장 단파방송사건을 재조명한다_유병은 227

제2장 “해외방송을 들은 게 무슨 죄가 되나?” “오늘을 사는 게 면목이 없다” | 성기석 237

제3장 성기석 242

부록 249

1. 경기도 광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일람표 251
2. 주요 인용 문헌 및 약호 253



0114

1 —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여 백

1. 3. 1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3·1운동사〉 머리말을 대신하여

3·1 독립만세운동은 한국 민족의 역사상에 던져진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동방의 백의민족, 우리 겨레가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허다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칼 부리를 맞대면서, 민족의 존영을 위해 피의 항쟁을 쉬어 본 적이 없었지마는, 국토의 전부가 남의 손에 들어가고, 국민 전체가 큰 환란을 당하기는 다만 일제에게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곡을 벗어나려고 대동단결로 울부짖었던 일은 그 전 어느 시대의 항쟁에서도 비길 수 없는 처절한 것이었으며, 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자극된 민족의 자각이야말로 우리 문화사상사 위에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을 넘는 한 고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족의 굴욕은 죽음보다도 오히려 참기 어렵고, 자유의 희원은 생명보다도 차라리 강한 것임을 밝혀 증명해 보인 그 날의 운동은, 털끝 만한 타산도 없이 다만 순정한 출발 그대로, 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오직 확고한 신조 그대로, 그리고 또 한 발자국의 머뭇거림도 없이, 필경 겁냄이 없는 실천력 있음을 안팎에 나타내 보인 채, 민족사 내지 세계사 위에 영원히 끼친 불멸의 녹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왜 지나간 한때 우리 역사 위에 굴욕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던가?

남의 침략도 침략이려니와, 그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약하고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지어진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만일 그 운동이 없었다면 무엇으로써 역사의 문책에 대답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의 혈관 밑바닥에서부터 그 같은 힘이 용솟음칠 수 있었던 것

에 우리는 찬송보다도 차라리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돌발적으로 생겨난 힘이 아닌 것이다. 몇 천년 누려 온 역사의 밑바닥 흐름 속에 언제고 간단없이 전통 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안으로 혹은 밖으로, 정치적 또는 사상적으로, 압박과 침략에 견딜 수 없는 최후의 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반드시 활화산 같은 탄발력 있음을 나타내고야 말았던 것이니, 우리 역사상에는 이 같은 저항의 대목이 과연 한 두 번이 아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이란 것도 실상 따지면 역대의 민족 저항운동에 깊은 뿌리를 박은 전통적인 힘의 발로였다고 볼 것이며 다만 그것이 전에 없었던 다른 민족의 최고도 탄압이라는 치욕적인 정치적 사태에 부딪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일 따름이다.

경술년 국치의 기록을 지은 이후 10년 동안 총칼의 위협 아래서 얼른 보면 공포 밖에 없었고, 위축 밖에 없는 것 같았으되, 필경 민족의 혈관 속에 맥맥히 뛰고 있던 그 불굴의 피가 무서운 항쟁력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불멸의 의기를 입증해 보인 것만으로도 3·1독립만세운동의 의의와 가치는 높이 평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다시 그 위에 그 운동을 일대 획으로 민족사 위에 스스로 하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했던 것까지 헤아린다면 3·1독립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이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연 3·1독립만세운동 속에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자각을 가졌었고, 거기서 다시 새 문화, 새 교육, 새 사상을 향한 민족의 대행진이 새 출발을 얻었던 것이다.

언론기관이 창설되고, 우리말·우리글 운동이 전개되고, 새 교육기관이 왕성해졌음을 보거니와, 그 모든 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 그 자체의 성격과 함

게 타동적이 아닌 자동적이었고, 기회적이 아닌 본격적이었으며, 또 변칙적이 아닌 원칙적이었으므로 그것을 통한 우리의 노선과 지향은 너무도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은 묵은 시대와 새 시대와의 사이를 뚫어 놓은 운하(運河)이었고, 어둠 속에서 민족 행진의 앞길을 비추는 조명탄(照明彈)이었음과 동시에, 새 문화·새 사조의 산실(産室)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같이 3·1독립만세운동은 원칙적이요, 본질적이면서, 현실적이요, 활용적인 곳에 더 큰 뜻을 가진다. 민족의 살길을 일러 주는 큰 교본이요, 산 경전이며, 민족 행진을 바로잡아 주는 나침반(羅針盤)이요, 신호등이다.

그리고 민족의 비원을 새겨 놓은 참성단(塹城壇)이요, 금자탑이며, 민족집단을 지켜 주는 위수대(衛戍臺)요, 철옹성(鐵甕城)인 것이다. 지울 수 없는 민족의 발자국인 그대로 뚜렷한 이정표(里程標)가 되었고, 씻을 수 없는 민족의 피발림인 그대로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3·1독립만세운동이면서 현재의 3·1독립만세운동이요, 또 그대로 영원한 미래의 3·1독립만세운동인 것이다.

그 시간 시간마다에 생동하고, 그 장소 장소마다에 유통되는 3·1독립만세운동인 것이다. 한국 민족의 세포에 비고 스미어 마멸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될, 벗어날 수 없는 인과(因果)인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이야말로 민족정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곤곤한 흐름이 마르지 않아야 하며, 또 민족 수련(修鍊)의 성화(聖火)이기 때문에 그 황황한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 몸이 그 흐름 속에 잠겨 있고, 그 불빛 속에 들어 있어, 그 것 때문에 우리 본성과 천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보존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이 같이 우리 민족의 부활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치욕의 역사를 오히려 씻을 수 있었고, 더욱이 그것의 성격과 형태로 말할지라도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의 전 국토를 통하여, 또 지도층으로부터 학생·부녀자·무식 대중에 이르기까지의 전 국민이 한 때 한 덩이를 이루어 그 위에 맨 주먹으로 총칼 앞에 용감히 나섰던 무저항 운동이면서 추호의 후퇴도 굴복도 좌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3·1독립만세운동은 세계 어떤 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도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이요, 전형적인 한국 민족 특유의 운동이 아닐 수 없었고, 또 우리들 자신의 전체 독립운동을 통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동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1895년 을미년 국모 시해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의병항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945년 민족 해방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 동안 국내 국외에서 온갖 형태와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독립운동을 통하여 그것의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은 바로 이 3·1독립만세운동인 것이며, 또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전체의 독립운동을 불러 일으킨 사령탑 노릇을 한 운동이 또한 이 3·1독립만세운동이었던 만큼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이 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정확히, 보다 더 신중히, 보다 더 세밀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이 방면의 편찬 저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개괄적으로 다루어져서 소략한 것들이요, 또 그 위에 편협, 과장, 잘못된 곳을 지적할 수 있는 것들도 없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적 측의 가감 조작된 기록을 그대로 맹신한 무비판적인 서술이나, 또 한갓 자료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정확한 3·1독립만세운동을 편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전면적인 세밀한 조사를 행하고 또 적 측의 재판기록까지 일

일이 대조하여 거기에 의거한 믿을 수 있는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그 날 우리 민족의 뜻과 모습과 움직임을 여실한 그대로 후세에 전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실로 뜻하는 바는 결코 한갓 충실한 기록 그것에서 의의를 찾자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란, 다만 부질없이 죽은 시간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개인이나 민족이 오늘과 내일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거기에 더 큰 뜻이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이 역사를 대서특기로 편찬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편찬하는 동안 다른 한 편으로 슬픔과 아픔을 금치 못하는 사실이 있음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온갖 유혹의 검은 손에 사로 잡혀 마침내 그 날의 애국자가 다음 날에는 변절자가 되고 또 어제는 민족운동자 이었던 것이 오늘은 공산주의자로 변모되어진 사실 그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및 서명자들 속에서부터 남북 각처 운동의 일선에 섰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반민족행위자들의 행장을 더듬어 그 같은 과오를 저지른 사실들을 헤아려 볼 적에 우리는 먼저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고, 아니 그 보다는 오히려 어떤 분노조차 참지 못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춘추필법에 의한 단죄의 문자를 남기고도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그 같은 서술은 경솔히 다루기 어려운 일이기도 할 뿐 아니라, 또 역사 편찬상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부득이 낱말이 지적하는 방법만은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먼저는 3·1 독립만세운동의 큰 뜻과 더불어 많은 애국자들의 피 흘린 운동 그것에서 같은 감명을 받는 것으로써 축하하며, 그 다음 그들 중에서 뒷날의 역사 행진을 욕되게 한 자들이 없지 않음을 서릿발같이 예민하게

주시하여 그 사실마저 우리들의 거울을 삼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는 본시의 거룩한 뜻 그대로와, 또 사람들의 움직임과 변질, 변모 등 모든 사실 그대로를 모두 다 받아들여 선악 아울러 우리들의 생활의 준칙을 삼을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결코 어떤 역사 교단에서 설명하는 연대표도 아니요, 횡수나 따지는 축제일도 아니며, 또 입으로 외우는 주문(呪文)이나 회고하는 이야기 자료도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행할 것이요, 지속할 것이요, 생활할 것이다.

말살할 수도 없고, 말살되어서도 안 될 민족의 유일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신봉자, 전도자, 발휘자가 되어야 할 따름이다.

우리에게는 조국과 자유를 위한 정열과 염원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선행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일체의 지식과 일체의 사고와 일체의 움직임이 오직 민족자주의 대원칙 속에서 여과(濾過)되어야 하며, 순화(醇化)되어야 한다.

이것이 3·1독립만세운동사의 편찬 취지요, 표준이요, 의의요, 가치다.

그 날의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함과 동시에 그 정신이 자손 만대를 통하여 민족의 계명이 되게 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들의 본원이 있는 것이다.

1971년 10월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노산 이은상

2_ 3·1독립만세운동



여 백

제1장 3·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高宗 13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할 때부터의 일이다.

이 조약 이후 일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청일전쟁(淸日戰爭)·갑오경장(甲午更張)·을미사변(乙未事變)·노일전쟁(露日戰爭) 등 큰 사건을 여러 번 일으키고, 1905년(光武 9년) 노일전쟁에 승리한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협박하여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등 오적(五賊)만의 서명을 받아 불법으로 소위 보호조약이라 하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하는 동시에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내정(內政)까지도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1910년에 이르러서는 형식만 남아있던 우리나라 주권마저 강탈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을 완전히 병합하는데 성공한 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시켜 나아갔다.

정치적으로는 통감부를 총독부(總督府)로 개칭하여 중앙통치 기구로 하고, 헌병 경찰의 포악한 군사력을 항일 투쟁의 진압에 동원시키며, 이를 식민 사업의 추진력으로 삼아 소위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실시하였다. 그 무단정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의 하나가 관리의 복제(服制)였다.

총독부는 그 산하 경찰관은 물론 일반 문관·교원에 이르기까지 금테 두른 모자에 칼을 차게 하여 복장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위압하게 하였다.

헌병 경찰에 의한 철저한 감시, 잔혹한 형옥(刑獄) 제도, 극도의 언론 탄압 등을 포함하는 일본 무단정치의 목적의 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당한 민족적 저항을 봉쇄하는 일이었다면, 그 목적의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의 재산을 분원

적으로 탈취하는데 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 척식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하여 국치 전에 설립한 회사이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척식이란,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인 농민을 한국정부 책임 하에 정착시키는 극악의 식민지 수탈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가 설립될 때 일본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방대한 면적의 전답과 임야를 내놓게 하고, 국치 때까지 그 빚 투성이의 재정 중에서 매년 거액의 보조금까지 각출한 뒤, 일본은 일본인 이민을 모집하여 1인당 평균 2 정보의 토지와 이주비를 대주고, 영농이 되고, 또 근소한 자본으로 자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이주자나 군소 상업자본의 편익을 돌보아 주는 것은 그들의 식민지 정책으로서는 오히려 초보적인 것이었고, 결국은 일본 독점자본이 상륙할 수 있는 정지(整地)작업에 그 궁극의 목적이 있었다.

우선 토지·임야 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일, 그리고 철도·도로·항만·통신·전기 등 중요시설을 확보하고, 화폐·금융제도·조세·회사제도 등을 확립하는 일 등이 모두 그러한 목적에서 철저한 일본인 특혜 위주로 추진되었다.

강권을 배경으로 한 일본자본의 이 같은 수탈적 침투는 곧 농촌 수공업의 해체, 민족자본의 쇠퇴, 소지주의 몰락과 자작농의 소작농화 등 전래의 토착 경제에 대한 급격하고도 심각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과 문화 정책으로는 그들의 기본 정책에 맞추어 우매한 민중의 교육과 식민지 동화정책을 목표로 삼고,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기에 주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부당한 침략정치가 감행되자, 이에 항거하는 의병(義兵)·열사(烈士)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총독부는 더욱 더 강력한 무단정치로서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는 한

편, 민족 고유문화의 말살, 경제적 지배의 철저화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중국(中國)·만주(滿洲)·노령(露領)·미주(美洲) 등의 해외로 망명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지하로 들어가 비밀리에 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중에 미국(美國) 대통령 윌슨(Wilson)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원칙 발표가 있었다.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戰後處理) 원칙 14개 조항의 일부로 1918년 1월에 제기된 것이다.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연합국과 대결했던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에 속해 있던 식민지에만 적용하려던 것이었으나 이 원칙은 모든 피압박 민족들에게 하나의 복음(福音)으로 받아들여졌고, 각각 자기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원칙을 해석하여 독립을 외치게 되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발표가 있자, 이에 맞추어 우리 민족의 독립을 호소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하여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이었다.

이들 재미교포는 이해 12월 1일 재미 한인 전체 대표자회의(在美韓人全體代表者會議)를 소집하고 이듬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우리의 대표를 보내기로 결의, 그 대표로서 이승만(李承晩)·민찬호(閔燦鎬)·정한경(鄭翰景) 등 3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파리행은 미국 정부가 여권을 발급치 않아서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일본 동경(東京)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고베(神戸)에서 영국인(英國人)이 발행하던 신문 「저팬 애드버타이저

(Japan Advertiser)」12월 1일자의 보도 기사에서 이승만 등의 민족대표가 파리에 파견된다는 것을 알게 된 동경유학생들은 회합을 거듭하면서 독립운동 문제를 논의한 끝에, 다음 해인 1919년 1월 상순에는 최팔용(崔八鏞)·윤창석(尹昌錫)·김도연(金度演)·이종근(李鍾根)·송계백(宋繼白)·최근우(崔謹愚)·백관수(白寬洙)·김상덕(金相德)·서춘(徐椿)·전영택(田榮澤)을 실행위원으로 선출하여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실행위원 중 전영택은 신병으로 중도에서 물러나고, 그 대신 이광수(李光洙)·김철수(金喆壽)가 추가되었는데, 이들은 2월 8일을 기하여 재일본 동경 조선독립 청년단(朝鮮獨立 靑年團)의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확정하는 한편, 본국의 민족 지도자들과의 연락을 위해 1월 중순에 송계백을 서울에 파견하였다.

한편 신규식(申圭植)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집결되어 있던 중국 상해(上海)에서는 때마침 윌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特使)로 중국 정부에 파견되었던 크레인(Charles R. Crane)이 내도한 기회에 신한 청년단(新韓靑年黨)의 여운형(呂運亨)이 그와 회견하여 조선 민족도 그 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에 접하게 되었다.

신한 청년당은 곧 크레인을 통하여 파리 강화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 독립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또 이들은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민족대표로 김규식(金奎植)을 선정, 먼저 김철(金澈)이 국내로 들어와 천도교에서 여비를 조달하여 돌아가 2월 초에 김규식을 파리로 향하게 하였고, 이와 전후하여 여운형을 노령, 장덕수(張德秀)·선우 혁(鮮于赫)을 국내로 각각 파견하고, 또 서·북간도와 미국 본토·하와이에서 밀서를 보내어 국내외에서 일대 민족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상해에서 국내로 들어온 밀사 가운데 장덕수는 입국 즉시로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었으나 선우 혁은 양전백(梁甸伯)·이승훈(李昇薰)·길선주(吉善宙) 등

평안도 방면의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접촉에 성공, 국내의 정세를 알리고 국내의 쁘기를 호소한 뒤에 상해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2월 상순의 일이었다.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연락에 의한 것 이외에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민중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일찍부터 세워 놓고 있었다.

그 하나는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최린(崔麟) 등 천도교 측이 그것이었고, 하나는 송진우(宋鎭禹)·현상윤(玄相允)·김성수(金性洙) 등 중앙학교(中央學校) 측이 그것으로, 이들은 일본 신문 등을 통하여 일찍부터 민족 자결주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Y.M.C.A 또는 세브란스 병원 등이 직장이었던 관계로 서양인들과 접촉이 있던 박희도(朴熙道)·이갑성(李甲成) 등, 그리고 그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던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의 김원벽(金元璧), 보성(普成) 전문학교의 강기덕(康基德), 보성 전문학교 졸업생 주익(朱翼), 경성 의전의 한위건(韓偉健), 세브란스 의전의 이용설(李容高) 등 청년 학생층이 그것이었다.

이들 몇 갈래의 국내의 움직임은 모두 1918년 12월에서 1919년 1월 사이에 벌써 썩이 움트기 시작하여 각각 독립운동에 관한 밀의(密議)를 거듭하고 있었고, 특히 천도교 측은 앞으로 전개할 운동의 3가지 원칙을 이미 1919년 1월 상순에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2 장 3·1 독립만세운동의 추진

이러한 국내 각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일원화의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은 천도교 간부로 보성학교 교장이던 최린, 중앙학교 교장 송진우, 중앙학교 교원 현상윤 등이 평소의 친교관계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민족자결주의원칙에 의한 민중운동에 합의한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하여 거국적인 3·1독립만세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종교단체와 학생들이 각각 거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까닭은 일제가 무단정치를 실시한 이후 국내의 사회단체 대부분이 해체되었지만 다만 종교단체와 교육기관은 약간의 자유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종교에 의지하거나 교육에 힘쓰면서 국권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단체 중에서 천도교·기독교·학생 조직이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의 추진계획을 세워 왔는데 뒤에 이르러 서로 다른 계통의 활동을 알게 되자, 이를 종합한 추진 계획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먼저 천도교 중심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도교는 동학(東學)의 후신으로 제3세 교주(敎主)가 된 손병희가 동경에 망명해 있을 때 개칭한 것이다. 손병희는 동경에 망명 중 그 이름을 이상헌(李祥憲)이라 하고, 세계 정세를 살피는 동시에 유학생을 많이 양성하였는데, 최린은 그 중의 한 사람이며, 오세창·권동진은 그 곳에서 동학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손병희는 1918년 말 파리 강화회의에서 약소 민족 문제가 논의될 것을 알고서 이때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고 천도교의 중진인

권동진·오세창·최린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천도교 내의 결속을 목적으로 다음해 1월 5일부터 49일간의 연성기도회(鍊性祈禱會)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 원래 권동진과 오세창은 12월 초부터 한국이 독립을 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고 먼저 최린에게 말하였다.

이 때에 최린은 이미 일본에서 유학생 대표로 국내에 파견되어 온 송계백과 만나 그 곳의 소식을 듣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합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3인은 천도교의 지도자 손병희를 방문함으로써 천도교 측의 주도체가 형성되어 비로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들은 먼저 독립운동의 3대 원칙으로서

첫째, 독립운동은 대중화할 것,

둘째, 독립운동은 일원화할 것,

셋째, 독립운동은 비폭력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은 2월 초에 최린이 송진우·현상윤·최남선(崔南善)과 함께 논의하여

- 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 ② 일본 정부와 귀족원·중의원·양원 및 조선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내고,
- ③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여, 국제 여론에 의하여 일본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그들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불교(佛敎)·유림(儒林) 등 각 교단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구한국(舊韓國) 시대의 이름 있는 인사들을 민족대표로 내세워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구한국 시대의 저명 인사인 박영효(朴泳孝)·한규설(韓圭謨)·윤용구(尹用求)·김윤식(金允植)·윤치호(尹致昊) 등의 의견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교섭은 1월 중순경부터 2월 상순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천도교 측의 독립운동을 추진해 오던 최린·송진우·현상윤·최남선 등 4인의 추진체는 크게 실망하고, 한때 이 운동을 포기하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고종 황제(高宗皇帝)의 붕어(崩御)였다.

국치 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폐위를 당한 뒤 덕수궁(德壽宮)에서 유폐(幽閉)나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던 고종 황제가 1월 21일에 갑자기 승하했는데, 총독부에서는 그 원인을 뇌일혈로 발표하였지만 향간에서는 일본인이 사람을 시켜 독살(毒殺)을 한 것이라는 풍문이 돌아 민중의 배일감정이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 진상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처럼 국민의 배일감정이 절정에 달한 때에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최린은, 다시 송진우·현상윤·최남선과 만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각 종교단체와 교섭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때 최남선이 기독교 측에서도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듯하니 정주(定州)에 있는 이승훈과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편지를 써서 현상윤에게 주어, 정노식(鄭魯湜) 집에 유숙하고 있는 오산학교(五山學校) 출신 김도태(金道泰)를 보내어 이승훈을 서울로 오게 하였다. 이승훈은 연락을 받고 2월 11일 서울로 왔는데 최남선은 일경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송진우와 신익희(申翼熙)로 하여금 그와 만나서 기독교 측도 천도교 측의 독립운동에 합류할 것을 요청케 하였더니 즉석에서 찬성하였다. 그리고 이승훈은 이튿날 밤으로

정주로 내려가 기독교 측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불교 측과의 교섭은 최린이 담당하였는데 그는 1월 하순경 친분이 있는 승려 한용운에게 독립운동에 대해 협의하였더니 한용운은 자기도 이미 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쾌히 승낙함으로써 불교 측과의 합동도 이루어지되었다. 그 후 한용운은 승려 백용성(白龍城)과 협의하여 뜻을 같이 하였다.

그는 또 유림 측의 참가를 교섭하기 위해 거창(居昌)에 있는 당대 유림의 거벽 곽종석(郭鍾錫)을 찾아갔으나, 교섭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침내 유림 측의 합류는 포기하고 말았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계획은 처음에 두 갈래로 시작되었는데, 하나는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平安道) 지방 장로교 계통의 움직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감리교 계통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었다.

1918년 말경에 민족자결주의와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승훈은 교회 간부 이명룡(李明龍)·양전백·정기정(鄭基定) 등과 처음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 그러다가 다음해 1월 하순경 중국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파견한 선우 혁이 평안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승훈·양전백·길선주(吉善宙)·안세환(安世桓) 등을 만나 국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하고 국내에서도 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고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동지들과 협의하여 독립운동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선우 혁이 상해로 돌아간 후 기독교 측 인사들은 평양(平壤)에서 독립을 선언하기로 결정하고,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숭덕(崇德)고등보통학교·숭의여학교(崇義女學校)의 학생을 중심으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윤덕삼(尹惠三)은 교사(教師) 측의 포섭을 담당하여 숭덕고등보통학교 교사 함석원(咸錫元)·곽권웅(郭權膺)·황찬영(黃贊永)·김제현(金濟鉉) 등을 설득하고, 안세환은 학생층의 포섭을 맡아 숭실전문 학생 이보식(李

普植)·박형룡(朴亨龍) 등을 설득하여 찬동을 얻었으며, 다시 함석원은 관립 고등보통학교(官立高等普通學校) 교사들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고, 윤덕삼은 숭의·숭현 두 여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3월 3일 고종 황제의 국장(國葬) 당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는데 이 때에 서울 천도교 측의 연락을 받고 이승훈이 상경하여 협의한 끝에 기독교 측 인사들은 박희도와 함태영(咸台永)을 중심으로 하여 감리교 계통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청년 학생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박희도는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教青年會) 간사로서 31세의 청년이었다. 파리강화회의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울의 기독교 측 인사들 사이에 독립운동에 관한 의논이 분분할 때, 그는 기독교 중심의 청년학생단(青年學生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서울 기독교 측 인사들의 거사 계획은 박희도가 이승훈을 만남으로써 이승훈을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또 이 통합된 기독교 측의 추진계획은 이승훈을 통해서 천도교 측과 합류하게 되었다.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 추진 계획은 1919년 1월 23일경, 중앙 기독교 청년회 간사 박희도가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학생인 김원벽(金元璧)을 만나서 서울 각 전문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하여 26일경 박희도의 이름으로 보성 전문학교 졸업생 주익(朱翼), 재학생 강기덕(康基德), 연희전문학교 학생 윤화정(尹和鼎)·김원벽, 경성전문학교(京城專修學校)의 주종의(朱種宜), 경성의전(京城醫專)의 김형기(金炯機) 등 8명을 관수동 대관원(大觀園)에 초대하여 청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세계 정세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토론을 한 끝에 청년 학생들도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2월 3일경에는 그 추진계획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김원벽은 이 일을 연희전문학교 학생 청년회장인 이병주(李秉周)에게 알리고 이병주는 다시 회원 40여 명에게 알려 찬성을 얻었으며, 대관원에 모였던 학생 대표들은 각자 자기 학교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에게 권고하여 학생층을 규합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익(朱翼)이 2월 20일경, 독립선언서를 기초해 놓고서 이제 막 인쇄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는데, 23일 이승훈과 박희도가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류 교섭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김원벽은 그 독립선언서 원고를 승동 예배당(勝洞禮拜堂)에서 불태우고 학생층도 천도교·기독교 측의 추진계획에 참여 협조기로 하였다.

이로써 3·1독립만세 운동의 주도체는 단일화되었으며, 이로부터 그 추진 계획은 급속히 진전하게 되었다. 천도교·기독교·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추진계획이 통합·단일화되고, 불교 측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의 인선이 시작되었다.

천도교 측에서는 2월 25·26·27일에 걸쳐 재경 또는 지방 간부로서 당시 서울에 와 있는 이종일(李鍾一)·권병덕(權秉惠)·양한묵(梁漢默)·김완규(金完圭)·홍기조(洪基兆)·홍병기(洪秉箕)·나용환(羅龍煥)·박준승(朴準承)·나인협(羅仁協)·임예환(林禮煥)·이중훈(李鍾勳) 등 11명에게 손병희 이하 수녀들이 거사 계획을 알리고 서명케 함으로써,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과 함께 모두 15명이 서명하게 되었는데, 천도교 간부들을 가담시키는 일은 주로 권동진과 오세창이 담당하였다.

한편 기독교 측에서는 2월 26일 정오경, 한강(漢江) 인도교에서 이승훈·함태영·안세환·박희도·오화영(吳華英)·최성모(崔聖模)·이필주(李弼柱) 등이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사람을 결정하고 27일 그 서명을 끝마쳤다.

여기에는 이승훈·양전백·이명룡·유여대(劉如大)·김병조(金秉祚)·길선

주·신흥식(申洪植)·박희도·오화영·정춘수(鄭春洙)·이갑성(李甲成)과 새로 최성모·이필주·김창준(金昌俊)·박동완(朴東完)·신석구(申錫九) 등이 가담하여 16명이 서명하고, 불교 측의 한용운·백용성이 서명하여 민족대표는 모두 33인으로 결정되었다. 이 33인의 민족대표 이외에도 거사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이 있으나, 그들은 개인사정이나 또는 독립운동의 다음 일을 위하여 서명에서 빠졌던 것이다. 그들은 송진우·현상윤·정노식·김도태·최남선·임규(林圭)·박인호(朴寅浩)·노헌용(盧憲容)·김홍규(金弘奎)·이경섭(李景燮)·합태영·안세환·김세환(金世煥)·김지환(金智煥)·강기덕·김원벽 등 16인이었다.

처음에 독립선언은 고종 황제의 국장날인 3월 3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3월 1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첫째, 동경의 유학생들이 이미 2월 8일 독립선언을 하였고, 또 국내 학생들의 독립선언이 임박하였으므로 더 연기할 수가 없었으며,
둘째, 국장날인 3월 3일에 거사하는 것은 붕서(崩逝)한 전 황제에 대한 불경(不敬)이라 피하고, 국장 참관을 위하여 상경하는 수많은 지방민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3월 2일은 일요일이라 기독교 측에서 피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3월 1일에 거사하기로 확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중에서 서울에 있던 20여 인은 2월 28일 밤에 제동(齊洞) 손병희 집에서 최종 회합을 가지고 거사 계획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는 3월 1일 오후 2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하기로 하였던 예정을 바꾸어 같은 시각에 태화관(泰華館=明月館支店)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그 날 학생대표들의 연락으로 많은 학생과 민중이 파고다공원에 모이게 되었으므로 혹시 불상사가 있을까 염

려한 때문이었다. 한편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독립 선언서의 작성 문제였다.

이 일은 최남선이 최린·현상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일생을 학자 생활로 마칠 생각이라 독립운동의 표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선언서는 맡아 작성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그에게 낙착되었던 것이다.

그 뒤 며칠 후 최남선은 자기가 기초한 독립선언서 초안을 최린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한용운은 독립운동에 직접 책임질 수 없는 최남선이 선언서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짓겠다고 나섰으나 그 때는 이미 선언서의 손질이 끝난 뒤였다. 지금 전하는 독립선언서의 뒤에 있는 공약3장(公約三章)은 한용운이 추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 뒤 독립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을 통하여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 인쇄소(普成社印刷所) 사장 이종일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종일은 공장 감독 김홍규와 함께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만 1천 매를 인쇄하였다. 인쇄가 완료된 선언서는 경운동(慶雲洞) 이종일의 집으로 운반되어 28일 아침부터 여러 사람에게 분배되어 전국 각지로 전달하였는데, 그 대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도교 측의 안상덕(安商德)에게 2·3천매, 김홍렬(金洪烈)에게 약 3천매, 인종익(印宗益)에게 2·3천매, 이경섭(李景燮)에게 약 1천매, 기독교 측의 김창준과 함태영에게 2·3천매, 불교 측의 한용운에게 약 1천매, 학생 측의 김성국(金成國)에게 2천매 내외를 주어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게 하고, 나머지는 천도교 직원 이관(李攽)에게 주어 며칠 동안 서울에 살포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인종익은 전라도와 충청도, 안상덕은 강원도와 함경도, 김홍렬은 평안도, 이경섭은 황해도, 김창준은 평양과 선천, 이갑성은 서울과 경상도, 한용운은 주로 경상도의 사찰(寺刹)을 각각 담당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그 중 이갑성의 지시를 받은 김성국이 승동 예배당으로 가져간 선언서 1천

5백매는 그 곳에 모인 학생 대표들에게 전달되어 서울 각 곳에 배포되었다. 그리하여 3월 1일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중요 도시에 선언서가 배포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 국내외 요로에 독립선언서 및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일이었다.

먼저 일본 요로의 전달 책임을 맡은 임규는 2월 26일 최남선의 부탁으로 독립 통고문(獨立通告文)과 독립선언서를 받아 27일 밤 서울을 떠나 3월 1일 오후에 동경에 도착하였다. 그는 즉시 이를 등사하여 3월 2일 발송하려 하였으나, 서울의 독립선언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일시 중지했다가 3월 3일에야 서울의 소식을 듣고 즉시 그 문서를 일본 내각 총리 대신과 귀족원과 중의원에 우송하였으며, 3월 5일에는 각 정당 및 중견 의원, 각 신문사와 각 잡지사, 각 대학과 저명학자에게도 우송하였다.

다음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호소문의 발송은 현순(玄榘)과 김지환이 담당하였는데, 그 방법은 현순이 중국 상해로 가서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이 일은 이승훈과 함태영이 감리교 목사 현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2월 26일에 먼저 현순을 상해로 출발시키고, 3월 2일 아침에 전도사 김지환에게 호소문 2통과 독립선언서 10매를 주어 출발케 하니 김지환은 이날 오후 11시경 만주 안동(安東)에 도착하여 목사 김병농(金炳農)에게 문서를 전하여 현순에게 우송하도록 부탁하였다.

국내에서 조선 총독 장곡천(長谷川好道)에게 독립의견서(獨立意見書)와 독립 선언서의 전달을 담당할 사람은 이갑성이었다. 이갑성은 3월 1일 태화관에 모였을 때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서영환(徐英煥)에게 그 문서를 주어 총독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2월 28일 밤까지 모든 추진 계획이 완료되고, 3월 1일을 기하여 마침내 이 거족적인 3·1독립만세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3장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3월 1일의 날이 밝았다.

이 날 정오경 민족대표 33인 중의 29명(길선주·김병조·유여대·정춘수 등 4인은 지방에 있었으므로 불참)은 태화관에 모여 간소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독립 선언 시각인 오후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예정된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최린은 태화관 주인 안순환(安淳煥)에게 조선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민족대표 일동이 여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축배(祝杯)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게 하였다.

이에 일제 경찰대 80명은 10분도 채 못 되어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이 때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를 듣고 이어서 그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제창한 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일경에게 연행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이날 정오 경부터 파고다 공원에는 서울의 남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 4~5천명이 몰려와서 엄숙한 독립식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강기덕·김원벽 등의 연락으로 오전 수업을 마치자마자 각 학교 단위로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경성 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당일 아침부터 전원이 결석하고 약속된 시간에 이곳에 모이기로 하였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식당인 팔각정(八角亭) 단상에는 1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커다란 태극기(太極旗)가 나타나 군중들의 감격과 흥분을 절정으로 끌어 올렸다.

드디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식전이 개막되었다. 33인의 민족 대표가 예정을 바꾸어 이 식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군중의 한 사람인 경신학교(敬新學校) 졸업생 정재용(鄭在鎔)이 한 장의 선언서를 들고 단상에 올라가 감격에 넘치는 음성으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

2천 6백여 자가 되는 독립 선언서의 낭독이 끝날 무렵에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군중 속에서 터져 나왔다. 파고다 공원은 만세 소리로 천지가 떠나갈 듯 하였다.

학생들의 모자는 한꺼번에 하늘로 솟아오르고 서로 얼싸안고 등실등실 춤을 주었다. 처음에는 학생들만이 모였던 파고다 공원에는 어느 사이에 서울 시민과 지방에서 고종 황제의 국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만세의 함성은 끝일 줄 모르고 계속 터져 나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환호성이요, 자주 독립을 갈구하는 울부짖음이었다.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학생과 시민들은 곧 공원 문을 뛰쳐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질서정연한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이 시위 행진 대열에는 학생·신사·상인·농민·도유(道儒) 등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가담하여 서울 시가를 끌고루 누비면서 우리의 독립을 외쳤다.

이것은 민족대표들이 예측한 대로 국장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십만 민중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또 서울 시민이 만세 시위 행렬에 끼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었다.

그 일대(一隊)는 종로(鐘路)에서 광교(廣橋)·남대문(南大門)·남대문 역을 돌아 의주통(義州通)으로 꺾어들어 프랑스 공사관(公使館) 쪽으로 행진하였다.

다른 일대는 종로에서 대한문(大韓門) 앞에 이르러 머물면서 만세를 불렀다. 그 일부는 일본 군경의 제지를 물리치고 대한문 안으로 들어가 고종 황제

의 영전(靈前)을 향하여 조례(弔禮)를 행하고 나왔다. 그들은 대한문 앞 광장에서 독립 연설회를 가진 다음,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일대는 정동(貞洞)으로 들어가 미국영사관(美國領事館) 앞으로 행진하고, 일대는 구리개(지금의 乙支路) 방면으로 가고, 일대는 일본인들의 거리인 진고개(지금의 忠武路)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일경에게 저지되어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일대는 종로에서 광화문통(光化門通)을 지나 경복궁(景福宮) 방면으로 행진하였고 다른 일대는 창덕궁(昌德宮) 쪽으로 행진하였다. 이 같은 만세시위 행진은 해질 무렵부터는 교외로 번져 나갔다.

오후 8시경에는 마포(麻浦) 전차 종점 부근에서 대대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고,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는 밤 11시까지도 해산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처럼 이 날 서울에서의 독립만세 운동은 해가 저물도록 서울 거리를 휩쓸었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독립 선언서의 공약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질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만 명의 군중이 활동하였는데도 단 1건의 폭행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지상명제(至上命題)인 독립의지를 표시하는 것이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총독부는 군국주의(軍國主義)의 특색인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과 헌병 외에도 용산(龍山)에 있는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의 중대를 동원해서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태화관에서의 민족대표 29명을 비롯한 주모자 130여 명이 체포되었다.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곳은 서울뿐이 아니었다. 평양·진남포(鎭南浦)·안주·의주(義州)·선천(宣川)·원산(元山) 등 대체로 서울 이북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서울과 비슷한 형태의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도시가 서울과 같은 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경의선(京義

線)과 경원선(京元線) 등 철도 연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락이 용이했기 때문이며, 또 3·1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였던 민족대표 중 기독교 측 대표들 대부분이 이 지방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그 이북 지방의 6개 도시에서 선포된 독립 선언과 만세시위 운동은 거족적인 3·1독립만세운동 전체에서 볼 때는 그 첫 봉화(烽火)를 올린 데 불과하였다.

1일에 이어 2일에는 이미 켜기했던 대도시는 물론 그밖에도 황주(黃州)·중화(中和)·강서(江西)·대동(大同)·함흥(咸興) 등지에서 새 불길이 올랐다.

또 3일에는 예산(禮山)·개성(開城)·수안(遂安)·사리원(沙里院)·송림(松林)·곡산(谷山)·통천(通川)으로 만세의 함성이 번져 나갔고, 4일에는 옥구(沃溝)·성천(成川)·양덕(陽德)·용천(龍川)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여 3월 1일에 점화된 독립 만세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독립 운동의 전국적인 파급은 우선 천도교나 기독교의 조직을 통한 경우, 또 고종 황제의 인산 배관(拜觀)차 상경했던 지방인이나 학생이 귀향하여 계획한 경우, 인근 지방의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계획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하여 3월 중순까지는 전국 13도는 물론 바다를 격한 제주도(濟州島)에까지 파급되었다. 이 때 파급된 만세 운동의 경향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서울에서 의주로 연결되는 서북 지방에서 남부와 동부 지방으로,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철도 연변의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읍(邑)·면(面)·리(里)로 전파되어 갔다.
- ② 지방의 운동으로서 그 규모가 컸던 시위 날씨는 대부분 장날과 합치된다. 이것은 거사 계획의 누설 방지와 인원 동원이 용이한 때문인 것 같다.
- ③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또는 5일, 10일 간격으로 몇 차례씩 거듭하여 운

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제의 억압 속에 살아오던 민족 적개심의 끈질긴 발현으로서 어떠한 억압과 제지에도 쉽사리 굽힐 줄 모르는 강인성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각 지역별 만세 운동의 주체가 된 것은 각계 각층을 망라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주종(主從)의 관계에 서게 되었을 뿐이었다.

천도교 측의 주동 지역은 북부의 6개도 이었으며 남부의 7개 도에서는 그 활동이 전혀 없었거나 간혹 있었다 하더라도 보잘 것이 없었다.

처음 천도교가 창시(創始)되고 또 크게 번창하였던 삼남(三南) 지방에서의 천도교 측 활동이 오히려 미약한 까닭은 동학운동(東學運動) 이후 계속되는 탄압으로 말미암아 그 교세가 궤멸 또는 복상한 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천도교 측의 만세 운동 주동 지역은 중소 도시와 산간 지역이었다.

기독교 측의 주동 지역은 주로 북부지방에 치우치는 편이었고, 충청도 지방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그런데 기독교의 각 종파 중에서도 장로교(長老敎)·남감리교(南監理敎)·북감리교(北監理敎) 등 신교파와 구세군(救世軍)이 주체가 되었지만 천주교(天主敎)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기독교 측의 만세 운동은 대체로 대도시와 철도 연변에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세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천도교와 기독교 측이 합동으로 운동을 일으킨 곳도 많으며 함경도 지방에서는 이들 두 종교 단체가 경쟁적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

각급 학교 학생이 단독으로 만세 운동을 전개한 지역은 주로 남부 지방이었으며, 또 서당 생도가 주체가 된 곳도 10여 개소나 있었다.

이 같은 학생의 활동은 사립 학교와 서당에서 꾸준히 민족 교육을 실시하

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생의 활동은 서울의 만세 운동 횃불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준 역할을 더욱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각 지방의 운동에는 농민이 가담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것이며 지역운동으로서 그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곳의 대부분은 바로 농민이 주동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도시의 상인(商人)은 서로 연합하여 철시(撤市)를 단행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했는데, 그 기간은 보통 3·4일이었지만 1개월이 넘는 곳도 있었다. 한편 노동자(勞動者)·승려·관리(官吏)는 물론 어린이(兒童)·거지(乞人)·기생(妓生)이 주동한 지역도 있었다.

이와 같은 운동의 전국적인 파급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한 것이었고, 지방 각지의 만세 시위는 민족 대표 등 중앙 지도체와 연결이 있었던 곳보다 이러한 각 지방 독자의 계획과 결행으로 된 곳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그 집회와 시위는 취락(聚落)의 크기에 따라 작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의 경우도 많았다. 또 이 만세 시위는 한 곳에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일파(一波) 뒤에 또 일파의 격으로 힘 자라는 대로 계속 율기한 곳도 많았으니, 서울의 13차(1차에도 여러 곳)를 비롯하여 해주읍(海州邑)의 8차, 개성읍(開城邑)·마산부(馬山府)·진주읍(晉州邑)·함흥읍(咸興邑)의 각 7차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요, 그밖에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의 취락에서 3~4차씩 일어난 곳도 다수에 달하였다.

시위 횃수가 많기로는 경기·황해·경남·평북 등의 순이 되며, 부·군별로는 서울 64회를 비롯하여 의주 37회, 시흥(始興) 23회, 고양(高陽) 22회, 수원(水原) 20회, 해주·북청(北靑) 각 16회의 순이 된다.

또 참가 연인원이 많기로는 경기·평북·경남·황해 등의 순이 되며, 부·군별로는 서울 수십만을 비롯하여 의주 약 3만, 강화(江華) 약 2만 4천, 선천(宣川) 2만여 명, 삭주(朔州) 2만여 명, 청주(定州) 수만 등의 순이 된다.

다음의 표는 3월 1일 이후 이 해 4월 말까지 전개된 전국 212개 부·군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횟수와 연인원수를 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주로 인용한	지 역	시위횟수	부·군	참가연인원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경 기	288	22	약 47만
(國史編纂委員會) 편	충 북	56	9	약 2만 8천
「한국독립운동사(韓國	충 남	75	13	약 5만
獨立運動史)」제 2권에	전 북	39	14	약 1만
실린 ‘각도 운동 일람’	전 남	44	18	수 만
을 기초로 하여 재정리	경 북	62	20	약 2만 6천
한 숫자이다. 이것은 일	경 남	121	21	약 10만
제 측 자료를 근거로 하	강 원	74	20	약 2만 5천
되 일괄보고 혹은 처리	황 해	137	17	약 7만
된 것에 의거하지 않고	평 남	85	15	약 6만
	평 북	114	18	약 15만
	함 남	75	15	약 2만 5천
	함 북	44	10	약 2만
각지 사건 자료를 하나	계	1,214	212	약 110만

하나 검토하여 거기서 확인되는 것을 집계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만세 시위 횟수가 1,214회에 참가 연인원이 110만 명을 넘는다.

이 집계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근거가 분명한 사건 내용만을 집계한 최하(最下)의 숫자에 불과하므로 그 실지 숫자는 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시위횟수 1,542회에 참가 연인원 205만여 명의 숫자가 비록 구전(口傳)에 의한 숫자의 집계라 하지만, 이것이 사실에서 과히 벗어난 것은 아닌 듯 하다.

한편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는 국내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국내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의 거센 물결은 국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에게까지 과급되어 만주(滿洲) 지역, 미주(美洲) 지역, 연해주(沿海州)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서간도(西間島)와 북간도(北間島)를 비롯하여 만주 지역에는 일찍부터 우리 민족 1백 여만 명이 이주해 있으면서, 갖가지 형태로 항일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자들은 국내의 3·1독립선언에 앞서 이미 1918년 11월(음력)에 여준(呂準)·김교헌(金敎獻)·이시영(李始榮) 등 국외 독립 운동 지도자를 망라한 39인 그리고 이들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내외에 대표를 보내어 전 민족의 쉼기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은 간도와 혼춘(琿春) 등 동삼성(東三省)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국내 3·1독립만세운동에 호응해서 전개된 이 지역의 만세 운동은 한국 교포가 사는 곳이면 고루 과급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운동 양상은 그 규모가 컸으며, 국내에서처럼 일제의 저지를 받지 않아 추진이 용이할 뿐 아니라, 평화적인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발표한 것이었다.

이 지역 최초의 독립 만세 운동은 3월 12일 서간도 지방의 중심지인 삼원보(三源堡)와 통화현(通化縣) 금두(金斗)에서 독립 축하회를 개최하고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인 데서 비롯되었다. 그 중 삼원보의 운동은 1912년 이래 한 민족의 자치와 독립 운동 기지의 설정에 힘써 온 부민단원(扶民團員)이 주동이 되었다. 이 후 부민단원은 만주 지역의 각지에 파견되어 만세 운동을 촉진하였다.

북간도 지방의 만세 운동은 다음날인 3월 13일 이 지방의 중심지이고 비교적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용정(龍井)에서 처음 일어났다.

이 날 정오 교회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용정 북쪽의 서전대야(瑞甸大野)에 한국인이 모여들었다. 1만 명 가량의 군중이 이 곳 일본영사관(日本領事館) 바로 옆에서 독립 축하회를 열고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 축하식은 대

회장 김영학(金永學)의 독립 선언 포고문의 낭독으로 시작되었는데, 선언문의 낭독이 끝나자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이어 유예균(劉禮均)·배형식(裴亨湜)·황지영(黃志英) 등 3인의 총렬된 연설을 듣고 1만여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편 용정에 있는 8백여 호의 한국인 가옥마다 태극기가 게양되어 거센 바람에 필력거리었다. 축하회를 마친 군중은 '대한 독립'이라고 대서 특필한 오장기(五丈旗)를 앞세우고 시위 행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명동학교(明東學校) 학생대를 선두로 하여 이국 땅의 시가를 시위 행진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만세 운동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일제는 중구 환천과 교섭해서 맹부덕(孟富德)이 거느린 중국 군대로 하여금 한국인의 만세 시위 운동을 저지하려 하였다. 군중의 위세를 꺾을 수 없음을 안 맹부덕은 선두의 대한 독립기를 빼앗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

일제의 계략에 말려든 중국 군대의 집중 사격으로 평화적인 시위 군중 18명이 피살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큰 희생자를 낸 한국인 군중들은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고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만세 운동은 계속 전개되어 17일에는 용정에서 다시 5천여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벌였으며, 두도구(頭道溝)에서는 1만 5천여 한국인이 만세 시위운동 일으켰고 또 하얼빈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혼춘에서의 만세 운동은 3월 20일에 발생하였다.

이 날 오전 6시 반경, 이 곳 한국인 집에는 태극기가 게양되고 상가에서는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까지도 철시를 단행하였다. 오전 8시경, 혼춘 동쪽인 동대인구(東大人溝)에 모인 한국인 시위대는 학생대를 앞세우고 동문(東門) 안으로 들어갔다.

‘대한 독립 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선두로 악대의 주악에 발맞추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그들은 시내의 한국인과 합세하여 다시 시가를 누비고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문으로 인쇄된 독립 선언서를 살포하였다. 시위 군중이 기세를 올렸지만 이곳에서는 중국 군대와와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문(西門) 밖 광장까지 행진해 나온 시위대는 며칠 전부터 사방에서 몰려온 지방민과 합세하여 2천여 명으로 증가되었고, 이들은 둥글게 진을 치고서 독립 축하식을 개최하였다. 먼저 주최자의 한 사람인 황병길(黃丙吉)이 독립 연설을 하여 모인 군중을 감동케 하였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군중은 모자를 벗고 만세를 불렀다.

뒤이어 노종환(盧宗煥)·최병문(崔秉文)·김정규(金貞圭) 등의 연설을 듣고 폐회하였다.

감격적인 독립 축하회를 마친 군중은 다시 동문 쪽으로 시가 행진을 벌였다. 행렬이 시가 끝에서 얼마쯤 떨어진 강변에 이르러서는 둥글게 진을 만들고서 학생 악대는 주악을 울리고 군중은 만세를 부르면서 몇 차례 빙빙 돌다가 오후 1시경에야 조용히 헤어졌다.

이 밖에도 3월 26일에는 간도 백초구(百草溝)에서 1만 5천명의 만세 시위가 있었고, 31일에도 간도 고집지(高集地) 외에서 1천여 군중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대도구(大道溝)에서 2천여 명이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봉천(奉天) 안산참(鞍山站)에서, 25일에는 간도 영화사 송언(永化社松堰), 27일에는 간도 국자가(局子街), 30일에는 간도 곤륜산(崑崙山), 4월 4일에는 간도 대왕청(大王淸)과 대감자(大坎子), 12일에는 용정, 17일에는 동대인구, 18일에는 간도 냉수천자(冷水泉子)에서 각각 크고 작은 만세 운동이 발생하였다.

미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한국 교포도 국내의 3·1독립만세운동에 호응해서 모두 궐기하였다. 이들이 국내 만세운동의 소식을 원동 통신원(遠東通信員) 현 순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은 3월 19일이었다. 국내 운동 소식을 들은 대한인 국민회 중앙 총회(大韓人國民會中央總會)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하와이 재류동포 전체 대표회를 열었다. 이 회에서는 앞으로의 독립 운동 방침을 토의하여 12개 항목에 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의사를 공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먼저 결의안에 따라 안창호(安昌浩) 등을 재미 한인 대표로 선출해서 대한 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김평(金平)을 미주 특파원으로 선정하고, 4월 5일에는 정인과(鄭仁果)·황진남(黃鎭南)을 통신원으로 임명하여 중국 상해로, 강영소(姜永昭)·황사용(黃思鎔)을 하와이 특파원으로 임명해서 호놀룰루로 파송하여 각기 교포의 독립 의식 양양과 행동을 촉구하도록 유세를 벌이게 하였다.

한편 재미 교포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트 홀에서 한인 자유대회(韓人自由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 민족의 독립 선언과 임시 정부의 수립을 전 세계에 널리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대회가 끝날 무렵 의장 서재필(徐載弼)의 주장으로 시가 행진이 벌어졌다.

악대를 선두로 오른손에는 태극기, 왼손에는 미국기를 든 시위 군중은 비를 맞으면서 행진을 계속하여 독립관에 도착하였다.

임시 정부 국무총리로 선임된 이승만이 조오지 워싱턴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에 앉은 후 서재필의 개회사로 독립 선언식의 막이 올랐다. 독립관장 존슨의 미국 독립선언약사(美國獨立宣言略史)가 소개된 후 이승만이 국내에서 가져온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 때 미국 독립을 상징하는 자유의 종이가 울려 퍼졌으며, 대한독립만세를 3

창함으로써 식전은 폐회를 고하였다.

노령 연해주 지역에 사는 수십만 명의 한국 교포가 잇달아 봉기하자 이 지역 교포들도 이에 호응하여 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3월 17일 대한 국민회의가 주체가 되어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의 독립 시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연해주 지역 운동의 봉화를 올렸다.

대한 국민회의에서는 러시아 관헌에게 사전 통고도 없이 이 날 오후 4시 블라디보스톡 주재 11개국 영사관 및 러시아 당국에 국민회의 명의로 된 독립 선언서를 배부하고 일본 총영사관 앞을 통과하면서 열띤 시위 운동을 벌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 총영사는 러시아군 사령관에게 즉각 이 만세 시위를 저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외교 분쟁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은 오후 7시 반경에 시위 운동을 중지시키고 신한촌(新韓村)에 게양된 태극기를 모두 내리게 하는 한편, 주동 학생 2명을 검거했다. 러시아 당국의 이 같은 처사에 격분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18일을 기해서 동맹 휴업을 감행했으며 학생들은 동맹 휴교에 돌입하였다.

한편 이 날 니콜리스크에서도 다수의 교포가 모여 만세 시위 운동을 일으켰으며, 청년들 1백여 명은 시위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라즈도리노예로 떠났다. 그리고 18일 스파스고예에서는 5백여 명의 한국인이 모여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는데 러시아 관헌의 도움을 얻은 일본군의 저지 탄압으로 다수의 교포가 부상하였다.

이 밖에도 21일에는 라즈도리노예에서, 4월 5일에는 녹도(鹿島)에서 9백여 명의 군중에 의해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이 지역 여러 곳에서 계속 전개되었다.

제4장 3·1독립만세운동의 의의

3·1독립만세운동의 목적은 국권의 회복과 민족의 자주에 있었다.

이 운동은 일제의 무력 탄압과 세계 열강의 비정한 외면으로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만세 운동이 거족적으로 봉기해서 값진 피를 흘린 그만큼 우리 역사에 남긴 민족사적·사상사적·경제사적 의의는 크고 소중한 것이다.

먼저 민족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독립만세운동은 세계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여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이제까지는 일제의 허위 선전으로 한국인을 하찮게 보고, 일본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세계 각국인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동방에 은둔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둘째,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이 운동이 밑거름이 되어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임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조직, 대통령의 선거, 각부 장관의 임명 등을 행하는 한편, 국내외 각지와 연락하면서 한국의 독립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임시 정부는 그 후 숱한 파란 곡절을 겪으면서도 국외에 대하여는 한국을 대표하고, 국내에 대하여는 한국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세계사상 가장 오래 존속한 망명 정부였다. 그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일 선전 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하고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이 연합군 측에 가담해서 전쟁에 참여하였다.

셋째, 강력한 독립 투쟁 정신의 계속이다. 불의(不義)나 이민족(異民族)에 대한 끈질긴 투쟁은 한국 민족의 정통 정신의 하나이지만, 특히 3·1독립만세운동 이후부터는 그것이 잇달아 일어나게 되었다. 그 투쟁 방법은 집단적 시위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개별적 의사(義士)의 폭탄 투척, 독립군의 무력 항쟁 등으로도 나타났다.

넷째, 일제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통치 방법을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꾸게 하였다.

다섯째,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에 새로운 자각과 힘을 주었다. 한국 민족은 일제의 간교한 문화 정치를 역이용해서 각 방면의 지식인으로 하여금 민족 자립의 기초는 민족 문화의 향상과 민족 자본의 확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의 진흥, 신문에 운동, 산업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의 사상사적 의의로는 먼저 자주 독립 사상을 들 수 있다.

일제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은 만주 지역의 독립군, 국내의 비밀 결사 등의 활동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독립 사상의 불길은 독립 선언서, 일본 정부에 대한 통고문, 월슨 대통령에게 보낸 구진서,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낸 독립 청원서 등에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자유 평등 사상을 들 수 있다.

독립 선언서에는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힌다”고 하였고, 또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전을 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옥중에 있던 한용운이 기고해서 세상에 내어놓은 「朝鮮獨立의序」에는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 평등의 정신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박탈해 간 자유권을 되찾으려 하였고, 빈부 귀천·남녀 노소를 망라한 온민족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또 강대국이나 약소국의 민족이 다같이 민족 자결

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류 평등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민주주의 사상을 들 수 있다.

독립 선언서의 사상 내용은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요,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외에는 특정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종교를 표방한 것이 아니었다.

이 밖에도 3·1독립만세운동의 기본 사상은 애국애족(愛國愛族)·인도주의(人道主義) 사상이 결집된 신사상에 철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독립만세운동의 의의는 경제사적으로도 중요한 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노동자의 파업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 조건의 개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하는 애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운동이 조직화되어 조선 노동 공제회를 비롯하여 각지에 노동 조합을 결성시켰으며 일본인 기업가를 그 주된 투쟁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둘째로 납세 거부 운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을 들 수 있다. 그 설립 취지는 보호 무역주의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방향은 국산품 애용과 생산 진흥의 두 가지였다. 그리고 1923년 1월 30여 개 사회 단체의 발기로 구성된 조선 물산장려회는 3·1독립만세운동의 지도자를 비롯한 유력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소비 절약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물산장려운동과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었으나 저축면을 중시하고 특히 금주(禁酒)·단연(斷煙)에 역점을 두었다. 이 운동은 1919년 후반기부터 본격화하여 1921년경에는 전

국적인 규모로 발전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다섯째로 민족 기업 건설 운동을 들 수 있다. 종래 민족 자본은 일제의 회사령(會社令)에 의하여 억압되어 왔지만 3·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하여 적극적인 항일 투쟁의 일환으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 붐은 서울·평양을 비롯하여 중소도시에까지 확대되어 한국 경제사의 내재적 발전의 요인이 되고 있다.

3_ 서울·경기도의

3·1독립만세운동



여 백

제1장 국토상(國土上)의 위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지방은 바로 3·1독립만세운동의 기점이요 진원지인 것이다. 이 지방은 한반도의 중심부적 요충을 차지하여 한강유역을 끼고 그 둘레에 강원·황해·충남·충북의 4개 도와 인접하고, 다시 이들 각 도를 사이에 두고 남으로 경상·전라의 남·북도와 북으로는 평안·함경의 남·북도 등 8개 도가 각각 딸려 있다.

멀리 동쪽에는 우리나라의 척량(脊梁) 산맥에서 서남쪽으로 내려 뺏은 마식령(馬食嶺)·광주(廣州)·차령(車嶺) 등 여러 산맥들의 끝머리가 이 지역에 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동부 산간지역에서는 한강을 이용한 내륙 하천 교통이 동서로 발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은 일찍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이 개발되어 철도·도로가 많이 발달하였으며, 더욱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사통오달하는 방사선식 통신망을 이루고 있어서 옛날부터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방으로 손쉽게 파급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 있어서는 일제의 삼엄한 헌병 경찰 제도가 이를 극도로 제약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한강·임진강·예성강·안성천과 같은 강들은 그 유역에 부평평야·김포평야·안성평야 등의 비옥한 토지를 포용(包容)하고 여기에 서울을 위시하여 인천·부평·김포·수원·안성·개성·장단·가평·포천·양평·여주·이천·용인 등 3·1독립만세운동 직전인 1918년말 현재로 2부 20군(전국 12부 218군의 약 10%)이 널리 산재하고 있었는 바, 그 인구도 이미 전국 1천7백만명의 10%를 상회하는 1백80만명(외국인 제외)을 헤아리고 있었으며, 지방 군소 도시의 만세시위는 이들 각 고을마다 모이는 월 6회의 장날 집회를 많이 이용하였다.

제2장 항일운동의 전통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경기도 지방은 상고 이래로 중세·근세에 걸친 전 기간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민족 활동의 중심무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침략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세에 이르러서는 청일·노일 전쟁 이후 일제 군국주의 대륙침략정책의 발판이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1910년 마침내 경술국치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을미사변 후 안성에서 일어난 창의대장 민승천(閔承天)의 이천·광주에서의 의병활동, 양평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춘영(李春永)·안승우(安承禹)·김백선(金白善) 등 3의사의 활약, 그리고 군대 강제 해산 후 13도 창의대장 이인영(李麟榮)이 이끄는 연합 의병부대의 서울 진격작전, 또 그 예하인 이은찬(李殷贊)이 지휘하는 임진강 유역에서의 분투, 13도 총도독 김수민(金秀敏)이 인솔하는 의병부대가 벌인 서울 주변에서의 용전 등 실로 장기간에 걸쳤던 대일 항전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심장부인 서울·경기지방의 탈환에 그 제1차적 목표를 두었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곳에서는 일찍이 서재필·이상재·이승만 등의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민영환·조병세·박승환·이상설·이재명 등 수 많은 충신·의사·열사들이 의분의 눈물과 선혈을 뿌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무단 식민지 통치는 날날이 강화되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암흑과 질식의 세계에서 헤메이게 만들었다.

이로부터 세월은 흘러 다시 10년, 마침내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민족 자결주의에 의한 피지배 민족국가 독립의 기운이 바야흐로 무르익게 되자,

1919년 3월 1일 한국의 중심부인 이 곳에서는 드디어 일제의 탄압을 박차고 독립만세의 횃불을 먼저 들게 되었다.

이제 이 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사를 엮음에 있어서 앞서, 잠깐 언급한 지역적인 특수성과 만세시위의 순서를 아울러 고려하여 편의상 경기 중부 지방의 시흥군 사항을 서술하여 보고자 한다.

- (1) 서울지방 <3·1독립만세운동 당시의 행정구역, 이하 같음>
- (2) 경기 중부지방 <고양·시흥·광주·양주의 4개군>
- (3) 경기 서부지방 <인천부와 부천·김포·강화의 3개군>
- (4) 경기 남부지방 <수원·용인·평택·안성의 4개군>
- (5) 경기 동부지방 <여주·이천·양평·가평·포천의 5개군>
- (6) 경기 북부지방 <개성·장단·파주·연천의 4개군>

머리말

시흥군은 경기도 가운데에서도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위가 시작되었다. 3월 7일 시흥군 영등포에서 보통학교 학생이 만세시위 후 동맹휴학을 결의한 이래 4월 말까지 20여 회에 걸쳐 연인원 1만여 명의 참여 아래 전개되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시위 횟수를 기록하였다.

물론 시흥군의 경우도 처음에는 청년 학생이 시위를 주도해 나갔으나 점차 농촌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농민이 그 주역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 곳의 시위 주동자들도 어떤 특정한 지도 사상이나 정치 결사체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지도된 운동이 아니고 각 계층의 민중이 스스로의 사상과 투쟁 방법을 통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이었다.

1. 북면(北面)

영등포리(永登浦里)에서 3월 7일 시흥공립보통학교 동맹휴업과 만세시위가 있었으며, 상인들이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모두 가게를 철시하자 3월 말경부터 군수·경찰서장 등이 상점을 돌면서 가게문을 열도록 설득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3월 23일에는 탄원기(彈元基) 등 400여 명의 주민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임과 동시에 당산리(堂山里)·노량진리(鰲梁津里)·양평리(楊坪里) 등에서¹ 모두 1,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도심에 속하는 영등포 시위에는 전번과 같이 일본 병력이 출동하여 진압하였다. 대체로 서울과 아주 가까운 지역은 서울 시내의 만세시위와 보조를 같이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구로리(九老里)에서는 3월 29일 100여 명이 시위하자 발포하여 강제 해산당하였으며, 신길리(新吉里) 주민들도 만세시위를 벌였다².

..... [3] 서울·경기도의 3·1독립만세운동

30일에는 다시 영등포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만세시위가 있었고 이후 각 지방으로 만세시위를 퍼져 나갔다.

2. 신동면(新東面)

3월 25일에는 잠실리(蠶室里) 주민 100여 명이 26일에는 양재리(良才里) 주민 200여 명이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³. 같은 날 원천사(元泉寺) 지역에서는 300여 명의 주민이 주재소를 습격하며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였다⁴.

3. 서이면(西二面)

3월 27일 비산리(飛山里)에서는 포목 행상을 하던 이영래(李永來)가 일동리(一洞里) 백기화(白基和)의 집에 들렀다가 그 집에 모여 쥔신을 삼고 있던 동리의 이종교(李鍾敎) 등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동네에서는 독립만세를 크게 부르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한가하게 쥔신만 삼고 있느냐”며 이들을 설득하여 동리 주민들과 함께 그 날 밤 8시 일동리 서쪽 언덕 위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⁵.

4. 수암면(秀岩面)

수암면에서는 3월 30일 오전 10시 비석거리(碑立洞)에 18개 리에서 2,0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미 전날 읍내의 비석거리에 모이라는 통문을 각 고을의 이장에게 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다. 윤병소(尹秉昭)는 29일 화정리(花井里)에서 이봉구(李鳳九)로부터 비석거리에서 만세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동리 사람 3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시위 대열에 참여하였으며 월피리(月陂里)의 유익수(柳益秀)는 성포리(聲浦里)의 주민 30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윤병소와 함께 선두에 서서 이들을 지휘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 본절은 정진각 집필임.

1 한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 1968, 262~263쪽.

2 姜德相, 『現代史資料』25, 1967. 3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263쪽. 4 위와 같음.

5 國史編纂委員會, 위의 책, 262쪽.

독립만세를 부르고 읍내의 향교와 면사무소, 보통학교를 돌면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와리(瓦里)에 사는 홍순칠(洪淳七)은 유익렬(柳益烈)의 하인 임학신(林學信)에게서 비석거리 집회 소식을 듣고 허치선(許致善)의 집에서 30여 명이 모이자 이를 인솔하여 참가하였다. 홍순칠은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되니 함께 만세를 불리아 한다.”고 소작 농민들을 설득하였다. 윤동욱(尹東旭)은 능곡리(陵谷里)의 농민으로부터 집회 소식을 듣고 참여하였는데 보통학교 앞에 이르러 만세시위 대열을 막는 조선인 순사 임건호(任健鎬)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 관리가 부르면 군중들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요구하였으나 순사는 불응하였다. 화정리의 김병권(金秉權)도 동리 주민 30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수암리(秀岩里)의 이봉문(李奉文)은 자기 마을 앞에서 진행된 만세시위에 술선하여 참여한 뒤 이날 밤 시위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구장 집에 다른 주민들과 같이 몰려가 항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익수는 만세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중들을 설득하기도 하였으며 이튿날도 인근 수원군(水原郡) 반월면(半月面)에 가서 만세시위가 폭력화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여 비폭력 시위로 이끄는 데 노력하였다⁶.

5. 남면(南面)

남면 주민들은 3월 31일 인근 수원군 의왕면(儀旺面) 주민과 합세하여 약 2,000여 명이 군포장(軍浦場)에 집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며 주재소를 비롯한 여러 곳을 습격하였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발포하여 해산시켰다⁷.

6. 서면(西面)

서면 노온사리(老溫寺里)에서는 3월 27일 주재소 근처에서 이정석(李貞石)이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 주재소에 구금되었다. 3

..... [3] 서울·경기도의 3·1독립만세운동

월 28일 그의 아버지 이종원(李宗遠)이 동리 사람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자 당시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던 최호천(崔浩天)과 윤의병(尹宜炳)이 군중을 지휘하고 이종원·김인한(金仁漢)·최정성(崔正成)·유지호(柳志浩)·최주환(崔周煥) 등이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온사리 주재소로 향하였다. 떠나기 앞서 동리에서 만세시위를 벌인 다음 더 많은 군중을 동원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근 동리 주민들을 설득하여 100여 명이 더 합세하여 주재소에 이르렀다. 이때 군중들은 일본 순사가 발포할 것에 대비하여 몽둥이와 돌 파우 등을 지니고 갔다. 주재소에 이르러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순사들은 불을 끈 채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가만히 있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성난 군중들은 주재소 게시판과 벽을 부수어 버리며 일본 순사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군중들은 두 패로 나누어 순사보 두 사람의 집으로 각각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라 실패하였고 군중들은 다시 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에 일본인 순사가 “이정석은 본서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없다.”라고 하였지만 시위대의 항의가 거세어지자 “내일 본서로 들어가서 이정석을 방면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입으로 하는 약속을 믿기 어려우니 증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관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해산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들은 다시 보통학교 앞에서 시위를 한 다음에야 해산하였다⁸.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3월 29일에는 박달리 주민들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7. 과천면(果川面)

3월 29일 막계리(莫溪里)와 주암리(注岩里) 주민들이 각기 고을을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벌인데 이어⁹ 하리(下里)에서는 3월 30일 저녁 8시 햇불시위가

6 독립운동편찬위원회, 위의 책, 279~282쪽.

7 姜德相, 앞의 책, 181쪽.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3~287쪽.

일어났다. 이복래(李復來)가 이날 저녁 각자 관솔불을 가지고 남태령(南泰嶺)에 모여 만세를 부르자는 통문을 작성하여 이민(里民)들에게 희람시켰다. 이복래는 그날 밤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주민 50여 명과 함께 남태령에 모여 과천 읍내로 들어가며 경찰관 주재소·우편소·보통학교 앞 등을 돌며 횃불 만세시위를 벌였다¹⁰.

8. 군자면(君子面)

장곡리(長谷里) 주민들이 3월 29일 만세시위를 벌인 데 이어¹¹, 4월 4일 군자면사무소가 있는 거모리(去毛里)에서 원곡리(元谷里)에 사는 강은식(姜殷植)이 수백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주민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죽율리(竹栗里)에 사는 김천복(金千福)도 동리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장 집에 모이게 한 다음 이들 30여 명을 이끌고 거모리의 면사무소로 향하던 도중 총소리가 나자 일부 주민이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김천복과 몇몇 사람들은 만세시위에 합세하였다. 선부리(仙府里)의 서당 생도 권희(權禧)와 장곡리의 농민 장수산(張壽山) 등은 4월 6일 권희의 집에서 「비밀 통고」라는 제목 아래 ‘조선인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 간의 학정(虐政)에서 벗어나자’라는 격문을 쓰고 7일 면내의 구시장터로 태극기 하나씩을 갖고 모이라는 사발통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각 동리에서 차례로 희람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뒤 이를 동리 구장의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두어 많은 사람이 희람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곡리 구장 이덕증(李德增)은 이를 희람한 뒤 월곶리(月串里) 구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위 모의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고 주도자들은 체포되고 말았다¹².

4월에 접어들면서 일본 경찰의 폭압적인 시위 진압이 진행되자 비폭력을 주장하였던 만세시위도 그 양상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3일 1,000여 명이 참가한 영등포의 시위에는 본격적인 일본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 10일 시흥면에서는 군중들이 모여 면장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¹³.

맺음말

시흥군에 속한 지역 중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속하였던 지역 즉, 오늘날 서울 특별시에 편입된 지역에서는 서울 시내의 시위와 거의 보조를 맞추어 초기에 학생들의 시위와 상인들의 철시에 이어 주민들의 만세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 행렬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서울 지역의 소요에 당황한 일본 경찰이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고 군청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군중이 모이려 하면 항상 기선을 제압하여 경찰과 군대를 급파하여 집회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으로 과급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위 참여에 동리 이장이 적극적으론 가담했다는 것이다. 수암면 비석거리 시위나 군자면 거모리 시위의 경우에 보이듯 각 동리의 구장(이장)은 30~40명씩의 동리 주민을 직접 인솔하거나 통문을 돌려 주민을 모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향촌 사회가 전통적인 면리제의 전통 하에 일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장이 말단 실무를 관장하며 마을의 여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장들은 동리 유식자나 청년들과 협의하고 시위운동 계획을 동리 주민에게 알리거나 격문을 붙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통일적인 지도 핵심이 없이도 각 동리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시위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⁴.

시위가 진행될수록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농민들의 의식구조를 보면 수암면 비석거리 시위의 주동자중 한 사람인 홍순철은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라며 농민들을 설득하여 참여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중심과제였던 국유지 창출과정에서 제일 큰 피해자였으며 이에 따라 소작농으로 전락한 열악한 처지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음을 말하여 준다. 이들은 독립이 이루어지면 토지분배라고 하는 농민적 이해에 기초한 독립국가 건설을 어렴풋이나마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세 상인들도 시위에 동조하는 뜻으로 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상들

9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263쪽.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3~287쪽.

11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263쪽.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3~2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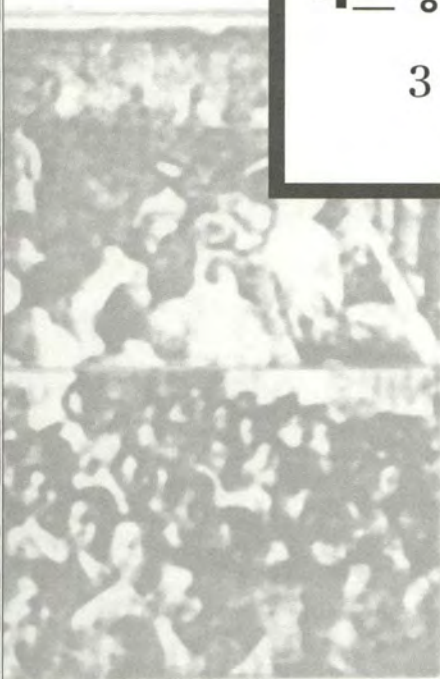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2, 929쪽.

14 김지원, 『경기도 지방의 3·1운동』, 1989. 『3·1 민족해방운동연구』, 창년사, 327~330쪽.

은 다른 지역의 만세시위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연락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4_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여 백

제1장 3·1獨立萬歲運動의 概觀

3·1독립만세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독립을 되찾으려는 전민족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이었다. 3·1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4월을 정점으로 하지만 거의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며, 참가인원에서도 대규모 민중운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한국인이 참여하였다.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1독립만세운동과 관계된 총계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부군수(府郡數) 211개, 회집(집회) 횟수 1,542회, 회집인원(총 참가인원 46,948명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를 2천만 명이라 추산할 때, 이는 전 민족의 10분의 1이 참여한 엄청난 숫자이다. 이러한 통계는 박은식도 말한 바대로 많은 누락이 있으므로, 실제 참가인원과 희생자·검거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3·1독립만세운동이 이와 같은 전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 본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로 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전쟁과 자강운동(自強運動)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강력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 침탈로 한국 민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민족자본가 계급은 민족자본의 성장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실시한 「회사령」(1910)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일부 지주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농민은, 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실시로 조상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를 빼앗기고 빈농·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몰락해 갔다. 농토를 빼앗기고 도시로 흘러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노동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일본인 노동자의 반도 되지 않

는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민족차별 등 극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와 같이 일제통치 10년 동안 자본가·노동자·농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식민지통치의 피해를 직접·구체적으로 입음으로써 민족의 정치·사회적식이 높아가 일제에 저항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전후문제 처리를 위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하여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함에 따라 식민지에서 민족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 러시아혁명이 성공하고 소비에트정권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여 식민지 민족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종교인들이 항거의 불길을 당기자 3·1독립만세운동은 삼시간에 전 민족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다음은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3·1독립만세운동의 분위기는 2월 8일 일본유학생 수백 명이 동경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반일 데모를 강행함으로써 조성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국내에서는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긴밀하게 연계를 맺으면서 3·1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손병희를 대표로 하여 천도교·기독교·불교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33인은 고종의 국장일이 3월 3일로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리라 예측하고, 3월 1일 정오를 기해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인쇄물을 뿌리고 시위운동을 펴기로 하였다. 또 각 지방에도 미리 조직을 짜고 독립선언서와 함께 운동의 방법·날짜 등을 전달해 두었다.

33인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벌이기로 했던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3월 1일 오후 2시 정각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 모여서 한용운이 간단히 취지설명을 한 데에 이어 만세삼창을 한 후 곧바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게 전화를 걸어 스스로 수갑을 찼다. 33인은 3·1독립만세운동의 초

기 조직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함으로써 반일 항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에 큰 몫을 하였지만, 스스로 일제에 투항함으로써 3·1독립만세운동을 끝까지 지도해야 하는 사명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해방운동은 33인의 무저항이라는 한계를 넘어 대중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나라 밖의 간도·시베리아·연해주 마침내는 미주까지 퍼져 나갔다. 독립만세 시위는 초기(3월 상순)에 도시와 경기도·평안남북도 등 종교 조직의 뿌리가 강한 곳에서 종교지도자·학생·중소상인 등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그러나 3월 10일 무렵부터 차츰 지방의 군 단위 이하 농촌이나 산골로 퍼져 3월 말~4월 초에는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여 최고 절정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츰 농민과 노동자가 운동의 주력으로 등장하였고, 시위 양상도 비폭력의 틀에 매이지 않고 한층 격렬한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농민들은 3·1독립만세운동의 가장 중요한 투쟁 역량으로서 식칼·낫·도끼·쇄스랑·괘이·자루·돌맹이 등으로 무장하고 각 지방의 헌병기관과 통치기관을 습격하는 등 각종 시위와 봉기의 선두에 섰다. 이들은 대개 토지조사사업으로 피해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관공서나 일본인 토지회사, 친일지주들을 습격하였으므로 소작계약서를 불태우거나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도 초기부터 투쟁의 선두에 섰다. 3월 2일의 종로 시위를 첫 출발로, 동아연초공장의 노동자 500여 명이 파업하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철도·전차운전수·공장노동자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3월 중순에는 서울 시내 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보통 때의 10% 밖에 출근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할 정도였다. 서울 뿐 아니라 황해도의 제철 노동자, 평양의 인쇄직공, 직산·윤산·금광의 광산노동자들도 일제에 맞서 싸웠다. 잡화상·곡물상·음식점 등 소규모의 자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철시를 하며 일제에 항거하였다. 한편 시위에 앞장서 온 학생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선

전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가두연설을 하는가 하면 자진퇴교·동맹휴학 등으로 독자적인 투쟁을 하였다.

이와 같이 200만이 넘는 민중이 참여하여서 약 2개월 동안 투쟁하였으나, 일제는 집단학살·살인·방화·고문 등 무력탄압을 자행하였고, 이에 4월 말에 접어들면서 3·1독립만세운동은 차츰 기세가 약화되었다.

1) 시흥지역의 수탈현황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시흥지역에서는 집회 횟수가 23회에 10,580명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를 호구수로 말하면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농민층이 중심을 이룬 시흥지역의 3·1독립운동은 이 지역에서 자행된 일제의 수탈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시흥지역 안에서 일어난 인구의 변동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10년 안산·시흥·과전을 포괄하는 시흥지역의 조선인 호구수는 11,718호였으나, 1918년에는 11,197로, 1910~1918년 사이의 조선인 호구수는 521호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일본인의 호구수는 1910년 325호였으나 1918년 518호로, 1910~1918년 사이의 일본인의 호구수는 193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시흥지역에서도 일본인들이 농촌으로 진출함에 따라 한국인 농민의 분해과정이었음을 반영한다. 일본인의 호구수가 상공업 지역으로 발전하던 영등포의 경우 1910~1918년 사이 단 5호만 증가한 데 비해, 시흥지역에서 518호나 늘어나고 있었던 사실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집단거주 지역인 영등포를 떠나 시흥군의 각 농촌지역이나 기타 역(驛) 주변으로 진출하였음을 말한다. 일본인들의 이동·진출이 해당 지역의 한국인 농촌을 직접 수탈하는 상업에 종사하거나, 한국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농업이민의 성격을 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10~1918년 사이에 시흥지역을 떠난 521호는 도시노동자나 도시빈민으로 전락-또 영등포로 떠난 78호도 마찬가지로-하였으리라 보인다.

다음은 시흥지역에 거주했던 농민들의 경제상황을 본다. 한말 시흥지역의

토지소유 상황을 보더라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0% 미만의 부농-부농의 경우도 자작농으로 생활하는 자가 있었다-이 6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결과,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즉 당시 대다수의 농민들은 50부(負) 미만의 자·소작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는데, 이 정도의 농업소득으로 과도한 조세·지대를 내고 나면 농업의 재생산은커녕 자신들의 생계 유지마저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은 식민지 시기에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대개는 자·소작농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빈농이었으며, 소작농은 더욱 늘어났으리라 생각한다. 시흥지역에서 일제가 농민을 수탈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경기도 전체 지역과 관련된 통계를 인용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1910~1918년 사이 경기도 내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일제의 토지약탈이 어떠하였나를 가늠케 한다. 1910년에 동척(東拓)이 소유한 토지는 답 1,964정보, 전 1,737정보로 모두 3,701정보였다. 그러나 1918년에는 답 4,925정보, 전 3,711정보, 기타 368정보로 모두 9,005정보로 증가하였다. 즉 1910~1918년 사이에 답은 2,961정보, 전은 1,974정보, 여기에 기타 368정보를 포함하여 모두 5,304정보가 증가하였음을 본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인 1910년 12월말 현재 경기도 내의 답은 115,576.0정보, 전은 111,973.8정보로 모두 227,549.8정보였다. 그러나 토지조사 결과 1918년 7월말 현재 답 198,637정보, 전 187,165정보로 모두 385,802정보로 증가한다. 이를 보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는 답 83,061.0정보(증가율 71.87%), 전 75,191.2정보(증가율 67.15%)로 모두 158,252.2정보(증가율 69.55%)가 증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경기도 내의 토지면적이 69.5% 증가하였음에 비하여, 동척이 소유한 토지는 1910~1918년 사이에

무려 2.6배나 증가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하다. 동척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는 1918년 경기도에 정착한 일본인 농업이주자에게 할당된다. 이들에게 할당된 토지를 보면 답이 862정보, 전이 230정보로 모두 1,029정보였으며,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도 전·답을 합쳐 약 2정보의 규모였다. 이는 당시의 농지소유 상황과 비교할 때 부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약탈과 이에 수반하는 일본인 농업인구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한국 농촌이 더욱 봉건적으로 편성됨을 뜻하며, 이는 바로 한국 농민의 몰락과 연결된다.

시흥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반 상황은 예외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시흥지역에서도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약탈과 일본인 농업이민의 증가는 시흥지역 농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여 농민들의 몰락을 재촉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저항하는 집단의지가 시흥지역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 민중의식의 성장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시흥지역의 운동과정에서 일제의 식민지 농업수탈에 농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시흥군 수암면에서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면내 18개 동리의 약 2천 명이 비립동(碑立洞)에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 때 만세시위를 주동한 한 사람이었던 홍순칠(洪淳七;당 42세로 직업은 농업, 주소·본적은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瓦里 482번지)의 판결문에서 인용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를 들어 본다.

자기는 원래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한 사람인데 위 독립을 기도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29일 국유지 소작인 수명에게 대하여 그 날 각 리에 돌린 격문 내용을 알리고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되니, 이 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득책이다.”고 권고하여

소작인을 선동하였다. 또한 30일 참집 인원을 조사한 것은 후일 불참자를 문책할 재료를 얻기 위함이다…….”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를 뜻하는 국유지(國有地)를 강제로 창출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두었다. 이는 국유지만 창출할 수 있다면, 자본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무상으로—식민지 통치권력을 기반으로—광대한 토지를 일거에 점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토지를 무력으로 국유지화함으로써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최대 지주가 되었음은 제1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위의 자료에 나오는 ‘국유지’란 토지조사사업으로 강제 창출한 조선총독부 소유의 토지를 말하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의 중심과제였던 국유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으며, 이에 강한 불만을 가졌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이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고 나아가 계급 자각에 이르고 있음은 선구적인 사례에 속한다. 독립이 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는 홍순철의 선동은, 전통적인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사고에서 진일보하여 토지문제의 플레비안(plebeian)적 해결을 소박한 형태로 제기하고 있다. 홍순철이 비록 소작인 몇 명에게 시위에 참가하기를 선동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흥지역에서는 일제가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이 매우 많았으며, 이 선동이 토지소유 욕구 강한 이들 소작인의 의표를 찌르는 큰 반향을 일으켰음은 분명하다.

홍순철의 선동에서 보이듯이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부 민중들은 공화제 사상, 나아가 사회주의 사상까지 받아들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홍순철의 경우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총독부 경무국(警務局)이 경상남도의 민정보고에서, “하층민 계급 가운데는 아직도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간에는 조선은 이미 독립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민

전체에 걸쳐 재산의 균분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청하여 자못 공산주의적 언사를 농하는 자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읍내 부근에서는 “하층 조선인 청년 사이에는 조선독립시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줄 터이므로, 빈곤자로서는 무상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청하면서 독립의 실현을 기대하는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는 홍순철의 선동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균산주의(均産主義)를 상당히 호소력 있게 받아들인 사실은, 갑오농민전쟁에서 나타난 ‘토지의 평균분작’과 같은 전통적인 균산주의에, 새로이 전파되고 있었던 새로운 사조의 영향이 결합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들은 농민운동이 토지혁명의 슬로건을 걸고 나아갈 때 폭발적인 위력을 지닐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시흥지역의 경우, 반외세·반봉건의 성격을 지닌 민중봉기가 한말에 두 차례 일어났다는 역사 경험과 홍순철 등의 균산주의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1) 3·1운동의 전개과정

3·1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위가 비롯된 후 전국으로 확산된 전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이었다. 당시 서울에 인접하여 있던 시흥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 11일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차례의 시위가 있었고, 3월 23일 영등포읍에서 탄기원(彈基元) 등이 주동이 되어 시위를 일으킨 이후 4월 초에 이르기까지 시흥군에서는 모두 23차례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현재 광명시 지역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난 시기는 3월 27일로 확인된다. 이정석(李貞石;서면 소하리 거주)이 노온사리 주재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선동하다가-참가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28일 아침 출동한 일본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치안법 위반자로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구금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면 지역 주민들이 이정석을 구출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서 3월 28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월 27일 밤 이정석(이종원의 장남)이 노온사리 경찰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3월 28일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 순사보 최우창(崔禹昌)과 순사보 金澤成雄에게 인치되었다. 이에 이종원은 같은 동리에 사는 최호천의 집에 가서 이정석이 인치된 사실을 알리며 구출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에 최호선은 “그러면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주재소로 몰러가 찾아 줄 터이니 안심하라. 당신도 동행하자.”고 하였다. 윤의병은 3월 28일 이순만(李順萬)에게서 “이정석이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노온사리 주재소에 구금되어 그를 구출할 작정이니 오라.”하므로 이

를 승낙하여 그 곳으로 갔더니 약 20명 가량이 모여 있었다. 윤의병이 이순만과 함께 이들을 이끌고 소하리 내대촌(內大村)으로 갔는데, 면사무소 부근에 약 50명이 모여 있었으며 최호천이 이를 인솔하고 있었다. 이 때 이종원이 일동을 향하여 “이종석을 찾아 돌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최호천은 윤의병에게 “이 인원만으로는 부족하니 내가리대리(內加里垞里)의 사람들도 모아서 습격하자.”고 말을 꺼내자 각각 이끌고 있던 시위대를 합하여 가리대리로 향하였다. 한편 최호천은 3월 28일 밤 동리 사람을 모아 놓고 노온사리 주재소로 가서 이정석을 구하자고 제의하여 이미 동리 사람 1백여 명의 동의를 얻어 놓은 터였다. 이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윤의병이 다시 부근의 동리인 내가리대리의 동민 1백명을 더 모집하여 모두 2백여 명이 되었다.

최호천과 윤의병 두 사람은 시위대를 향하여 “어제밤 이정석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하여 주재소 순사보에게 인치되었으니 오늘 밤 그를 찾아 올 작정이다.”는 취지를 알렸다. 이후 최호천이 2백여 명을 통솔하고 윤의병은 술선하여 군중을 지휘하였으며, 이종원과 동리 사람 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 등 5명이 앞장서서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로 향하였다. 주재소로 향하는 도중에 최호천은 시위 군중에게 “곤봉이나 돌을 가지고 가자”고 말하였다. 또 주재소 앞에서 시위대들이 합세를 할 때에 최호천은 “만일 이정석을 내어 달라고 강박하여 주재소 직원이 발포하거나 폭행을 하더라도 결코 퇴각하지 말라. 휴대한 돌이나 곤봉으로 대항한다.”고 제의하며 군중을 선동하였다.

이리하여 동리 사람들은 곤봉과 돌을 준비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시위대는 먼저 주재소를 포위하고, “이정석을 내 놓아라.”고 함성을 질렀다. 이들은 또 몽둥이로 주재소 앞 게시판을 때려부수고, 주재소 숙직실 벽에 1치 평방쯤의 구멍을 뚫고 침식 문짝을 작은 돌로 한두 번 던지기도 하였다. 이때 오후 10시가 넘었다. 그러나 주재소 안에 있던 일본 경찰 赤松 순사, 최(崔) 순

사보, 金澤 순사보 등은 시위대가 접근하자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듯이 가장 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두 대열로 나뉘어, 한 대열은 윤의병이 이를 인솔하여 노온사리 순사보 김정환(金定煥)의 집으로 가서 순사보의 소재를 물었으나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다른 대열은 최호천이 이를 지휘하여 같은 동리 순사보 최우창의 집으로 가서 그를 찾았다. 최 순사보는 주막의 온돌방에 기숙하고 있었으므로 시위대는 우선 동리 주막집을 찾아가 먼저 주인 박제인(朴濟仁)을 찾아, “주인은 어서 나오너라, 최 순사보 놈을 잡아가겠다.”하고 함성을 울리며 위협하였다. 또 시위대 가운데 몇 명이 불을 켜고 방안까지 뒤져보았으나 최 순사보를 찾지 못하였다. 이때 벌써 11시가 넘었다.

시위대는 다시 주재소로 달려가 함성을 울리자 일본 순사는 그제야 방 안에서 불을 켜고 그대로 앉아서, 赤松 순사가 “무슨 일로 왔느냐?”하고 물었다. 이때 최호천과 윤의병 두 사람은 “우리들은 소하리의 이정석이 체포되었으므로 이정석을 구출하러 왔다. 이정석을 내어 달라.”하였다. 그러자 “지금 이정석은 여기 없다. 본서로 넘어갔다.”고 赤松 순사가 대답하였다. 그래도 시위대가 계속 분노하며 이정석을 내어 놓으라 하자, 赤松 순사는 “다음날 29일에 본서에 들어가니 그 때 이정석의 신병취하를 출원하겠다.”하며 시위대를 무마하려 하였다.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원이 말로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말로 하여서는 효과가 없으니 계약서를 쓰라.” 하였으나, 赤松 순사는 “관리인데 약속을 어기겠는가. 그런 짓은 하지 않아도 틀림없으니 속히 해산하라.”하며 시위대를 계속 무마하였다. 이에 최호천과 윤의병은 “오늘 저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일 밤 다시 습격하기 위하여 물려와서 불태우고 처 죽이는 행동을 해도 괜찮겠는가.”하고 물었으나, 노인 한 사람이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하므로 최호천이 이끄는 시위대는 주재소 구내에서 만세를 부르고, 또 보통학교 뒤편에서 만세를 부르고 자진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이정석·최호천·윤의병 등 많은 사람들을 주모자로 체포하여 갇은 고문을 가

하였다.

그러면 광명지역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판결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

2) 광명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특징

광명지역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는 동기는, 3월 27일 이정석이 노은사리 경찰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선동하다가 28일 아침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원이 이 사실을 최호천에게 알리며 이종석의 구출을 부탁한 데에서 비롯한다. 최호천은 당시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었는데,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격렬하여 휴교령이 내리자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종원이 최호천을 찾아가 아들의 구출을 부탁한 사실은 최호천이 학생으로서 지닌 영향력 때문이라 생각한다. 재판 기록만으로는 최호천과 윤의병이 시위 준비를 사전 의논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최호천이 같은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윤의병과 함께 이 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음은 확실하다. 재판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 시위의 주모자는 최호천이었고, 윤의병은 이 시위를 선도하여 주도하였다. 즉 광명지역의 시위는 당시 학생이었던 최호천·윤의병이 주도하였으며, 뒤에 다시 보겠지만 최호천은 사전에 시위를 준비·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명지역의 시위 운동에 관련되어 재판을 받은 7명 가운데 최호천·윤의병 두 사람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직업이 농업이었다. 이는 광명지역에서도 농민들이 시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이상에서 보면,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은 학생이 주도하였고, 시위의 중심은 농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광명지역 3·1독립만세운동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면, 매우 자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명지역의 시위와 관련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던

김인환은, “1919년 3월 28일 노온사리 경찰주재소에 인치된 이정석을 찾아 오러 간다는 것이었으므로 주막리(酒幕里)라는 곳에 가서 보니 다수의 이민(里民)이 모여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시위에 참여한 동기가 자발적이었음을 말한다. 또 최주환의 경우에도 “1919년 3월 28일 오후 7시경에 홍순필(洪順弼)의 음식점 앞에 많은 이민들이 모여 있고, 최호천과 이종운(이종원의 다른 이름:글쓴이) 양인이 ‘오늘밤 노온사 주재소를 습격하여 이종운의 장남 이정석을 탈환할 계획이니 모이라’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참가하여……”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도 시위참가의 동기가 매우 자발적이었음을 말한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노온사리 경찰주재소를 시위대가 포위한 때가 오후 10시경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후 7경에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은 이 시위가 사전에 충분히 서전되어 조직되었음을 말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자발적이면서, 동(洞), 리(里) 단위의 집단 시위참가를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동·리 단위로 거행된 시위에서, 시위대가 동·리 안의 한 장소에 모여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장소로 향하였다. 앞서 본 김인환·최주환의 경우를 보면, 이미 주막리나 홍순필의 음식점에 많은 이민들이 모여 있었다. 윤의병이 이순만과 함께 20여 명의 인원을 이끌고 소하리 내대촌으로 가니까 면사무소 부근에 이미 약 50명이 모여 있었는데 최호천이 이를 인솔하고 있었다. 이때 최호천은 윤의병에게 “이 인원만으로 부족하니 내가리대리의 사람들도 모아서 습격하자.”하고 말을 꺼내고, 각각 이끌고 있던 시위대를 합하여 가리대리로 향하였다. 윤의병이 다시 부근의 동리인 내가리대리의 동민 1백 명을 더 모집하여 모두 2백여 명이 되었다. 이를 보면 시위인원을 동원하는 방식이 동·리의 단위로 이루어졌고, 또 행동도 무리를 지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 대중통제가 쉬웠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광명지역에서는 사전에 폭력 시위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당시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최호천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최호천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정석을 탈환하기 위해서 시위시간을 야간으로 잡았으며, 시위대에서 돌과 곤봉으로 무장하게 하였다. 나아가 경찰이 발포하면 돌과 곤봉으로 대항하라고 시위대를 교육시키고 있었다. 최호천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는 33인이 내걸었던 비폭력주의와는 근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장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야간에 시위한다면 경찰의 무차별 사격에 시위대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는 돌과 곤봉으로 시위대를 무장시킨 채 야간의 시위를 감행하였다. 경찰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대는 주재소의 게시판을 부수고 벽을 헐어 버리는 무력을 행사하였다. 또 최호천은 경찰이 시위대의 위협에 놀라 발포로 대응하리라 예상하고 시위대를 돌과 곤봉으로 무장시켰으며 발포할 경우 퇴각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선동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식층인 학생의 의식과 3·1독립만세운동이 폭력화하여 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광명시지 최홍규>

제4장 始興에서의 萬歲運動

3·1독립만세운동은 이후 약 60여 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나갔으며, 4월말이 지나서야 일단락되었다. 만세운동 중에는 전국 212개 시·군에서 약 1천 5백여 회나 꺾기하였고 참가자는 2백여 만명으로 추산되며 일경에 의한 피검자는 4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당시 일본경찰 통계로 발표된 사망자만도 7,509명, 또 부상자는 15,961명이라 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그 몇 배나 되었으며, 건물피해는 교회가 47개동, 학교 2개동, 인가는 715개동이 소각 또는 파괴되었다.

3·1독립만세운동에서 시흥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 23일 노량진에서 약 3백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나 곧 해산되었다. 3월 26일에는 신동면 양재리에서 3백여 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였으나 해산되었다. 3월 28일에 서면 소하리 소재 노은사경찰관주재소에서 소위 불온운동자 1명을 검거하였는데, 里民 약 3백명이 이를 탈환할 목적으로써 주재소로 몰려와 방화를 하며 시위하였으나 곧 해산되었다. 3월 29일에는 군내 여러 곳에서 약 1백명의 군중이 방화를 하고, 만세를 외침으로써 주모자 2명이 체포당하고, 일제의 총류 사격을 받은 후에야 해산하였다. 3월 30일에는 2천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였으나 곧 해산되었다. 31일에는 의왕면 군중 약 8백명이 면사무소 고천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함으로써 경찰관이 보병과 협력하여 해산시켰다. 같은 날 군포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약 2천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였으나 보병과 협력한 일경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4월 3일에는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방화하기 위하여 면민 전부에게 주재소 앞으로 집합하라는 취지의 협박

장을 면내의 각 리에 배포한 사람이 있었는데 4일 오전 11시 주재소 부근에 약 1천명의 주민이 집합하여 동소로 몰려갔으나 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비폭력적, 폭력적 시위에 가담하여 3월중 독립을 선언한 인원의 총계는 전 시흥군면 중에서 약 1,950명에 달하였다.

제5장 西面 (현, 광명시)

西面 所下里에서는 3월 27일 李貞石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老溫寺里 주재소에 강제 연행된 것을 발단으로 일어났다.

이정석의 아버지인 李宗遠(서면 소하리, 당56세, 受刑:2년), 崔浩天(서면 소하리, 당21세, 受刑:4년), 尹宜炳(동면 동리, 당20세, 受刑:3년), 金仁漢(동면 동리, 당21세, 受刑:1년 6월), 崔正成(동면 동리, 당22세, 受刑:1년 6월), 柳志浩(동면 동리, 당22세, 受刑:1년 6월), 최주환(동면 동리, 당35세, 受刑:1년 6월) 등이 주도하여 3월 28일 밤 소하리 주민 약 2백명을 규합하여 老溫寺里 경찰관주재소로 가서 포위하고 “이정석을 내 놓아라”고 함성을 질렀다. 주재소 안에 있던 일제 경찰들은 군중이 접근하자 불을 끄고 조용히 하였다. 군중은 몽둥이로 주재소 앞 계시판을 때려 부수고 뒷면 벽을 두들겨 보기로 하였다. 그래도 아무 기척이 없자 누군가가 이정석을 잡아간 경찰은 “조선인 최순사보와 김순사보”라고 소리치자 군중은 두 패로 나누어, 주력부대는 주재소를 포위한 채 만세를 부르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1부대는 김순사보의 거처를 찾았으나 벌써 도망치고 없었다. 다음 최순사보를 찾았으나 역시 없었다. 군중은 다시 주재소로 달려가 함성을 울리면서 “이정석을 찾으러 왔으니 내 놓아라.”고 외쳤으나 이정석은 본서로 넘어가고 없었다. 군중들이 흥분해서 “내 놓으라.”고 하자 경찰은 “본서에 가서 석방해 주마”고 하여 군중의 열기를 일단 무마시켰다. 이에 군중은 최호천에게 인솔된 채 주재소 구내에서 만세를 부르고 다시 보통학교 뒤쪽에서 만세를 부른 후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의해 이정석·이정원·최호천·윤의병·김인한·최정성·유지호·최주환 등은 모진 고문을 받고 투옥 당하였다. <시흥군지>

5_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재판 판결 번역문



여 백

제1장 판결 번역문

본 판결문은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에서 복사한 것임.

광명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및 주동자 최호천·윤의병·이종원(이종운)·김거봉(김인환)·최정성·유지호·최주환의 활약상과 전모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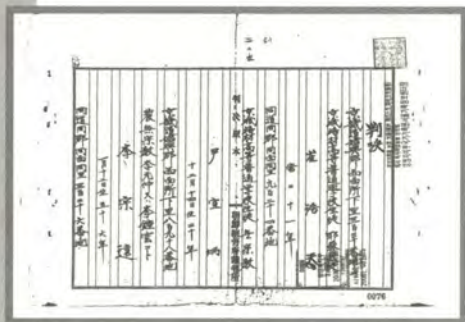
번역분과 판결문 축쇄본을 같이 게재한다.

이외에 윤의병의 1920년 형공 제80호 판결문, 윤의병·이종원·최정성의 1919년 형제86호 판결문, 최호천의 1920년 형고 제6호 판결, 1921년 제65호 판결문, 박홍석·연창수·장원겸의 융회 3년(1909) 판결문, 박홍석의 융회 3년 형상 제151호 판결서도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에서 복사하여 참고자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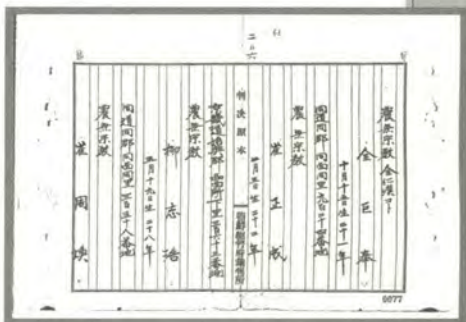
여기 공개하는 기록문서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문서들이다. 이번에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과 독립운동사 자료집을 집대성 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참고한 문서들이다.

이 참고자료에 광명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전모가 수록되어 있으며, 3·1독립만세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결과 등이 담겨져 있어 선인들이 대한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호천·윤의병·이종원·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 전원이 심리 판결 받은 분만 번역하여 게재하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서 기록한다.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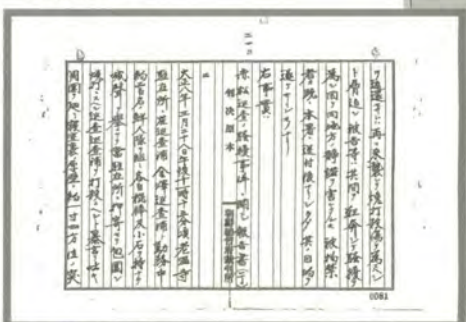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제2장 판결(判決)

■ 崔 浩 天 당 21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330번지 2

경성배재고등보통학교생도 (야소교도)

■ 尹 宜 炳 12월 4일생, 당 20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924번지

경성배재고등학교 생도 (무 종교)

■ 李 宗 遠 (李鍾雲·李元仲) 1월 12일생, 당 54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898번지

농업 (무 종교)

■ 金 巨 奉(金仁漢) 10월 15일생, 당 21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326번지

■ 崔 正 成 2월 3일생, 당 22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924번지

농업 (무 종교)

■ 柳 志 浩 5월 19일생, 당 28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363번지

농업 (무 종교)

■ 崔 周 煥 2월 18일생, 당 35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358번지

농업 (무 종교)

위 사람에 대한 소요(騷擾)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황전의태랑(黃田義太郎)이 간여 피고 최호천이 궤석한 상태에서 기타 각 피고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함.

주문(主文)

피고 최호천 징역 4년에 처함.

피고 윤의병 징역 3년에 처함.

피고 이종원 징역 2년에 처함.

피고 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단, 피고 최호천 궤석에 대하여는 본 판결을 송달받고 또는 판결 집행으로 형의 언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내에 사유가 있음을 신고할 것.

이유(理由)

피고 최호천·윤의병·이종운 또는 이종원·김인환 또는 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이종운 또는 이종원의 아들 이정성(李貞石)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치안법 위반죄로 인하여 노은사리 경찰관주재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 순사 주재소에 몰려 와서 이정석을 빼내고자 계획하고 소하리 동민 약 200명을 규합 동원하여 1919년 3월 28일 밤 피고 최호천이 민중을 통솔하고 피고 윤의병이 술선하여 군중을 지휘하고 피고 이종운(이종원)·김인환(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 4명과 여러 군중과 같이 동행하여 노은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이르러 함성을 지르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크게 소동을 벌여서 소동하였는데 순사 및 순사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군중 가운데 혹자는 주재소의 게시판을 쓰러 트리고 담장을 파괴하는 등 폭력의 조짐이 극에 달하여 동소 근무 아까마쯔(赤松) 순사, 최순사보, 김택(金澤) 순사보 등이 소등하고 부채를 가장하고 있으려니 군중이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피고 최호천이 인솔하고 노온사리 수사보 김정환 집에 가서 동 순사보의 행방을 수소문하였고, 다른 한 패는 피고 윤의병이 지휘하여 동리 순사보 최우창의 집에 찾아 가서 소재를 물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다시 주재소로 되돌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동소 근무 아까마쯔 순사가 소요를 일으킨 이유를 물은 즉, 피고 최호천과 윤의병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구금한 이정석을 빼내기 위해 군중이 몰려 왔으니 이정석을 석방시키든지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만약 인도하지 않거나 석방시키지 아니하면 불지르고 살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피고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소요를 일으켜 조용하던 동네를 소란케 한 자들로 피구급자인 이정석은 본서로 송치된 후에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한 자들이다.

위 사실은 아까마쯔(赤松) 순사의 소요사건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19년 3월 28일 오후 11시 15분경 노온사리 주재소 최순사보가 근무중 약 200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작당하여 각자 곤봉과 돌을 움켜쥐고 함성을 지르면서 당 주재소를 습격 포위하여 불지르든지 순사 순사보를 때려 죽이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주위를 에워싸고 침실 뒷벽에 약 1촌 사방의 구멍을 뚫었으며 또는 침실 문짝에 돌팔매 하여 연속적으로 소요를 일으켜 불을 끄고(消燈) 부재임을 가장하여 군중들이 물러나기를 기다렸으나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몰려 와서 주재소를 포위하고 후퇴할 기세를 보이지 않아 우리는 군중을 향하여 무슨 일로 소요를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구느냐고 물은 즉, 청년 두 사람이 나서서 우리들은 소하리에 거주하는 이정석이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정석을 석방 인도 받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정석을 인도하여 줄 것을 계속 주장하여 다음 날 본서에 출장가는 기회에 이정석

의 신병을 취하하도록 상신하겠다고 하니 최호천·윤의병 두 사람이 지금 한 약속을 이행치 아니하면 내일 밤 다시 습격하여 주재소에 불지르고 살상하는 행동을 하여도 무방 하느냐고 묻하고 노인 한 사람은 순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으니 각서를 쓰라고 주장하였으나 군중들이 틀림없다고 하니 믿어 보기로 하자고 하여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고 해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 윤의병에 대한 심문조서』

3월 28일 이순만(李順萬)에게서 이정석이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노온사 주재소에 구금되어 있어 그를 구출할 작정이니 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즉시 그 곳으로 갔더니 약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윤의병이 이순만과 같이 이들을 인솔하여 소하리 큰 마을에 갔는데 면사무소 부근에 약 50명이 모여 있었으며, 최호천이 이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때 이순만이 이 인원만으로는 부족하니 소하리의 가리대의 사람들도 모아서 습격하자고 하자 각각 데리고 있던 일행과 의논하여 가리대에 가서 최호천이 동민을 규합하여 약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최호천은 군중들에게 주재소를 습격하면 발포할지도 모르니 각자 곤봉·돌 같은 것을 휴대하고 순사가 발포하면 폭행을 하도록 발의하여 군중들과 주재소에 갔으며, 만세를 부르고 함성을 질러 의기충천하여 주재소를 포위하여 주식 아까마쓰 순사를 불렀으나 전혀 응답이 없어 군중을 두 갈래로 나뉘어 순사보 김정환의 집에 갔으나 집에 없어서 주재소로 되돌아 왔으며, 다른 일파는 최호천이 인솔하여 최순사보와 김택 순사보의 가택을 수색하였으나 집에 없어 다시 되돌아와 주재소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마쓰 순사가 나타나서 무슨 사정으로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느냐고 물은 즉, 그때 최호천이 이정석을 구출할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하니 동 순사는 이정석은 벌써 본서로 송치되어 여기 없다고 하면서 내일 본서에 가서 석방되도록 할 터이니 해산하

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만약 내일 이정석을 석방치 않으면 내일 밤에 다시 모여서 폭행과 소요를 일으키겠다고 하니 이정석의 아버지 이원중(李元仲)이 구두 약속은 믿을 수가 없으니 계약서(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자 동 순사는 각서를 쓰지 않더라도 약속은 지킬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하니 최호천이 일동을 인솔하여 주재소에서 철수하여 해산하였으며 나는 주재소를 파괴하라고 명령한 일도 없으며 숙직실 담벼락을 곧봉을 가지고 흙집을 낸 것, 게시판을 파괴한 것 등은 군중의 일부 무리들이 한 것 같으나 우리가 주재소에 왔을 때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 이종운에 대한 제1회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내 장남 이정석이 3월 27일 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다음날 노온사 경찰관 주재소 순사보 최우창 외 1명에게 인치되어 있는 사실을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서면 소하리 최호천에게 가서 인치된 사실을 알리고 이정석을 구출할 방법을 의논하였으니 오늘 밤에 동민들을 모아서 주재소에 쳐들어가서 구출할 터이니 안심하고 같이 가자고 하였으며, 마을 사람 약 100명을 규합하여 주재소로 향하여 동소를 포위하였으나 등화는 꺼져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간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 자기는 최호천과 같이 순사보 최우창의 집 주막의 온돌방을 주막 주인이 점등하여 방안을 살폈으나 최우창은 없었으며, 가나사와 순사보 집도 수색하였으나 역시 집에 없어 주재소로 되돌아 왔는데, 그때 일본인 순사가 실내에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하기에 최호천이 이정석이 주재소에 인치 되어 있어 구출하러 왔다고 하니 동 순사가 내일 본서에 가서 석방되도록 상신 할 터이니 해산하라고 하기에 나는 구두 약속만 갖고는 불안하니 증서를 써 달라고 강권하니 관리가 약속을 어기겠는가 틀림없이 조치하겠다고 채삼 약속하니 최호천이 일행을 인솔하여 주재소

구내에서 만세를 불렀으며, 또 보통학교 뒤편에서도 만세를 부르고 해산하였다.

일과 중 돌맹이·곤봉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나는 단장을 갖고 갔을 뿐 계시관을 파괴한 자도 있을 수 있으나 난폭한 짓을 시킨 일은 없다. 본 건 수괴자는 최호천이고 여기에 윤의병이 가담하여 지휘하여 주재소를 습격한 일단은 약 200명 정도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유지호에 대한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전날 밤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것 때문에 최순사보와 가나사와(金澤) 순사보에 의해 인치된 이정석을 구출하기 위해 노온사 경찰관 주재소에 쳐들어가는 것을 결행하는 것에 동네 사람 약 80명이 모였다.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운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정석을 빼내 오는 것을 부탁하였는데, 최호천·윤의병 두 사람이 모여 있는 인원 갖고는 부족하니 가리대리의 동네 사람도 규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일행이 가리대리로 향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 최호천과 윤의병 두 사람이 어제 저녁에 이정석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주재소 순사보에게 인치되어서 오늘 밤 이를 구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후, 군중을 인솔하여 밤 10시경 경찰관 주재소를 포위하였더니 주재소는 소등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위장하고 있었다. 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보를 찾을 목적으로 각 순사보의 가택을 포위하고 뒤졌으나 찾지를 못하고 주재소로 돌아 왔더니 일본인 순사가 나와서 최호천·윤의병 두 사람과 순식간에 단판이 이루어져 동 순사는 내일 송치를 취하고 석방시키겠다고 단언하였으나, 이종운이 증서를 쓸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틀림없이 방면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군중들은 만세를 높이 부르고 해산하였다.

위 소요 중 최호천이 일단을 인솔하여 순사보 최우창의 집과 순사보 가나사와(金澤)의 집을 포위하였는데 나는 최순사보의 집을 포위 수색할 때 문밖에 서 있었으며, 동 순사보는 음식점에 하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불러서 불을 켜게 하고 윤의병·최호천 두 사람이 온돌방문을 열고 실내를 살폈으나 없어서 나는 윤의병을 따라서 순사보 김정환의 집으로 가서 윤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으나 없다고 하여 최호천이 가나사와 순사보 집을 포위 수색하였으나 나는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최윤삼(崔允三)·심참봉(沈參奉)·이봉완(李奉完) 등이 곤봉을 휴대하고 있었으나 주재소 담벼락을 파괴한 것은 누가 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게시판을 파괴한 것은 최윤삼·심참봉·이봉완 등의 소행이었다. 라고 공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 김인한에 대한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노온사 경찰관 주재소에 인치 되어 있는 이정석을 구출하기 위해 주막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가보니 많은 부락민들이 모여 있었다. 일행이 가리대리에 가서 동구 밖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부르고 동민을 규합한 바, 약 100여 명의 많은 사람이 모였다. 최호천·윤의병이 군중을 향하여 이정석을 구출하기 위해 주재소에 쳐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노온사 주재소를 포위하였으나 주재소는 사람이 없는지 조용하여 최호천·윤의병이 지휘하여 순사보의 가택을 포위·수색하였으나 순사보 등이 도망가고 없어 주재소로 되돌아 왔는데, 그때 일본인 순사가 창 밖으로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물으니 최호천·윤의병이 이정석을 구출하고 인도받기 위해 왔다고 하니 일본인 순사가 내일 본서에 가서 이정석을 방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언하였으나,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운이 구두 약속은 믿을 수가 없으니 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주재소의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다. 주재소 뒤 담벽은 누가 파손하였는지는 모르며 게시판은 주재소를 습격하였을 때 선두에 선 누군가가 파괴하였을 것이나 누가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최호천은 가리대리에서 주재소에 가는 도중 곤봉이나 돌맹이를 휴대하려고 하였으나 주재소 앞에서 세를 과시하였으나 만일 주재소 직원이 발포 또

는 폭행하여도 절대 퇴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곤봉이나 돌맹이를 갖고 대항하라고 지휘하였으나 나는 뒤에서 따라 갔을 뿐이라고 공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 최정성에 대한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오후 7시경 면사무소 아래에 있는 음식점 부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가보니 최호천이 여러 사람에게 오늘 밤 노온사 경찰관 주재소에 쳐들어가서 어제 밤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인치 된 이정석을 구출하고 인도 받기 위해 가는 것인데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니 소하리 내의 가리대리 사람들도 규합하여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가리대리에서 사람을 모으니 약 80명 정도가 되어 최호천·윤의병 등이 앞장서고 최호천이 주재소에 쳐들어가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돌맹이 또는 곤봉 같은 것은 휴대하고 있다가 이정석을 인도하라고 외칠 때 경찰관이 발포하면 곤봉과 투석으로 대항하자고 하였으며, 최호천은 위세 당당하게 100여 명을 인솔하여 주재소를 향하여 포위하였으나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다.

일행은 순사보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순사보들도 피하고 없어 부득이 주재소로 되돌아오니 일본인 순사와 최호천·윤의병·이종운이 순사와 단판을 하고 있었다. 단판 결과 동 순사가 내일 본서에 가서 방면되도록 할 것이니 해산하라고 하여 구두 언질을 받고 해산하였다. 주재소를 포위할 때 주재소 담 벽이 파괴되고 게시판이 손상된 것은 누구의 짓인지 알지 못한다고 공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 최주환에 대한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오후 7시경 홍순필이라고 하는 음식점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최호천·이종운 두 사람이 오늘 밤 노온사 주재소를 습격하여 이종운의 장남 이정석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것임

니다. 만약 노온사 주재소를 포위하여 순사 순사보들이 도피하여 없으면 동순사보의 집을 뒤지고 그곳에 없어서 다시 주재소로 돌아왔더니 일본인 순사가 최호천·윤의병 두 사람과 담판하여 이종석을 방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종운이 증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으나 구두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언질을 믿고 군중들은 해산하였으며, 군중을 인솔·지휘한 자는 최호천·윤의병·이종운 세 사람이고, 이번 사건을 최호천과 이종운이 최초 상의하여 결행하게 되었으며 그 수는 약 250명 정도 되었다.

주재소 포위 중 담벽이 훼손되고, 게시판이 파괴된 것은 선두에 섰던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사료되나 누구의 짓인지 나는 모른다. 윤의병은 김순사보가택을 최호천은 가나사와 순사보의 가택을, 수색하였고 나도 동행하였다고 공술 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증인 박제인(朴濟仁)에 대한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오후 11시경 군중이 사택을 포위하고 앞 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여 최순사보를 때려 죽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주인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고 공술함.

이상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행위를 인정할 만하다. 법률에 비추어 최호천·윤의병·이종원·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은 구금되지 않은 자를 구출·탈환하고자 한 행위는 형법 제99조, 제102조의 소요의 행위와 피고 최호천·윤의병에 대하여는 동법 제106조 제3호 각 호에 해당되며, 위의 1개 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죄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를 적용하여 피고 최호천·윤의병에 대하여는 무거운 소요죄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에 대하여는 구금자 탈취 미수죄의 형에 따라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고자 공소사실 중 피고 최호천은 가택침입 및 게시판과 담 벽을 파괴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함으로

무죄를 언도할 수 있으며, 연루자 여부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언도할 수 없으며, 피고 최호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6조 내지 제229조를 적용하여 결석 판결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기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田中芳春

조선총독부 판사 金川廣吉

조선총독부 판사 鏡 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서기 岡部弘一

❖ 대정 8년(1919) 형 제865호 판결 고등법원

■ 피고 윤의병

■ 피고 이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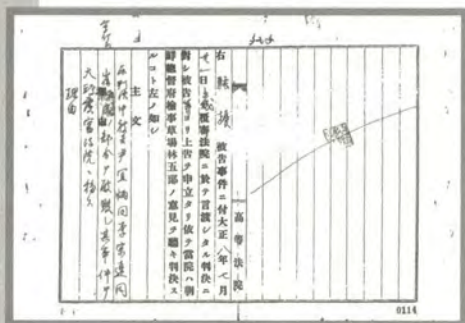
■ 피고 최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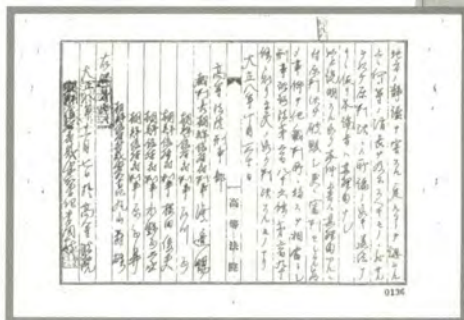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 대정 8년(1919) 10월 30일 판결 고등법원

■ 피고 윤의병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illegible]

국립 공예관

[illegible]

국립 공예관

[illegible]

국립 공예관

[illegible]

국립 공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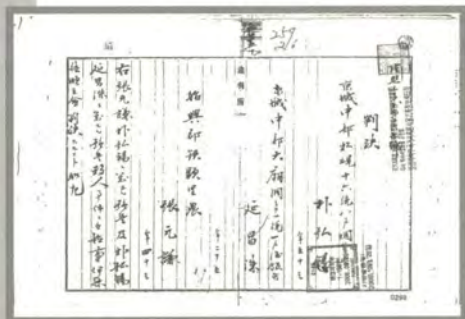
[illegible]

국립 공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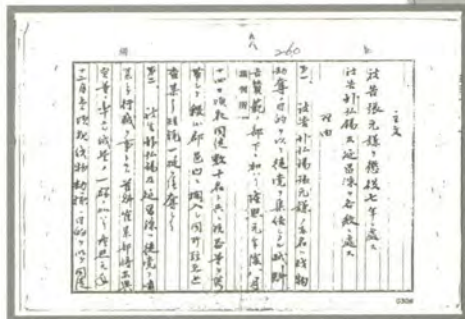
[illegible]

국립 공예관

■ 피고 박흥석 ■ 피고 연창수 ■ 피고 장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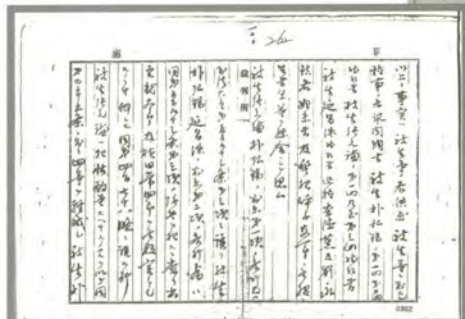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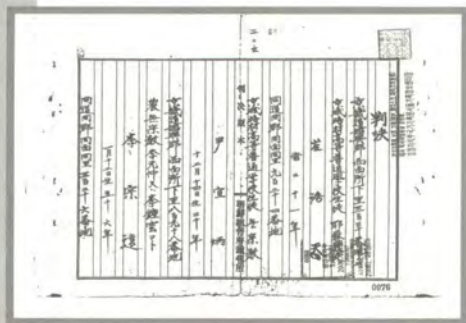
3·1독립만세운동 유공자 · 항일독립운동가

1. 김인한 (金仁漢, 일명 金巨奉, 1899. 10. 15 ~?)

始興郡 西面 所下里(현 광명시 소하동) 326번지 출신으로 李貞石의 老溫寺里 경찰관 주재소 강제 구금 사건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신문조서에서 1919년 3월 28일 시위 전개과정과 자신의 참가 정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19년 3월 28일 老溫寺 경찰관 주재소에 인치된 이정석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었으므로 酒幕里(주막거리)라는 곳에 가서 보니 다수의 이민이 모여 있었는데, 최호천은 또한 소하리의 가리대리 이민을 모은 후 일동이 가리대리로 가서 어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또 이민을 규합하여 총세력 100여 명이 되어 최호천·윤의병이 지휘하였다”

이 진술에서 인한은 자신을 독립만세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따라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중(重)한 구금자 탈취 미수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 받았다. 이후 항소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종원·최충성이 3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보아 이와 동률이나 이하의 형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註.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5]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재판 판결 번역문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으로, 1919년 3월 28일 노온사리(老溫寺里) 일대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당시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학생으로서 귀향하여 있던 중, 3월 27일 같은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이 서면 소하리(西面所下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노온사리에 있는 경찰 주재소에 연행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 윤의병

이에 그는 최호천(崔昊天)과 함께 동리사람들에게 주재소에 갇혀 있는 이정석을 구하고자 제의하여 1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향하던 중, 내가대리(內加垓里) 주민 1백여 명이 가세하였다.

주재소에 도착하여 그는 군중의 지휘를 맡고 최호천이 통솔하였으며, 이종운(李鍾雲)·김인한(金仁漢)·최정성(崔正成)·유지호(柳志浩)·최주환(崔周煥) 등이 선두에 서서 주재소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때 시위 군중은 주재소 게시판에 쓰러뜨리고 뒷벽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그 곳의 순사와 순사보들은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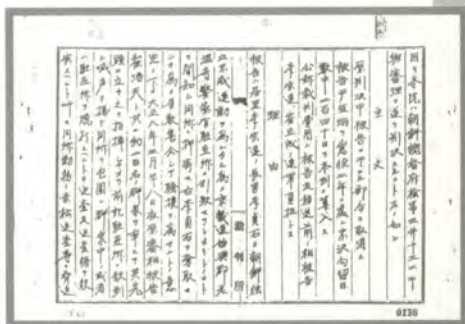
이에 그는 군중을 두 갈래로 나누어, 한 갈래는 자신이 인솔하고 다른 군중은 최호천이 인솔하여 각각 이정석을 체포했던 조선인 순사보 김정환(金定煥)과 최우창(崔禹昌)을 잡으러 다녔다.

결국 잡지 못하고 다시 주재소에 모여서 독립만세와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자, 주재소 안에 숨어 있던 일본인 순사 적송(赤松)이 불을 켜고 나와 이정석의 석방을 약속하였다. 이에 그는 시위군중을 보통학교 뒤쪽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만세를 외치게 하고 해산시키는 등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으며,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919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고등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대구복심법원에 이관되어 1919년 12월 19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평양복심법원으로 이관되어 1919년 12월 19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1927년 11월 중순 경부터는 시흥군 서면 소하리 지역에서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야학운동을 주도하여 이 지역에서 노동야학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묘소는 광명시 소하동 뒷산에 있으며 슬하에 世重과 弘重이 있다^註.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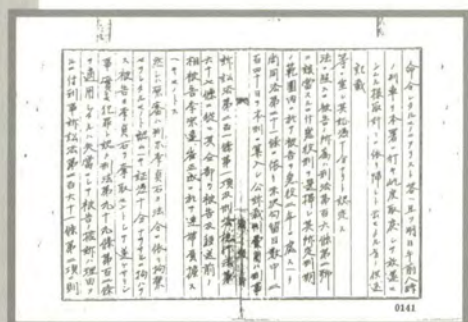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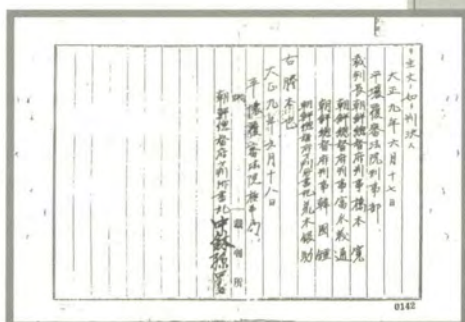
註・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140~141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卷 282~288面

・始興郡誌・光明市誌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공훈록

민족정기선양센터 프린터페이지

성명(한자)	윤의병(尹宜炳)
생존기간	1900. 12. 14 ~ 1960. 9. 29
출생지	경기 시흥
운동계열	3·1 운동
훈격(연도)	애족장(90)

공적내용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으로, 1919년 3월 28일 노온사리(老溫寺里) 일대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당시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학생으로서 귀향하여 있던 중, 3월 27일 같은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이 서면 소하리(西面 所下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노온사리에 있는 경찰 주재소에 연행되어 잡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그는 최호천(崔浩天)과 함께 동리사람들에게 주재소에 갇혀 있는 이정석을 구하자고 제의하여 1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향하던 중, 내가대리(內加垜里) 주민 1백여 명의 가세하였다.

주재소에 도착하여 그는 군중의 지휘를 맡고 최호천이 통솔하였으며, 이종운(李鍾雲)·김인한(金仁漢)·최정성(崔正成)·유지호(柳志浩)·최주환(崔周煥) 등이 선두에 서서 주재소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때 시위군중은 주재소 계시판을 쓰러트리 고 뒷벽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그 곳의 순사와 순사보들은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그는 군중을 두 갈래로 나누어 한 갈래는 자신이 인솔하고 다른 군중은 최호천이 인솔하여 각각 이정석을 체포했던 조선인 순사보 김정환(金定煥)과 최우창(崔禹昌)을 잡으로 다녔다.

결국 잡지 못하고 다시 주재소에 모여서 독립만세와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자, 주재소 안에 숨어 있던 일본인 순사 적송(赤松)이 불을 켜고 나와 이정석의 석방을 약속하였다.

이에 그는 시위군중을 보통학교 뒤쪽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만세를 외치게 하고 해산시키는 등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으며, 계속 끈질긴 법정투쟁을 하였으나, 1920년 6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註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40~1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82~288면

제적

<p>2P</p> <p>京畿道始興郡 四 面 新 下 里 九 百 餘 番 地</p>	
<p>主</p> <p>尹 順 任</p>	<p>戶</p> <p>尹 順 任</p>
<p>主 戶 前</p>	

16815TE1520EN106153222110045230

7 - 2

◆ 판결문 원본

3. 유지호 (柳志浩, 1892. 5. 19 ~ 1977. 5. 4)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하였다. 3·1운동 당시 28세로, 시흥군 서면 소하리 363 번지 소재에 거주하였으며, 직업은 농업이었다.

그는 최호천·윤의병·이종원·김인한·최정성·최주환 등과 함께 1919년 3월 27일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된 이정석의 탈환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그의 경찰의 심문조서는 다음과 같다.

28일의 시위운동이 그 전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최순사보와 금택순사보 양인에게 인치된 이정석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집합 인원, 주모자가 최호천·윤의병이라는 점에서 다른 진술자들과 일치하며 시위 전개 과정 역시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진술자들은 시위대중의 폭행, 즉 벽을 허물고 게시판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으나 유지호는 최윤삼·심태봉·이봉원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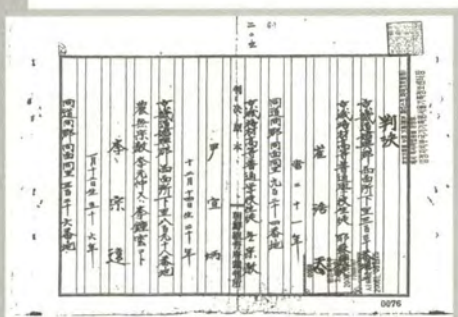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중(重)한 구금자 탈취 미수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追敘)하였다^註.

註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38~141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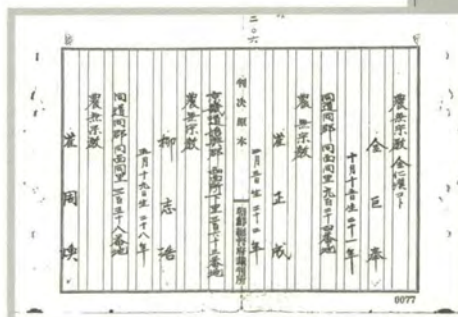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82 ~ 288面

• 始興郡誌 • 光明市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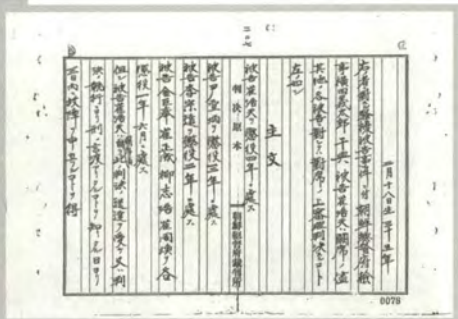
◆ 3·1 독립만세운동 유공자·항일 독립운동가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공훈록

민족정기선양센터 프린터페이지

성명(한자)	유지호(柳志浩)
생존기간	1892. 5. 19 ~ 1977. 5. 4
출생지	경기 시흥
운동계열	3·1 운동
훈격(연도)	애족장(90)



류지호

공적내용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시흥군 서면 소하리(西面 所下里)에 거주하였으며, 이 곳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서면 소하리에서는 1919년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 경찰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자 이것이 봉기의 발단이 되었다.
 3월 28일 최호천(崔浩天)·김거봉(金巨奉)·최정성(崔正成) 등과 같이 구금된 이정석을 구출코자 군중 500여 명과 함께 노온사리 주재소를 습격·파괴하였다. 군중이 몰려오자 주재소 안에 있던 일경들은 쫓겨나듯 고요하였다. 군중이 함성을 울리며 일경들을 죽인다고 위협하자 "이정석은 본서로 넘겨 여기에 없으니 본서에 가서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시위군중은 보통학교 뒷산으로 올라가서 독립만세를 부른 후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간악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騷擾)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138~14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82~288面

접 수 번 호	공 적 조 서			
5960				
본 적	京畿 始興 西面 所下里 363	주소	좌동	
소 속 (독립운동당시)	3·1 運動	시위 및 계급	농업	
성 명	柳 志 浩	생 년 월 일	1982. 5. 19	사망년월일 1977. 5. 4
독립운동기간		활 동 지 역	始興	
수 형 년 수	懲役 1年 6月	복 역 년 수		
변 절 여 부		추 천 훈 격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성 명	金 德 洙 ①
의 건	<p>1919.3.28. 京畿道 始興郡 西面 所下里에서 崔浩天 등과 함께 3. 27 獨立萬歲示威를 하다 拘禁된 李貞石을 救出하기 위하여 群衆 500餘名과 함께 老溫寺里 駐在所를 襲撃하여 揭示板과 뒷壁 등을 부수며 倭警들에게 李貞石을 釋放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威脅하며 獨立萬歲를 高唱示威中 被逮되어 懲役 1年 6月을 받은 功績이 認定되므로 建國勳章 受族章에 該當하는 분으로 思料됨.</p>		
<p>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p> <p>1990. 7. .</p> <p>국 가 보 훈 처 장</p> <p>총무처장관 귀하</p>			

공 적 사 항

유공자명 : 柳 志 浩 이명 : _____

1. 1919. 3. 28 京畿道 始興郡 西面 所下理에서 崔浩天·金巨奉·崔正成 등과 같이 3. 27 獨立萬歲示威를 하다가 拘禁된 李貞石을 救出코져 群衆 500餘名과 함께 老溫寺里 駐在所를 襲擊하고 揭示板과 뒷壁을 부수고 倭警들을 죽인다고 威脅하면서 獨立萬歲를 高唱하며 示威中 被逮됨.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38 139 140 141面 參照]

2. 1919. 5. 28 京畿地方法院에서 所謂 騷擾로 懲役 1年 6月을 받음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5輯 283面 確認]

No. 1

월

일

경기도시흥군서면 소하 리 촌 서면지

년

서기 1919년 4월 25일 丙辰年 丙辰月 丙辰日에 의하여 서면지

서기 1919년 4월 25일 丙辰年 丙辰月 丙辰日에 의하여 서면지

서기 1919년 4월 25일 丙辰年 丙辰月 丙辰日에 의하여 서면지

정호주의
의 관제

부 朴 錫 奎

모 姜 李 甲 順

정호지

정호지

임신호지

출생

서면지

서면지

서면지

서기 1919년 4월 25일 丙辰年 丙辰月 丙辰日에 의하여 서면지

서기 1919년 4월 25일 丙辰年 丙辰月 丙辰日에 의하여 서면지

서기 1919년 4월 25일 丙辰年 丙辰月 丙辰日에 의하여 서면지

9 - 2

❖ 판결문 원본

4. 최호천 (崔浩天, 1899. 1. 9 ~ 1960. 4. 12)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서면 소하리(西面 所下里)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재학생으로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 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3월 28일 밤 윤의병(尹宜炳) 등 동지 5명이 앞장을 서서 동리사람을 모아 놓고 이정석을 구출해 오자고 제의하여 동리 주민 1백여 명의 찬동을 얻어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길을 떠나기 전에 윤의병은 부근 동리의 주민을 더 모집하여 군중 수는 모두 500여 명이 되었다.

3월 28일 밤에 최호천이 5백여 명을 통솔하고 윤의병이 앞에서 인솔하며 노온사 주재소를 향하였다. 이종원과 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 등 5명이 최호천과 더불어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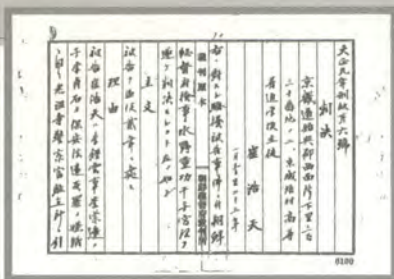
이 시위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최호천은 군중에게 “우리가 주재소를 습격하면 경찰들이 발포할지 모르오. 각자 곤봉과 돌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만일 경찰이 발포하면 때려 부숴야 하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동리 사람들은 곤봉과 돌을 준비하고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시위행렬은 먼저 주재소를 포위하고 “이정석을 내 놓아라”고 함성을 질렀다. 또한 군중속의 일부는 주재소의 게시판을 넘어뜨리고 뒷벽을 파괴하는 등의 폭력 행사도 하였다. 그러나 주재소 내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군중은 두 패로 나누어져 한 패가 최호천의 인솔을 받아서 노온사리 순사보를 찾아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그는 순사가 시위 운동의 이유를 묻자 당당히 이정석을 탈환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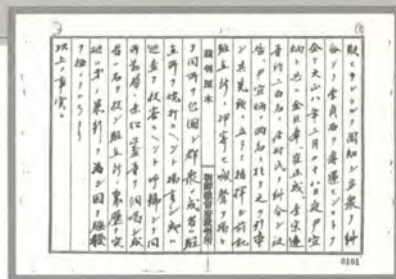
내습하였다는 뜻을 밝혔으며, 그의 석방을 강청하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정석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시 내습하여 불태우고 죽여버리겠다”고 순사들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이정석은 이미 본서로 송부된 후였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주도하였던 최호천은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의 권석재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언도 받았고, 다시 1921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2년형을 언도 받아 항고하였으나 1921년 2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註.

..... 【5】 광명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재판 판결 번역문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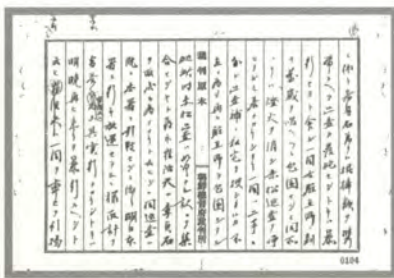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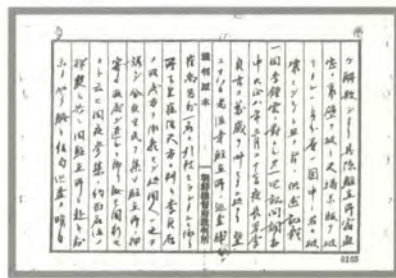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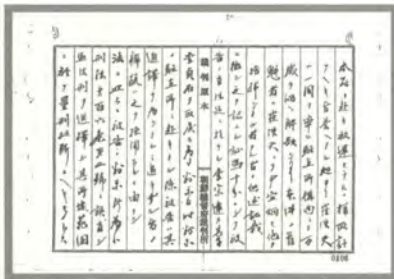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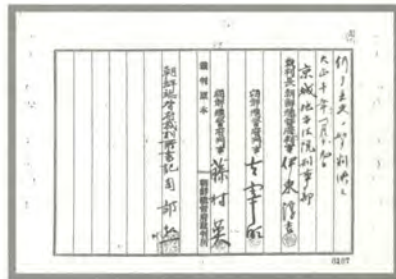
판결문 원본



판결문 원본



판결문 원본



판결문 원본

註・判決文(1919. 5. 28 / 1921. 1. 19 京城地方法院)

・判決文(1921. 2. 28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第2卷 140~141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第5輯 282~288面・始興郡誌・光州市誌

◆ 3·1 독립만세운동 유공자·항일 독립운동가

접 수 번 호	공 적 조 서			
5960				
본 적	京畿 始興 西面 所下里 330-2	주소	左 同	
소 속 (독립운동당시)	3·1 運動	시위 및 계급	京城培材高等 普通學校學生	
성 명	崔 浩 天	생 년 월 일	1899. 1. 9	사망년월일 1960. 4. 12
독립운동기간		활 동 지 역	始 興	
수 형 년 수	懲役 2年	복 역 년 수	2 年 2 月	
변 절 여 부		추 천 훈 격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성 명	金 德 洙 ㉑
의 건	<p>1919.3.28. 培材高等普通學校 學生으로 始興郡 西面 所下里에서 主動이 되어 3. 27 李貞石 등이 獨立示威를 하다 駐在所에 強制 連行되자 이를 救出키 위하여 洞里群衆 500餘名을 糾合하고 老溫寺里 駐在所를 包圍하여 倭警을 威脅하면서 獨立萬歲를 부르며 示威하였는데 關席裁判에서 懲役 4년을 받았다가 1920 年末에 被逮되어 懲役 2年을 받은 功績이 認定되므로 建國勳章 愛族章에 該當하는 분으로 思料됨.</p>		
<p>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p> <p>1990. 7. .</p> <p>국 가 보 훈 처 장</p> <p>총무처장관 귀하</p>			

공 적 사 항

유공자명 : 崔 浩 天 이명 : _____

1. 1919.3.28. 培材高等普通學校 學生으로 京畿道 始興郡 西面 所下里에서 主動이 되어 3. 27 李貞石 등이 獨立萬歲示威를 하다 駐在所에 強制 連行됨에 이를 救出키 위하여 洞里群衆 500餘名을 糾合 老溫寺里 駐在所를 包圍 襲擊하고 倭警들을 威脅하며 獨立萬歲를 高唱 示威하다 被逮됨.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0~141面 參照]

2. 1919. 5. 28 京畿地方法院 關席裁判에서 所謂 保安法으로 懲役 4年을 받음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5.28) 確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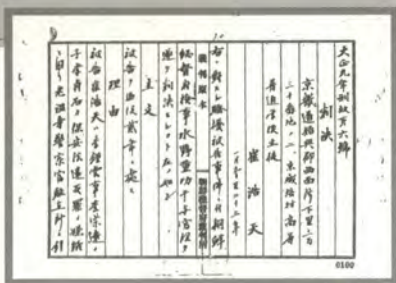
3. 1921. 1. 19 京城地方法院에서 所謂 騷擾로 懲役 2年을 받음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1.1.19) 確認]

4. 1921. 2. 28. 京城覆審法院에서 抗訴 棄却됨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2.28) 確認]
[獨立運動史資料輯(國家報勳處) 第5輯 282~288面 確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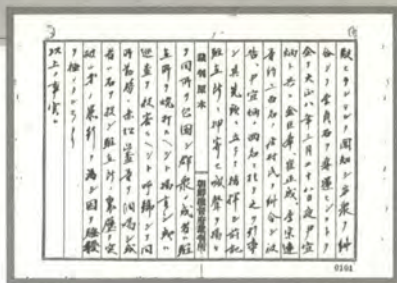
공훈록

민족정기선양센터 프린터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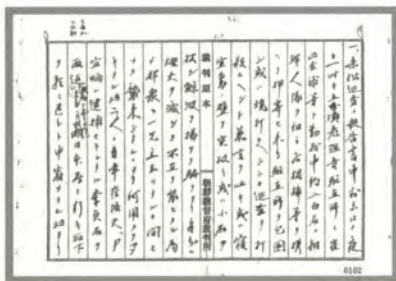
성명(한자)	최호천(崔浩天)
생존기간	1899. 1. 9 ~ 1960. 4. 12
출생지	경기 시흥
운동계열	3·1 운동
훈격(연도)	애족장(90)
공적내용	<p>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p> <p>1919년 당시 시흥군 서면 소하리(西面 所下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재학생으로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p> <p>1919년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 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3월 29일 밤 윤의병(尹宜炳) 등 동지 5명이 앞장을 서서 도리사람을 모아 놓고 이정석을 구출해 오자고 제의하여 동리 주민 1백 여명의 찬동을 얻어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길을 떠나기 전에 윤의병은 부근 동리의 주민을 더 모집하여 군중 수는 모두 500여 명이 되었다.</p> <p>그는 이날 밤 5백 여명을 통솔하여 노온사리 주재소로 향하였다. 각자 끈봉과 돌을 준비한 시위대는 경찰주재소를 포위 습격하고 일경을 위협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피체되었다.</p> <p>그리하여 이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의 결석재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연도 받았고, 다시 1921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2년형을 연도받아 항고하였으나 1921년 2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p> <p>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p> <p>註 · 判決文(1919. 5. 28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1. 1. 19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1. 2. 28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138~14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82~288面</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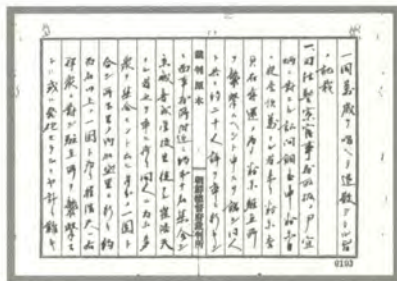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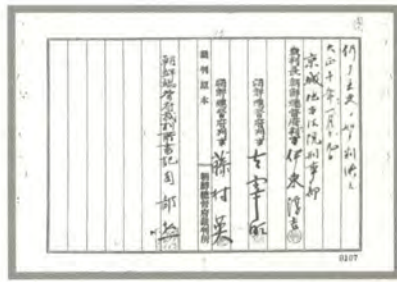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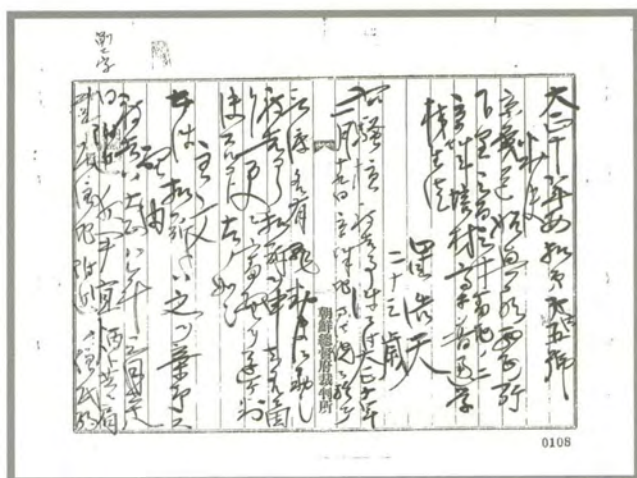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밤 시흥군 서면 소하리에서 아들 이정석이 독립만세 시위 운동에 참가 활동하다가 노은사리에 있는 경찰관 주재소에 검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들의 석방을 목적으로 곤봉과 돌을 가지고 동민 200여 명을 이끌고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서 함성을 울리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계시관과 주재소 건물 등을 파괴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이종원 아들의 강제연행에 관하여 같은 동리 최호천·윤의병 등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것이 3월 28일 西面의 독립시위가 일어나게 된 발단이 되었다. 종원은 체포된 후 제1회 신문조서에서 28일 사건의 추이에 관하여 “1919년 3월 28일 나의 장남 이정석이 3월 27일 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이튿날 노은사 경찰관 주재소 순사보 최우창 외 1명에게 인치되었으므로, 같은 날 저녁때 서면 소하리 최호천의 집에 가서 인치된 사실을 알리며 탈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최호천은 “그러면 오늘 밤 이민들을 모아서 주재소로 몰려가 찾아 줄 터이니 안심하라. 당신도 동행하자”고 하였다. 모여 온 약 1백명 가량이 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가서 그 곳을 포위하니 주재소에서는 등불을 끄고 전혀 인격이 없었으므로 일단은 두 패로 갈라져서 자신은 최호천이 인솔하는 쪽에 가담하였으며, 순사보 최우창의 집은 주막의 온돌방이었으므로 주막 주인에게 “등불을 켜라”하여 방 안팎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금택 순사보의 집도 수색하였으나 없어서 다시 주재소로 몰려갔다. 그때 내지(일본)인 순사가 실내에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하여 최호천이 이에 대답하기를 “이정석을 돌리라”고 제의하니, 그 순사는 “명일 본서에 가서 놓아 보내도록 조치하겠으니 해산하라”고 하였다. 이어서 나는 “말로 약속한 것으로는 안심

이 안되니 각서를 쓰라"고 강박하였으나, 순사는 "관리인데 약속을 어기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호천은 "일단을 이끌고 주재소 구내에서 만세를 외쳤으며, 또 보통학교 뒤편에서 만세를 부르고 해산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28일의 사건 관계로 체포된 이종원은 진술에서 주모자는 최호천과 윤의병이고, 자신은 주모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처럼 주재소의 게시판을 파괴하는 등의 폭행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해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2년형을 언도 받고, 동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였다. 8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다시 대구복심법원에 이관(移管)되어 1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 30원(圓)을 언도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註.



◆ 판결문 원본

공훈록

민족정기선양센터 프린터페이지

성명(한자)	이종원(李宗遠, 李鍾雲, 李元仲)
생존기간	1864. 1. 12 ~ 1960. 4. 12
출생지	경기 시흥
운동계열	3·1 운동
훈격(연도)	대통령표창(92)
공적내용	<p>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p> <p>1919년 3월 28일 밤 시흥군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에서 아들 이정석(李貞石)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활동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에 있는 경찰주재소에 검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들의 석방을 목적으로 곤봉과 돌을 가지고 주민 200여 명을 이끌고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서 함성을 올리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게시판과 주재소 건물 등을 파괴하다가 일경에서 피체되었다.</p> <p>이해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였다.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구복심법원에 이관(移管)되어 1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30만원(圓)을 언도받고 출옥하였다.</p> <p>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p> <p>註・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0~141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82~288面</p>

6. 최정성 (崔正成, 1898. 2. 3 ~ ?)

최정성은 시흥군 서면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 출신으로 최호천·윤의병·이종원·김인환·유지호·최주환 등과 함께 같은 동리에 사는 이정석의 탈환 사건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경찰의 신문조서에서 사건의 전개과정을 “1919년 3월 28일 오후 7시경 면사무소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최호천이 그들에게 “오늘 발老溫寺里 경찰관 주재소로 일동이 몰려가 어제 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가 인치된 이정석을 찾아 오기 위하여 간다”고 하며, “지금 이들만으로는 부족하니 소하리의 가리대리 주민까지도 모으자”고 제의하여, 그 동리 사람들을 모으니 약 80명 가량 되었으며, 최호천이 선두에 서서 이민을 모으고 ‘돌이나 곤봉을 휴대하라. 만약 이정석을 내 달라고 강박하여 발포함과 같은 일이 있으면 돌이나 곤봉으로 대항하라’고 말하여 최호천이 이들을 인솔하고서 합세하니 인원수가 1백여 명이 되었다.

나는 주모자인 최호천·윤의병과 함께 주재소로 가서 이정석을 잡아간 순사보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일본인 순사와 최호천·윤의병·이종원이 담판한 끝에 “다음날 본서에 가서 석방할 것이라는 약속을 일본인 순사로부터 받아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최정성은 이 사건의 적극 가담으로 인하여 대구복심법원에 의하여 벌금 30원에 처하여졌다.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중(重)한 구금자 탈취미수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19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유죄 판결(형량은 알 수 없다)을 받았다. 이어 고등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대구복심법원에 이관되어 1919년 12월 19일 3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註.

7. 최주환(崔周煥, 1882. 2. 18 ~ 1950. 7. 15)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서면 소하리(西面 所下里) 358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 소하리에서는 1919년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 등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 경찰 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자 이것이 봉기의 발단이 되었다.

3월 28일 밤 그는 최호천·윤의병·김거봉·최정성 등과 5백여 명을 동원하여 노온사리 주재소로 몰려갔다. 흥분한 군중이 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자 일경들은 귀 죽은 듯 고요하였다. 군중이 함성을 울리며 위협하자 “이정석은 본서로 넘기고 여기에는 없으니 본서로 가서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시위 군중은 뒷산으로 올라가서 독립만세를 부른 후 자진해산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간악한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번 사건은 최호천과 이종원이 맨 처음 의논한 이후 결행된 것이며, 군중을 인솔 지휘한 자는 최호천과 윤의병·이종원의 3인이다. 군중은 약 250명 정도이다. 벽과 게시판을 부순 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은 순사보들의 집을 수색하는데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중(重)한 구금자 탈취미수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다註.

註・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0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2輯 282~288面

・始興郡誌 ・光明市誌

◆ 3·1독립만세운동-유공자-항일 독립운동가

공훈록

민족정기선양센터 프린터페이지

성명(한자)	최주환(崔周煥)
생존기간	1882. 2. 18 ~ 1950. 7. 15
출생지	경기 시흥
운동계열	3·1 운동
훈격(연도)	애족장(90)
공적내용	<p>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p> <p>1919년 당시 시흥군 서면 소하리(西面 所下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p> <p>이곳 소하리에서는 1919년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 경찰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자 이것이 봉기의 발단이 되었다.</p> <p>3월 28일 밤 그는 최호천(崔浩天)·윤의병(尹宜炳)·김거봉(金巨奉)·최정성(崔正成) 등과 5백 여명을 동원하여 노온사리 주재소로 물려갔다. 흥분한 군중이 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자 일경들은 쫓겨온 듯 고요하였다. 군중이 함성을 울리며 위협하자 “이정석은 본서로 넘기고 여기에는 없으니 본서로 가서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시위 군중은 뒤편으로 올라가서 독립만세를 부른 후 자진해산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간악한 일경에 피체 되었다.</p> <p>그 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 받아 옥고를 치렀다.</p> <p>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하였다.</p> <p>註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0~14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82~288面</p>

제적

<p>京畿道姑興郡 西門外 下馬路 五八番地</p>	
<p>主 戶 前</p>	<p>主 戶 后</p>
<p>父 崔 周 煥 母 崔 氏 長 女 崔 氏 次 女 崔 氏 三 女 崔 氏 四 女 崔 氏 五 女 崔 氏 六 女 崔 氏 七 女 崔 氏 八 女 崔 氏 九 女 崔 氏 十 女 崔 氏</p>	<p>父 崔 周 煥 母 崔 氏 長 女 崔 氏 次 女 崔 氏 三 女 崔 氏 四 女 崔 氏 五 女 崔 氏 六 女 崔 氏 七 女 崔 氏 八 女 崔 氏 九 女 崔 氏 十 女 崔 氏</p>

◆ 판결문 원본

경기도 시흥군 서면 철두리(始興郡 西面 鐵頭里, 지금의 광명시 철산리) 324번지 사람이다. 길찬범(吉贊範) 의진에 참여하여 충남 직산(稷山)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에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종교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 군인들이 대거 의병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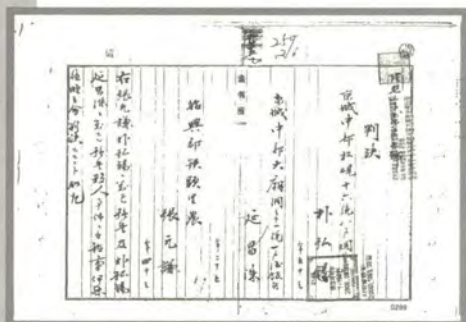
장원겸은 이 같은 시기인 1907년 박홍석(朴弘錫) 등과 함께 길찬범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해 8월 14일 동료 의병 수십 명과 더불어 충남 직산군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병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1909년 5월 6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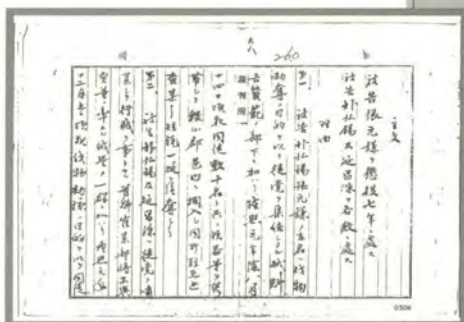
공훈록

민족정기선양센터 프린터페이지

성명(한자)	장원겸(張元謙)
생존기간	1909;43세 ~
출생지	경기 시흥
운동계열	의병
훈격(연도)	애족장(90)
공적내용	<p>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p> <p>길찬범(吉贊範) 의진에 참여하여 충남 직산(稷山)에서 활약하였다.</p> <p>1905년 11월 「을사특약(乙巳特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종교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 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p> <p>장원겸은 이 같은 시기인 1907년 박홍석(朴弘錫) 등과 함께 길찬범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해 8월 14일 동료 의병 수십 명과 더불어 충남 직산군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병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1909년 5월 6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p> <p>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p> <p>註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輯 105 · 106面</p>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 판결문 원본

계적

<p>京畿道始興郡西面所下里參武四番地</p>		<p>戶主張仁浩 死二回 南國四九五年九月七日 主上十九 朴義全 同 南國四九五年九月七日 主上十九 昭和四年七月廿六日 前六時 始興郡西面所下里參武四番地 死 同 居者張元兼 同 月 主上十九 相續人 主上二回 始興郡昭和八年九月十日 京畿道法院 許可 昭和四年九月十日 日本 籍 主上十九</p>		<p>昭和六年九月廿六日 主張元兼 協興鐵道局出賣 始興郡西面所下里參武四番地 二回 創立 始興郡</p>	
<p>主 戶</p>		<p>主 戶</p>		<p>車</p>	
<p>張仁浩</p>		<p>父張仁浩 母氏長男 結城</p>		<p>父朴義全 母氏長男 結城</p>	
<p>張元兼</p>		<p>父張元兼 母氏長男 結城</p>		<p>父朴義全 母氏長男 結城</p>	

◆ 판결문 원본

여 백

新城皇

始聘嚴守朴
人決引嚴
不數月
他處區內
守日亦
守可其又
可無前
以我伏計

理七 日七十月九年八代民華中

新城皇

光緒二十三年三月
人日
自定工部局

[illegible]

여 백

[第1節 19世紀 朝鮮王朝의 社會的 狀況]

1. 勢道政治와 支配體制의 紊亂

朝鮮王朝의 양반관료 정치지배체제는 양반계층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유지되어야만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士禍, 朋黨政治로 인한 지배체제 내부의 모순과 壬辰倭亂, 丙子胡亂이란 이 민족의 침입에서 야기된 전국토의 황폐화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양반관료 체제 본래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케 하였다.

그리하여 朝鮮王朝後期에 들어오면서 양반관료체제는 兩班官僚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一黨獨裁에 의한 전제적 경향이 나타났고 대부분의 양반 계층은 정권에서 소외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른바 英·正祖 때의 蕩平策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각 당파의 인재를 두루 등용함으로써 양반세력의 균형속에서 王權安定을 도모코자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도 양반층의 계속적인 증가, 관료기구의 고정화에 수반된 인재 등용의 한계성 때문에 彌縫策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왕권은 정권을 독점한 일부 양반세력에 의해 견제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실의 안정과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도는 王族과 外戚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상대세력을 누르고 왕권의 방패구실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왕족과 외척이 국왕으로부터 관직을 부여받고 戚臣으로서 국정을 위임받아 왕을 보좌하면서 정치를 행사하던 것을 勢道政治(世道政治)라 한다. 다시 말하면 세도정치는 미약한 왕권을 보좌하여 왕권의 회복을 꾀하는 왕도정치의 구현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조선후기 외척세도정치의 효시는 正祖 때 洪國榮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역대의 왕위는 어린 왕족에게 계승되면서 변칙적인 세도정치가 자행케 되었다. 憲宗 때 豐壤趙氏에 의해 일시적인 세도정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세도 정치는 대체로 純祖元年(1801)에서 哲宗 14년(1863)까지 3대 60여 년간 安東 金氏에 의해 자행되어 모든 정사는 이들의 일족에 의하여 농락되었다. 이처럼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기형적인 정치형태로 나타나 大家族主義의 기반 위에서 국가권력을 독점하였던 것이다.

1863년 哲宗이 승하하고 고종이 등극함에 따라 세도정치를 극복하고 정권을 장악한 大院君은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키 위한 과단성 있는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그는 비대해진 중앙관료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軍國機務를 관장해 온 備邊司의 기능을 축소하여 의정부와 삼군부로 분리, 문무의 권한을 분리시켰다. 관리임용에 있어서도 門閥, 班常, 色目을 가리지 않고 수완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한편 지방양반세력을 꺾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국서원 중 47개소만 남겨 놓고 모두 철폐시켰다. 한편 양반들에게도 戶布를 부과하여 이들의 면세·면역의 특권을 박탈하였다. 이리하여 관리들의 탐학과 토호들의 수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족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정치력은 어떤 확고한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

있으며 새로운 사회계층이 그의 세력 배경을 이룰 정도로 성숙된 상황도 아니었고 그의 정책 역시 새로운 이념의 창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왕권의 강화라는 왕정복고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개혁정치는 서원철폐와 경복궁 중건을 위한 願納錢의 강제징수에 대한 양반들의 강력한 반발, 경복궁 중건의 강제노역, 門稅의 징수 등이 일반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며 거기에다가 악화인 當百錢의 발행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시켰으며, 국제정세의 암우속에 쇄국정책을 강행하여 집권 10년만인 고종 10년(1873) 새로 대두한 민씨척족세력과 새로운 해외사조를 이해하고 있던 일부 선각적인 지식인에 의하여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대원군의 하야로 실권을 장악한 민씨일파의 세도정치 역시 그 성격상 종래 勢道政治의 모순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거기에다가 외세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운양호사건(1875년 9월 일본군함 운양호와 우리나라 강화도 초지진포대간에 일어난 포격사건)을 계기로 다음 해인 고종 13년(1876) 일본의 무력적 위협아래 「丙子修好條約」(일명 「江華島條約」)가 체결되었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근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당시 위정자들의 국제적 식견의 부족으로 治外法權의 인정·연안의 자유항해보장·3항구 개항 등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은 西勢東漸의 서구열강에 의해 고종 19년(1882)에는 미국, 고종 20년(1883)에는 영국과 독일, 고종 21년(1884)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고종 23년(1886)에는 프랑스와 문호개방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隱遁國이었던 조선은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외세에 의한 침투와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고종 19년(1882) 壬午軍亂과 고종 21년(1884) 甲申政變도 외세와 연결되어 일어났고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갑신정변으로 개화파세력은 제거되고 정계는 민씨의 수구파가 장악함으로써 관료의 기강은 더욱 문란해져 탐관오리에 의한 苛斂誅求는 극에 달했다. 외국상품의 침투로 인한 곡물의 대량유출 및 농촌경제의 파탄, 빈번한 자연재해의 발생 등으로 농민의 생활상은 아사상태여서 민심이 흉흉함과 함께 각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민란이 발생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반관료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기본요건은 과거제의 공정한 시행에 있었다. 그러나 외척세도정치가 시행되는 동안 그 제도의 문란은 극에 이르렀다. 즉 과거시험장은 마치 시공장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문란했으며 응시자의 답안지는 청탁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합격여부는 이미 뇌물의 다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때로는 정원 이상의 합격자를 선발하여 이들 정원의 합격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거제의 시행이 문란해짐에 따라 뜻있는 선비들이 과거를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관료기강의 문란은 과거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접 관직을 매매하는 賣官賣職의 부패 역시 기승을 부렸다. 이것은 빈번한 과거시행으로 합격자를 양산시켰으나 관직의 고정화로 인한 인재등용의 한계성에 그 원인이 있었다. 특히 대원군 집권 당시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징수와 지방관아의 진흥을 위한 의연금징수에 문제가 있었다. 원납자가 전직관료였으면 재등용을, 현직관리이면 승진을, 幼學의 경우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직의 길을 열어 주었다. 물론 직위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서는 300~500냥, 수령은 1만냥을 호가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수령이나 협잡배가 부유한 백성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官衙를 팔아 직첩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돈으로 사게된 벼슬을 차함벼슬이라고 불렀다. 관문에서 파견되는 임시직에도 매관매직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이서까지 농간을 부려 空白帖을 만들어 10냥에서 100냥까지 거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와 같은 관리기강의 문란은 필연적으로 지방행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守令의 빈번한 교체, 일시적으로 제수했다가 곧 해임시키거나 심지어 취임 중도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누가 수령이 되어 임지에 부임하더라도 빈번한 교체로 인해 안정을 기대할 수 없었고 또한 임지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행정부재는 곧 지방사정에 익숙한 胥吏에게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서배(衙前) 지방행정에 있어 암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봉건적 신분질서에 얽매어 자신들의 신분이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없었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대우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전(향리)에 대한 급료가 없었으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반농민들을 침학하는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방재정의 실무는 모두 이들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作弊를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향리의 폐단이 오직 그들의 처우가 불

암행어사 파견회수 (숫자는 파견회수)

도 \ 왕대	순조(34년간)	현종(15년간)	철종(12년간)	계(61년간)	비율(%)
경상	8	2	6	16	16
전라	8	4	7	19	19
충청	9	6	4	19	19
경기	5	2	2	9	9
황해	4	2	2	8	8
강원	2	1	3	6	6
함경	4	3	2	9	9
평안	4	5	4	13	13
계	44	25	30	99	100

【조선왕조실록】·【일성록】에 근거하여 작성

우한다는 것에서만 기인된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부터 향리직은 세습직이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자리값인 任債를 수령에게 지불하고 그 직을 차지했다.

이렇듯 매관매직에 의해서 차임된 수령과 임채로 자리를 차지한 향리들은 필연적으로 탐관오리가 되게 마련이었고 상호간 공동보조를 취하여 농민을 수탈하였으며 때로는 각자의 지위를 이용, 작폐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貪官汚吏의 탐학을 중앙정부에서는 그대로 방치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탐관오리에 대한 가림주구의 적발, 징계를 위하여 중앙에서는 각지방에 暗行御史를 파견했다. 그러나 암행어사에 의하여 적발된 탐관오리들은 흔히 전임수령인 경우가 많아서 사후약방문이었으며 암행어사 자신이 세도정치담당자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체제문란에서 기인된 농민들에 대한 수령의 탐학, 향리의 농간과 작폐, 토호의 수탈은 조선왕조 자체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민의 반란을 일으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2. 收取制度의 紊亂

조선후기 국가재정은 田政·軍政·還穀의 三政에 있었다.

田政은 토지를 매개로 한 세금의 부과 즉 田稅였다. 전세는 경작지(전결)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조선정부에서는 20년마다 한번씩 量田事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조선후기사회로 내려 올수록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토지면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양란(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 지배체제의 문란으로 인한 양반·토호들의 토지사유화, 중간지배층의 농간에 의한 量案(토지대장)의 누락 등으로 전지는 감소되고 그만큼 국가재정은 감축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도표를 보면 勢道政治가 극에 달한 19세기 중엽까지의 전결수가 순조 2년(1802)의 전국 전결수 802,857결이 철종 12년(1861)에는 766,299결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전결상황 (단위:결)					
도 \ 년도	1801	1816	1831	1846	1861
경상	188,844	199,029	195,275	199,033	192,126
전라	202,432	192,696	197,359	208,486	196,511
충청	122,647	117,444	109,001	105,407	97,992
경기	54,634	51,432	50,991	48,899	48,992
황해	72,150	70,603	72,818	69,958	73,516
강원	11,088	11,414	11,862	11,697	11,754
함경	66,500	64,797	61,324	61,335	60,454
평안	84,562	82,306	93,242	82,443	94,863
계	802,857	789,721	781,872	787,228	766,299

【조선전제고】부록에 근거하여 작성

원래 전결에 대한 세금은 농민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기본법전인 續大典과 大典會通에 의하면 전지 1결에 대한 세액은 田稅 6두, 大同米 12두, 三守米稅 1두 2승, 結田 5승 등 총 20여 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도정치 이후에는 인정미, 가급미, 첨가미 등의 각종 부과세가 42종에 달하여 1결당 전세는 70두~80두, 심지어는 100여 두에 달하는 지방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세와 수수료 이외에도 토지대장과 징세에 관한 제반 서류의 작성 정리에 그 업무를 담당한 이서·아전배가 농간·협잡·위조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들을 수탈하는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았다.

- ① 陳結 : 진전(개간전)을 상경전으로 허위등록
- ② 隱結 : 상경전을 재전 혹은 진전으로 허위등록
- ③ 白徵 : 백지(공지)에 가세
- ④ 虛結 : 근거없는 전지를 문서로 작성

軍政은 정남(16세~60세)에 부과된 군역세이다. 조선시대의 군제는 국민 개병제였으나 군수비용을 조달키 위해 奉足制를 실시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布를 납부토록 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래 포 2필에서 포 1필로 반감하여 징수하는 軍役法을 실시, 부족문은 魚鹽稅, 結田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세도정치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軍布는 원래 상민에게만 부과된 불공평한 징세였다. 이에 상민들은 사회가 문란하여지자 족보를 변조하여 양반의 후손으로 자처, 군포의 부담을 모면하려는 자, 관리와 결탁하여 군적에서 명단을 누락시켜 징수대상에서 빠져나간

자, 그리고 군역을 피하여 도망, 유민이나 초적이 되는 자도 많았다.

한편 군역에서 수령·향리들이 양민을 착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① 降年債 : 60세 이상 자에게 징수
- ② 黃口簽丁 : 유아에게 징수
- ③ 白骨徵布 : 사망자에게 징수
- ④ 族徵 : 일족에게 징수
- ⑤ 洞徵 : 마을 전체민에게 징수
- ⑥ 마감채 : 일시불로 징수

還子(환곡)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곡을 농민에게 춘궁기에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회수하던 농민구제책으로 무이자라 원칙이었으나 후에는 이자를 받았으니 이를 還上이라 하였다.

세도정치하에 수령과 이서, 아전배의 환정에 대한 작간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반작 : 양곡대여·회수의 허위문서 작성
- ② 가분 : 재고분의 대여
- ③ 허류 : 재고의 허위장부 작성
- ④ 입본 : 시세에 따라 중간이득 취득
- ⑤ 증고 : 고가로 방매
- ⑥ 가집 : 수량을 자의로 증가 집행
- ⑦ 압류 : 곡가시세 조작
- ⑧ 반백 : 수량의 반을 횡령

⑨ 분석 : 겨를 반쯤 섞음

⑩ 집신 : 묵은 곡식을 분급

⑪ 탄정 : 면감조처전 횡령

⑫ 세전 : 환곡을 세미로 바꾸어 횡령

그리하여 농민들에게 가장 가혹한 환곡이었다. 요구하지도 않는데 꺾곡을 강제로 농민에게 대여하여 주고 상기와 같은 갖은 방법으로 사복을 채웠으니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농촌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농민들은 궁핍에 허덕이게 되었던 것이다.

3. 農民의 저항

19세기는 농민(민중)운동의 획기적인 시대였다. 그것은 純祖 11년(1811) 洪景來亂(관서농민전쟁)을 시발로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잇달아 일어나 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전국적인 규모의 형태로 확대된 저항도 있었다.

18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농민반란(민란)의 3대민란은 ① 1811~12년의 洪景來亂, ② 1862년 壬戌民亂, ③ 1894년 東學 農民運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상호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한국근대화의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으로 볼 수 있다.

洪景來亂은 서북인의 차별대우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항거였다. 이 난의 지도계층은 殘班, 상인, 중인, 부호, 향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주체세력은 초기에는 광산노동자가 주축이었다가 차츰 농민층으로 가담하므로써 중추세력을 형성하였다. 이 난의 직접동기는 서북지방인에 대한 차별대우였지만 그 이면과 난의 경과상황을 고찰하여 보면 지방관들의 농민에 대한 지나친 수탈에 반발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壬戌民亂은 哲宗 13년(1862) 진주민란을 기폭제로 하여 이 해 전국 35개 처에서 중앙정부에 항거한 농민의 봉기를 뭉쳐서 일컬어진 농민운동이었다. 이 난은 홍경래란과 성격을 약간 달리 하고 있으니 홍경래란이 중앙정부 타도라는 기치를 걸었는데 반하여 임술민란은 농민 스스로가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조직적인 저항보다는 지방관의 탐학에 견디다 못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아야겠다.

1894년 東學農民運動은 임술민란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하여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되어 왔고 동학이 창도되어 동학의 교구·교직제

도에 의한 조직과 결합되고 개항 후 외국상품의 침투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 농민의 저항이었다. 이 운동은 전라도 전지역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부패 무능한 조정과 불법적 수탈을 자행한 지방 관료들에 대한 농민의 항거로 반봉건적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를 배격하고 특히 일제에 저항한 민족운동의 성격을 내포하고도 있었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종래의 전통사회체제가 급속하게 변천되어감을 알 수 있다. 이런 변천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와 민란이라는 민중봉기가 끊임없이 전개된 시대를 연출하였던 것이다.

[第2節 第一次 農民蜂起]

1. 農民蜂起의 動機

朝光武 2년(1898) 음력 7월 9일에 발생한 第一次 始興農民蜂起의 발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주요한 근본원인은 정치체제의 문란에서 야기되었던 지방 관리들의 탐학과 苛斂誅求에 있었다. 당시 시흥 군민들은 관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어 언제라도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직접적인 행동으로 폭발할 수 있는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그것은 신·구 군수의 교체시에 나타나는 행정의 공백 상황을 계기로 포착했다.

제1차 시흥농민봉기의 직접적인 동기는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체포된 남면 집강이었던 成禹慶(당시 50세, 서면 가학리 출신, 1842~1916)의 첫 供招(죄인들이 범죄사실을 조사관의 질문에 응해 대답하는 기록)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것을 옮겨 보면,

● **문**—경기재판소 훈령의 요지를 살펴보니 시흥군에 民擾(농민봉기)가 발생하였는데 직접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바 너는 집강으로서 무슨 대단한 억울함이 있었기에 무리를 거느리고 인솔하여 민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동안의 사정을 숨김없이 모두 밝혀 말하라.

● **답**—전임 군수는 한 번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관계 여하를 헤아리지 않

고 백성들에게 포악함이 오직 그의 습성이었다. 부임한 지 3일만에 3년 전에 있었던 도박사건을 핑계로 촌민 4인을 체포하여 곤장을 70~80대나 때리고 소금물을 먹이는 물고문을 행하여 거의 반죽음에 이르니 이에 枷鎖(죄인을 다룰 때 죄인의 목에 형틀을 걸고 자물쇠를 채움)하였으며, 춘사월의 기나긴 날에 통로(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이 편리하고 변화한 큰 길)에서 여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또한 속전을 강제로 징수케 했으니 이러한 불법행위는 과연 처음 보는 고로 단지 근심 걱정과 단식뿐이며...

소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만약 백성을 구속함에 이르면 대소민을 막론하고 갑자기 옷깃줄로 포박 구속하여 혹독하게 곤장을 때려 3~4개월 혹은 2~3개월이 지나야 겨우 이 세상 사람을 알아볼 정도이며 또한, 금년(1898) 6월 경에 밀도살한 일로 징벌을 엄히 다스리고 가세하여 감옥에 가두고 900여 명의 속전을 징수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이라.

이와 같이 전임 군수의 행위가 오직 백성의 탐학에만 있는 고로 모든 읍민이 울분을 품고 있어 누가 주모자인지 어찌 알 수 있겠으며 한 번 외침에 모두 응원하여 이에 읍중으로 들어간 즉..... (이후 생략)...

이상에서 成禹慶(또는 成祐慶)은 농민봉기 발생의 근본원인을 전임 군수의 탐학중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열거하였다. 즉 첫째, 3년 전의 도박사건을 들고 자기의 재임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축치하여 곤장으로 다스려 서정쇄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결국은 이들에게 속전을 포탈함에 있었으며, 둘째는 소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쌍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한쪽편의 말만 듣고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포박하여 중벌에 처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실에 의해서 재판하는 불법이요, 오관이며, 셋째는 밀도살한 사실이 있으며 벌금을 물게 하면 되는 데도 더욱 가혹한 형벌을 행하여 더 많은 속전을 징수케 하

여 그것을 횡령 착복하였다.

전임군수의 백성에 대한 탐학은 농민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湫(저수지)의 축조 및 수리에서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연류된 사람들과 전임군수 재직시의 아전들이 조사관 앞에서 이루어진 합동 질의 응답에 나타나 있다.



◆ 농민봉기 모의 사발통문

● 문 유목정보는 관개하는 것이 천여 마지기로 매년 목재로써 보수하는데 그 비용을 매번 나누어 배당함이 어려운 고로 여러 작인들이 저수지 주변에 있는 하나의 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목재를 사용하니 그 후에 산아래 陳荒地 한 곳이 생겨났다. 이곳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 고로 보민들은 그

것으로 보의 비용을 충당하였는데 수년 전 서울에 사는 현학명이 보 근처에서 초지를 매입하고 이어 작년(1897) 봄에 산록을 개간하여 모두 가장 좋은 草地를 기본 땅이라 하고 탈취할 뜻으로 전임 군수 재직시에 소송을 제기하니 관에서 해당 마을 執綱인 진사 崔益中을 즉치한 즉 해당보의 작인중 해당 마을에 사는 자가 수십 인인 고로 우선 최진사를 따라 읍내에 들어가 일제히 소송 관청으로 물려간 즉 관에게 산을 매입한 내력을 묻는 까닭에 모든 작인이 확실한 근거에 의거 대답하고 또한 산을 매입한 문서를 내놓았더니 불문곡직하고 현학명에게 산을 매입한 文書를 빼앗아 주니 모든 작인들이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대 최진사의 조카 崔大始가 억울한 뜻을 관가에 호소하다가 곧장 70~80대에 물고문을 당하여 거의 반죽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4개월 후에야 겨우 회생하였다.

그 나머지 作人 수십 명도 각기 곤장 30대씩을 맞았으니 비록 한 두 사람의 소송사건이라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곤장과 협박으로 문권을 强奪(강

제로 빼앗음)함이 관청에 의해 자행되었으니 하물며 이 저수지와 관련된 수십 인들은 어떠하였겠는가? 최대시와 수십 명의 作人이 벌을 받음은 곧 수천 인의 벌이라. 따라서 수천 인의 원성이 어찌 없겠으며 이것은 백성들에게 또한 뼈에 사무치게 하는 원한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鄉村社會에서 지방관이 행하는 관례화 되다시피 한 침탈행위다. 지방관은 다수인 농민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권세가와 결탁하여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후원자로 행동했으며 무고한 농민들을 포박 족치하여 곤장과 물고문이라는 혹형을 가하는 일은 허다했다. 보의 축조와 수리는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농업정책의 하나였다. 향촌사회의 안정은 바로 농업생산력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끊임없는 治水事業에 관심을 보였고 또한 농업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지방관은 지방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權勢家들과 결탁하여 이권의 개입에만 열중하였으니 농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얼마만큼 컸는지 쉽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고종 31년(1884) 갑오농민전쟁의 직접적인 발생 동기가 고부군수 趙秉甲의 탐학과 만석보 축조시의 노역 징발이었음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되리라.

이외에도 전임군수 비리는 釋菜(소나 양을 제물로 사용하지 않고 채소만을 간단히 준비하여 지내는 석전)시의 분란에 대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십여 명을 족치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하고 오히려 執綱을 벌주었으니 여론의 비등은 가히 짐작된다.

특히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으며, 향촌사회는 자생적인 규율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런 자생적인 규율은 곧 향약으로, 향약의 덕목에 그 성격이 반영되어 있듯이 극악무도한 행패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거주지로부터 쫓겨 나곤 했다. 이는 곧 자기의 생활기반을 완전하게 상실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향촌사회의 질서는 공동체 의식의 기반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었는데도 풍기문란을 범한 자를 관에서 도리어 옹호하였으니 지배체제의 부패에서 야기된 향촌사회의 신분지배 질서가 무너져 가는 상황을 부분적이거나 간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衙前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작폐에 대해 살펴보면 전향장이었던李宗烈(당시 33세)의 두 번째 조사 심문서 8조목으로 나누어서 조사관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 **문**—너는 첫 조사에서 이번에 민란시에 자신은 마침 한양(서울)에 있어 그 소식을 다만 소문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요, 여러 사람들이 열거한 죄목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제 여러 죄인(민란의 주모자로 연류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의 供招를 살펴보니 모두가 너의 죄를 다스리고자 함이다.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으니 너의 죄상을 논의하고 나열하는 것이 용서를 못할 큰 범죄이다. 전과 같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좇아 바르게 고하라.

● **답**—나의 소회는 지난 번 공초에서 이미 다 말한 것과 같이 여러 사람의 訴狀에서 나열한 나에 대한 죄는 정말로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한 번 열거한 8가지의 조목에 대해 나의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이하생략)

이를 살펴보면 첫째, 結稅田을 농간했다는 것이다. 결세는 세금이므로 먼저 독촉하여 납부받아 모두 상납을 하였으니 비록 농간을 부리고자 해도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 소하동에 사는 이름은 모르지만 金主事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관아에 있을 때 찾아와서 51만냥을 나에게 위탁하여 취식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금년 가을의 賭租로 약속을 정하였더니 이 약조에 근거하여 읍민 모두가 公田을 농간했다

고 하는 것이다.

둘째, 民田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의 연유로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리봉에 사는 양인 朴仁鎬를 순교청에 구속할 때에 해당 관청인 순교청에서 3천냥을 討索했다 하는 고로 여러 교리를 책망하고 깨우치어 그들로 하여금 박인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음은 이미 공술에서 가히 밝혀진 것과 비슷하다.

셋째, 公田을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금년 3월경에 관내 독산리에 부모님의 묘지를 쓸 산을 생각하고 禿山리에 사는 邊化京과 친숙하는 고로 軍人米를 부탁하여 먼저 그로 하여금 군량미를 부감케 하였더니 이에 그것을 계산하니 들어올 것이 300냥이라. 먼저 200냥을 지급했는데 마침 도박꾼들인 果川의 朴用豊, 文石山, 邊仁煥 仁川의 丁原燮 등 4인이 변화경의 집에 투전판을 차렸으니 변가는 이미 투전판의 주인이라. 200냥으로 도박판에서 殖利는 당연한 것이요, 이것은 변화경의 행위이며 나와는 무관함이 가히 스스로 밝혀질 것이다.

넷째, 木碑(사람의 공적·사적 등을 기록하여 길 옆에 세우는 목판비) 세우는 것을 판다는 것이다. 安養里의 戶布 면세 징수 일로 여러 차례 보고가 있어 전에 관가의(수서기) 채직시 관가에서 의연금 100냥을 지급하여 본전은 두고 이자로써 虛戶 戶布錢을 보충케 하였더니 안양리에서 이 덕을 칭송하기 위해 목비를 세운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매립의 말은 지극히 허왕된 것이다.

다섯째, 사사로이 다닐 때 등불을 들게 하여 배열시킨다는 것이다. 전에 관속배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황혼녘이 되어 귀로할 때에 등불을 준비하여 기다리지 않은 일로 店民을 꾸짖고 타이른 것은 마침 내가 관가로 가는 길이어서 부득이한 것이었다.

여섯째, 동네의 우물을 매몰시켰다는 것이다. 우물이 나의 고모 집의 뜰에 있었는데 이웃의 아낙네가 뜰에 들어와서 매일 이른 아침에 물을 길어 관가로

통하는 길을 넘어 다녔다. 이것은 우리의 풍습에서 정말로 금기시하는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찍 관가로 나가는 길에 아낙네를 만나게 되어 당장 그만 두게 할 마음으로 우물을 매몰케 하였다가 그 후에 더욱 깊게 하였으니 더 이상의 변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곱째, 도둑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관속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순교들이 도둑을 체포하여 취조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살펴보니 우연히 병사라 상부에 보고했더니 밖에 매몰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인 즉 처음부터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님은 가히 명백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吏胥를 몰아내고 친척들이 이서로 포진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서의 명칭을 떨어뜨리고 승진시킴이 없었는데 나의 친척이 번성하여 吏胥가 4~5명 되었다. 관민의 소장에 들어 있어 이번 군수의 부임일에 성우경과 더불어 조사를 한 즉 성우경이 甲午更張(1984년 : 김홍집 내각에 의해 실시된 근대적인 개혁, 이 개혁은 갑오농민전쟁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부산물이자 한편으로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시행된 수동적인 것으로 그후 일본 침략을 용이하게 했다.) 이래에 吏胥의 정원은 총 11명이었는데 이종열의 가까운 친척이 이들중 6인이라 하고 이로 미루어 보아 李宗烈의 권력은 가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역시 적절한 대답을 못했으며 민란 후 첫 조사시에 아전배와 촌민이 상호 화합하여 좋은 말이 되어 내가 먼저 成禹慶의 처분을 청탁하였더니 성우경이 각리의 執綱에게 포고하고 아전배와 다짐을 6개면 執綱所로 보내었으며 각 마을의 다짐을 군청에 보낸 후에 서로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으로 별문제가 없다.

이상은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그들의 供招에서 밝힌 전향장 이종열 한 사람에 대한 전임군수 재직시의 침탈의 사례를 열거한 것이다. 관가의 서리가 공전의 남용, 민전의 유용, 인사의 간여, 형벌의 남발 등 글자

그대로 하고자 하면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이외에도 춘궁기에 기한자를 뽑아 보고하게 하고는 그 숫자가 많으면 협작이라 하여 관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친히 촌리를 방문하니 그 폐해가 실로 엄청났다. 그리고 執綱을 보좌하는 所任이 공금으로 유용한 경우에도 집강을 축치하여 무수한 곤욕을 치르게 하고 남용한 돈을 즉각 변상토록 하였으며, 죄없이 몰락한 兩班도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곧 바로 축치하여 곤장에 물고문은 허다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농민봉기에서 몰락한 양반인 농촌의 지식인들이 민란의 주도자 내지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농촌 지식인들의 불만은 자신들의 처지가 불우한 데서도 기인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선각자적 양심의 고뇌에서도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1차 시흥농민봉기의 발생 동기가 前任郡守와 衙前들에 의해 저질러진 가혹한 수탈과 농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農民蜂起의 性格

근대예로의 변혁과정은 일반적으로 위로부터의 결과 아래로부터의 길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살피고 있는 始興農民蜂起는 바로 변혁주체 세력이 형성되어 가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농민항쟁이라는 운동과정을 통하여 농민층은 봉건사회체제 모순을 담당한 세력으로서, 그 모순을 뚫고 스스로 변혁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세기 변혁주체 세력의 형성과정인 농민항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먼저 地主佃戶制라는 봉건적 생산관계하에서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지대를 수탈당하고 있던 小作人인 농민들은 그 지대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농민적 토지소유를 쟁취하기 위한 조세거부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또한 소상품 생산자로서의 성장을 지양하는 소농민들은 봉건지배체제의 수취제도를 통한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납세거부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에는 중소지주·부농층도 참여하였으며, 빈농·농촌노동자 계층도 참여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농민봉기로까지 발전하였다. 농민층 분화과정에서 몰락하여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촌의 품삯노동자·무직자, 그리고 빈농층은 농민봉기·호적·변란 등에 참여하여 지배계급에 저항하고 나아가 체제 자체에도 저항하였다.

한편 농민층 분화과정에서 몰락, 도시로 유입된 도시빈민층은 도시민란을 통하여 봉건지배 체제의 억압과 수탈에 저항하였다.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지 못하던 이른바 몰락 양반층은 정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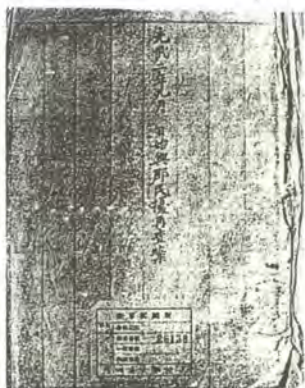
변란을 통하여 易姓革命을 기도하였다. 이러한 변란에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봉건적 수탈에 의해 계속 침해를 받고 또 정치·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던 계층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여러 계층은 각기 이와 같은 저항 운동을 통하여 세력을 확대시켰다.

19세기의 농민항쟁은 이처럼 변란·민란·화적·도시민란 등으로 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촛서·炬火(촛불시위)·山呼(산위로 올라가 지방관의 잘못된 정치를 비방하는 것) 등의 일상적인 투쟁과 도망 등 소극적인 의미의 투쟁이 있었다.

民亂이란 향촌사회의 백성들이 주로 三政을 중심으로 산 봉건적 수취제제의 모순과 여러 가지 폐단의 시정을 지방권력에 요구하여 일으킨 농민봉기로서, 일부 지방에서는 향촌사회 내 하층계급의 상층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으로까지 발전했던 사태를 가리킨다. 이 민란은 18세기 경부터 간간히 발생했으나, 19세기 중엽 특히 1862년의 壬戌農民運動에 이르러 전국적인 봉기의 양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후의 민란은 고종년간에도 계속되어 (도표 3 참조) 마침내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발전, 중앙 봉건권력의 타도를 주장하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第1次 始興農民蜂起는 조선후기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빈발했던 농민운동과 아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운동의 준비과정과 방법, 주도 계층의 성분, 이를 통해 달성코자 했던 목표, 그리고 이에 대한 관가의 사후처리 등에서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始興農民蜂起의 준비과정과 방법은 취회를 위해서 沙鉢通文을 이용하여 사전에 집강에게 통보하



◆ 농민봉기 모의 사발통문

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방법은 민란이나 역모 사건에서 사용했었던 전형적인 방법이며 만약 사전에 발각되더라도 확실한 주모자를 판별해내기 어려웠으며 그래서 그만큼 주모자를 보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희생자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始興農民蜂起에서도 7월 7일을 기하여 6개면 42명의 집장에서 사발통문을 보내어 그들의 거사계획을 알렸다.

고종연간의 주요 농민봉기 (1885 - 1893년)		
연도	발생회수	발생지역
고종 22년 (1885)	3	황해도 토산(1월) 경기도 여주(2월) 강원도 원주(5월)
고종 25년 (1888)	2	함경도 초산(광산노동자, 6월) 함경도 영흥(6월)
고종 26년 (1889)	6	전라도 전주(1월) 함경도 길주(1월) 강원도 정선(1월) 전라도 광양(9월) 경기도 수원(10월) 제주도 어민(10월)
고종 28년 (1891)	2	제주도 어민(5월) 강원도 고성(8월)
고종 29년 (1892)	8	서울시 노비(3월) 함경도 함흥(3월) 함경도 덕원(3월) 경상도 풍천(광산노동자, 8월) 강원도 화천(4월) 함경도 회령(10월) 평안도 성천(10월) 평안도 강계(10월)
고종 30년 (1893)	11	평안도 함흥(2월) 경기도 인천(6월) 황해도 재령(8월) 충청도 청풍(8월) 충정도 황간(8월) 경기도 개성(11월) 황해도 함덕(12월) 황해도 철도(12월) 황해도 중화(12월) 전라도 전주(12월) 전라도 익산(12월)

【(推案及執案)·(高宗實錄)에 의거 작성】

준비과정은 확연히 드러난 것이 없어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사발통문의 발송과 聚會時의 執綱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모의되었음을 간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의 모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화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農民蜂起의 한계성을 그대로 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중은 속성상으로 합리적인 행동보다는 분위기에 쉽사리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운집하

第1次 始興農民蜂起 主謀 嫌疑者

성명	지위	신분	비고
성우경	집강	몰락양반	농촌지식인
송태현	집강	몰락양반	농촌지식인
김희상	집강	몰락양반	농촌지식인
이동식	집강	몰락양반	농촌지식인
이덕정	집강	몰락양반	농촌지식인
엄우영	무	양 반	
나순길	하소임	상민	
나한녀	하소임	상민	
박인호	무	양민	민란이전에 투옥

【供招에 의거 분석】

였는데도 지도자나 통솔자가 없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그들의 분노대상이었던 관속배의 家畬를 파괴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운동의 주체세력인 농민들을 보다 결속시키고 조직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층이 현실의 모순 사실만 나열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모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깨우치고 인도해야 했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운동의 역량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第1次 始興 農民蜂起는 고립 분산적인 한 지역의 농민운동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계층은 시골의 몰락 양반층인 농촌의 지식층이다. 所任의 직책을 가진 두 사람은 執綱의 사정으로 인해 집강의 위임을 받아 단지 마을 사람들을 인솔하여 聚會에 참석했거나, 다른 모든 마을이 참석하는데 대해 새롭게 과생될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참석했을 따름이므로 두 사람이 직접 간여하지 않았음은 쉽게 파악될 것이다.

주도층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내지는 방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

[6]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 [제1형, 19세기 조선왕조의 사회적 상황]

만, 이들의 현실 인식에 대한 식견의 부족과 주체성의 결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그 전모가 더욱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지만, 생활의 근거지를 鄉村에 두고 있었던 이들로서는 어쩌면 그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들의 지도역량이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었을 것이다. 즉 현실사회의 모순 현상은 지적할 수 있었으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도원리를 지역의 여건과 부합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되어 가는 봉건제의 제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진행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봉적인 시책으로 체제 안정의 유지에 급급한 것이다. 이들은 경제체제인 봉건제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이들의 사회적 성격은 봉건체제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주도층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드러났다.

農民蜂起의 발생에서 사후 처리의 과정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농민봉기 발생 소식을 접한 정부는 訓令을 내리어 먼저 민심의 수습책에 급급하였다. 우선 聚會의 주모자로 지목된 成禹慶 등의 집강을 구속하여 민란발생의 직접적인 동기였던 작폐를 일삼았던 前鄕長 이회복, 前首書 記 이종렬 등 이서배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조사관을 파견하여 조사 심문하고 주모자를 처벌하는 정도로 무마시켰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농민봉기에 대한 수습책은 실효성을 거의 거둘 수 없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최소한 정부가 봉건제의 모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행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전임군수에게 재직시 범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구속하고 축재한 재산을 환원시킴으로써 始興郡民에게 새로운 관가의 기풍을 보여 주어야 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第一次 始興農民蜂起는 새로운 이념의 창출이나

운동역량의 강화에 의해서 주도된 획기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지배체제의 문란에서 야기된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항거하여 일어난 조선시대 후기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에 각 지역에서 일어난 고립·분산적인 농민봉기의 성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3. 農民蜂起의 勃發

第一次 始興農民蜂起는 전임군수가 면직되고 신임군수 이교영이 부임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光武 2년(1898) 7월 9일(음력) 始興의 邑內(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하였다. 기사를 위해서 주모자들은 7월 7일 「沙鉢通文」(사건의 주모자나 발기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사발을 엮어 놓은 모양으로 원을 돌아가면서 성명을 기재하는 격문, 그림은 갑오농민전쟁 발생시 사용한 것임)으로 6개면 42명의 집강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이 통문에는 9일을 기하여 모든 마을의 동민들은 執綱의 인솔하에 관내로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 시흥직산안핵사주본

약속한 날 집강의 인솔 하에 일제히 읍내로 운집하니 그 수요가 수천 명에 달하였다. 운집한 군중들은 집강의 사회로 먼저 전임군수 문봉오의 가혹한 수탈과 불법행위를 성토하였다. 그런 후에 전임군수의 재직시에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 용이하게 해 준 전향장 이회복, 前首書記 李宗烈, 서기 김홍식, 순교 이희장 등의 죄상을 8조목으로 나누어 성토하고 이들의 죄상을 관가에 알리며, 한편으로 이들을 족치하여 그 죄상에 따라 사죄와 아울러 처벌코자 하였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자 衙前들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 모두 도망하였으며 관청의 관속들도 피신하여 관가는 텅비어 치안과 행정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었다.

학정과 수탈에 대한 성토가 끝난 뒤에 吏胥들이 모두 도망간 사실을 안 수 천 명의 군중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울분으로 동요되기 시작했다. 누구의 선동이나 인솔도 없이 서로가 호응하면서 관아내로 난입하여 원한의 대상이었던 이서들의 가옥 창고를 파괴했으며 집물·전곡·의복 등을 모두 마당으로 끌어 내어 불태우거나 파손시켰다. 이들의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파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吏胥들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前首書記：李宗烈집 26間중 7間 기둥기움, 19間 파괴, 집물 파손
 使令：李昌源집 6間중 3間 기둥기움, 3間 파괴, 집물·전곡 파손
 使令：洪福得집 4間반중 3間 기둥기움, 1間반 파괴, 집물 약간 파손
 都使令：金明學집 8間중 8間 파괴, 집물·전곡 파손
 書記：李駿基집 10間반중 3間 파괴, 7間반 기둥절단, 집물·전곡 파손
 前鄉長：李熙福집 29間중 10間 기둥기움, 19間 파괴, 집물·전곡 파손
 書記：李熙周집 창문벽 파괴, 집물 파손
 刑吏：金鴻殖집 6間중 기둥이 절단되고, 벽이 파괴됨, 집물·전곡 파손

이상의 피해는 그들의 원한 대상이었던 전군수 문봉오의 수족과 같은 이서들의 집 9호와 집물·옷 등이었으나 관가를 파괴하거나 불태우지는 않았다. 그리고 운집한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 관가의 옆에서 둔취하고 있었다.

한편 시흥군민의 봉기 소식을 전해 들은 신임군수 李喬永는 즉시 부임하여 군중을 효유하여 해산시켰으며 피고인 이희복 이종렬 등과 장두인 집강 성우경 등을 군청의 감옥에 구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건의 개요와 농민봉기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정부로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지방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양군수 成奭永를 別定査官으로 임명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농민봉기의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하여 보고케 했다. 그런데 성석영의 보고서는 말에 모호함이 많

고 사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없으며, 아전배가 민란으로 연류된 죄인들이 서로 화합하여 좋은 말로 빙빙 돌려 성안을 만들었으니 조사 체제상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다시 파주군수 李弼永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빨리 해당 군으로 가서 민란 발생의 곡절과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케 했다. 이필영은 이 훈령을 받아 9월 20일 일찍 始興郡에 도착하여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연루된 죄인과 농민봉기 발생의 원인에 연관된 작폐를 일으킨 아전배들을 심문조사 하였다. 그의 조사 목적이 훈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으므로 조사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실시한 供招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 농민봉기에 연류된 관련자와 질의 내용, 2. 농민봉기에 연류된 관련자와 질의 내용>에서 농민봉기 주모자로 연루된 자들과는 총 14회의 심문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농민봉기 발생의 원인과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총 12회로 거의 85%를 차지했다. 이것은 농민봉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그 폐정을 개선하여 일반인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주모자의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이런 저간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농민봉기의 원인이 된 이서배의 작폐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서배에 대한 심문이 상대적으로 총 6회라는 숫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심문조사에 의거하여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남면집강 성우경을 구속하고 그 외 동면집강 宋泰鉉, 李德鼎, 서면집강 李東殖, 동소임 羅淳吉, 상북면소임 羅漢汝, 현내면양민 嚴宇永, 하북면집강 金會祥은 보석하였다. 그리고 재직시 작폐를 심하게 저지른 전향장 李熙福, 전수서기 李宗烈, 형방서기 金鴻植, 순교 李熙章을 구속하였다. 이필영은 이러한 조치결과를 9월 24일 경기도 재판소로 보고서를 작성 이송하였다. 이에 경기재판소 판사 金永德은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9월 28일 의정부 법무대신 앞으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第一次 始興農民蜂起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1. 농민봉기에 연루된 관련자와 질의 내용 (1898. 9. 20)

성명	지위	심문회수	주요 내용
성우경 (50세)	남면 집강	3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된 동기 주모자가 아닌데 구속된 이유 여러 공술과 상황을 종합하니 주모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이동식 (65세)	서면 율일리 집강	1	농민봉기 발생동기와 주모자
나순길 (34세)	서면 소하리 하소임	1	농민봉기 발생의 근본동기와 주모자
엄우영 (34세)	현내면 박달리 양민	1	농민봉기 발생의 근본동기와 주모자와 파괴의 상황
김희상 (68세)	하북면 반대방 집강	1	농민봉기 발생의 동기, 주모자
송태현 (75세)	동면 독산리 집강	2	농민봉기 원인, 주모자 1차 진술시 주모자를 성우경이라 했는데 그를 주론자로 정한 당시의 정황을 진술
이덕정 (52세)	동면 봉천리 집강	2	농민봉기 발생의 동기, 주모자 농민봉기에 연루된 원인
박인호 (57세)	동면 가리봉 거주상		농민봉기에 참가한 이유, 당시 정황을 진술
나한녀 (57세)	북면 당산리 소인	1	주모자와 농민봉기의 상황 주모자가 성생원이라 했는데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이종렬 (33세)	전수서기	1	전임군수 재직시의 작폐상황 농민봉기 주모자의 공술에 나타난 범법의 해명 성우경에게 화합을 청탁한 이유 세금의 납징한 후의 사용처
이희복 (45세)	전향장	1	재임시의 작폐 상황
김홍식 (40세)	형리	1	재임시의 작폐 상황
이희강 (30세)	순교	1	재임시의 작폐 상황
계		20	

2. 농민봉기에 연루된 관련자와 질의 내용 (1898. 9. 20)

성명	지위	심문회수	주요내용
이동식 (65세)	서면 율일리 집강	1	농민봉기 발생동기와 주모자
나순길 (34세)	서면 소하리 하소임	1	농민봉기 발생의 근본동기와 주모자
엄우영 (34세)	현내면 박달리 양민	1	농민봉기 발생의 근본동기와 주모자와 파괴의 상황
김희상 (68세)	하북면 반대방 집강	1	농민봉기 발생의 동기, 주모자
			농민봉기 원인, 주모자
송태현 (75세)	동면 독산리 집강	2	1차 진술시 주모자를 성우경이라 했는데 그를 주론자로 정한 당시의 정황을 진술
			농민봉기 발생의 동기, 주모자
이덕정 (52세)	동면 봉천리 집강	2	농민봉기에 연루된 원인
박인호 (57세)	동면 가리봉 거주	1	농민봉기에 참가한 이유, 당시 정황을 진술
나한녀 (57세)	상북면 당산리 소인	1	주모자와 농민봉기의 상황 주모자가 성생원이라 했는데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전임군수 재직시의 작폐상황
이종렬 (33세)	전수서기	3	농민봉기 주모자의 공술에 나타난 범법의 해명 성우경에게 화합을 청탁한 이유 세금의 납징한 후의 사용처
이희복 (45세)	전향장	1	재임시의 작폐 상황
김홍식 (40세)	형리	1	재임시의 작폐 상황
이희강 (30세)	순교	1	재임시의 작폐 상황
계		20	

4. 農民蜂起의 결과

지방관리의 폭정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第一次 始興農民蜂起는 신임군수 李喬永의 신속한 사후처리로 곧 바로 수습되었다. 그는 농민들의 봉기 소식을 전해 듣고 임지로 부임하여 관속배의 가사를 파괴하고 관가 근처에 모여 있던 始興郡民들을 효유하여 해산시키고 난의 주모자로 성우경 등의 집강들과 불법패리를 저지른 관속배들을 군청의 감옥에 투옥하고 사건의 개요를 보고하였다.

이교영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고양군수 성석영을 제1차 조사관으로, 파주군수 이필영을 제2차 조사관으로 파견하여 농민봉기의 발생 원인과 주모자를 조사하게 했다. 이필영은 이미 수감되어 있던 난의 연루자와 전군수 재직시의 아전들과 총 20회의 개별적인 심문과 1회의 대질 심문을 통해서 전향장 이회복·전수서기 이종렬·형방서기 김홍식·순교 이회장의 범법행위가 인정되어 구속시키고, 난의 연루자 중 남면집강 성우경만 난의 주모자로 인정하여 구속하고 그 외의 연루자인 동면집강 송태현·이덕정, 서면집강 이동식, 소임 나순길, 성북면소임 나한녀, 현내면 양민 엄우영, 하북면 집강 김희상 등은 농민봉기 동참은 인정되지만 주모자 내지 발기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 석방한다는 보고서를 9월 24일 경기도 재판소에 『始興郡民擾再査時應問諸罪人囚徒成冊』 및 『始興郡民擾時毀破家舍摘奸成冊』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재판소 판사 김영덕은 파주군수 이필영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었으며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9월 28일의 정부 참정 법무대신 申箕善에게 보고함으로써 사후처리는 일단락 되었다.

앞의 <농민봉기의 발발>에서 보았던 것처럼 농민봉기의 피해는 전임군수 재

직시의 관속배 가사 9호가 파괴되고 집물·곡식 등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아전배 중에서 불법행위가 현저하거나 극악무도한 전향장 이회복 외 3인이 구속되었고, 농민봉기의 주모자로는 남면집강 성우경만을 구속시키는 일시적인 무마책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봉기의 수습 과정이 시흥군민에게 만족스러움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장 증오의 대상이었고 이서배의 작패를 직접 지휘 또는 옹호한 전군수 文鳳梧에 대한 처리 때문이었다. 그를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김영덕 경기도 재판소 판사도 언급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始興의 第一次 農民蜂起는 수습이 되어 평정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또 다시 봉기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의 팽배는 일단 관의 효유와 탄압으로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된 상황도 아니어서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침략정책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기아선상과 같은 빈곤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농민봉기의 발발을 가져 왔다.



◆ 이필영의 보고서

여 백

[第3節 第二次 農民蜂起]

1. 農民蜂起의 原因

광무 8년(1904) 9월 14일 始興 邑內의 寒川邊에서 시작된 2차 始興農民蜂起는 第一次 農民蜂起가 발생한 지 6년만에 대대적으로 봉기한 사건이었다. 제1차 시흥농민봉기의 발생원인은 앞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듯이 19세기 후기의 지배체제 문란에서 야기된 지방관의 가혹한 수탈과 이에 평승한 이서배의 착패 때문이었다. 2차 농민봉기의 원인은 전자와는 약간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6년이라는 시간상의 간격이 한국사에 있어 주권이 외세에 의해 철저하게 박탈되어 가는 '격변의 시대'였던 만큼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2차 시흥농민봉기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이전에 당시의 상황 즉 '격변의 시대'를 개괄할 필요가 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후에 발생한 청·일전쟁,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파천 등 일련의 사건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파고시켰다. 청·일전쟁 후 전통적으로 종주권을 표방하였고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주장해 왔던 청국 세력의 급격한 후퇴와 근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래와는 다른 차원의 침략 기도는 제정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어 새로운 국면의 전개로 나아갔다.

러시아는 1896년 2월의 俄館播遷을 계기로 각 분야에 고문들을 조선정부내에 초빙하도록 하여 친일세력을 후퇴시키고 친러세력을 부식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각종의 이권을 탈취하면서 정치적·경제적인 침략기반을 강화하였으니 이권은 이를 계기로 서구열강에 의해 분할 양도되는 비운을 맞았다.

조선을 둘러싼 러·일의 대립과 갈등은 상호의 견제라는 필요성에 의하여 여러 차례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일시적인 세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1900년 義和團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는 남진정책 수행상 가장 긴요한 목표이었던 부동항을 얻기 위하여 조선에 대해 용암포와 마산포의租借를 요구하는 군사적 압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에 항상 견제세력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재빨리 교섭하여 조선의 독립보존과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특별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제1차 英·日同盟을 광무 6년(1902)에 체결하였다. 그리고 미국과도 소위 테프트 카쓰라(Taft·桂太郎)간의 비밀협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인정받게 되었다.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긴장관계도 양국의 국내서정으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러시아의 압록강변의 삼림기업 운영·적극적인 남진정책의 추

아관파천 후 열강에 양도된 이권

국명	내용
러시아	경원 종성 금광 채굴권 울릉도 압록강 유역 산림채벌권
미국	경인 철도 부설권(이후 일본에 양도)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
프랑스	경의 철도 부설권
영국	은산 금광 채굴권
독일	금성 금광 채굴권
일본	경부 철도 부설권

[6]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 [제1장, 19세기 조선왕조의 사회적 상황]

구·일부 강경파의 활동과 일본 국내에서의 한반도지배를 위한 러시아와의 일전도 분사하는 여론은 양국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여러 차례의 협상을 위한 교섭이 있었지만 양국의 이해상충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광무 8년(1904) 2월 8일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러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 미국의 중재로 양국 사이에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를 독점 지배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으나 곧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긴장된 분위기에서도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일전쟁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광무 7년(1903) 10월부터 일본은 李完用·李範晉 등의 친일파를 매수하여 비밀리에 조약체결을 위한 공작을 착착 진행시켰다. 이리하여 광무 8년(1904) 1월 말에는 비밀조약의 인준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일본의 회유와 강압적인 조약체결에 대해 조선정부는 국외중립선언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따라서 일본에게 조선의 중립선언을 보장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면서 버티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대병력을 급파하여 군사적으로 조선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대신을 구급한 상태에서 광무 9년(1905) 을사보호조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韓日議定書」를 1904년 2월에 체결하였다. 그후 「한일의정서」의 시행 제척이라 할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등의 확립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지 및 연안에 있어서 모든 군사상 필요한 지역들을 수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견된 군대를 영구히 주둔시키어 우리나라의 국방을 확실하게 장악하였다. 아울러 전국적인 헌병경찰 조직망도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기반을 갖춘 셈이 되었다.

한편 열강에 각종 이권이 양도되면서 철도부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철도연변의 주민들은 공사에 役夫로 종사하여 임금을 벌 수 있으리라는 이상 기대심

리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의 실현은 당시의 열강침탈하에서 불가능한 것이었다. 경부철도부설 起工式(1901. 8. 20.)이 있는 후 영등포-수원간 공사는 9월 1일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철도부지의 무상수용과 임금의 저렴에 항의하는 분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始興郡 等地에서 京釜鐵道 起工을 한 후에 役夫들은 임금이 매우 적다고 비난하고 땅주인은 적절한 지가를 지급하라 하고 분기하기로 兵丁과 巡檢을 파견 진압하여 大起鬪(대단위의 항쟁)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더라』(皇城新聞 1901. 9. 7.)

이상의 사실에서 철도부설을 둘러싼 철도연변 주민들의 반응과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러·일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급속한 공사의 진행은 적절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따라서 무력을 동원한 강제모집의 방법밖에 없었다. 강제모집이 후술할 2차 봉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생한 第二次 始興農民蜂起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매일신보」(1904. 9. 7)의 잡보란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민요속문 : 시흥민요(민란) 사건을 대강들은 즉 상작일(14일) 하오 신시(3시)경에 수많은 백성이 시흥관에 돌입하여 해당 군수 박우양씨와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데 그 소상한 사실은 아직 모르나 대강 소문을 들은 즉 항상 노동자 모집시에 이 군에서 삼십여명 응모하여 출발하였는데 일본정부에서 해당 노동자 등의 가권(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폐 사백원을 군수에

게 보내 반을 지급하라 하였으나 해당군수가 건물(착복)하고 한푼도 지급하지 아닌한지라. 무심히 삼인이 발기하여 관하의 20촌이 매호 일인씩 읍내로 모이라 하여 일만명 가량이 작당하여 관문에 돌입하여 군수와 그 아들 모씨와 수서기 등을 결박하여 ~이하 생략~』

다음은 이 사건의 안핵사로 파견된 安鐘惠이 의정부 참정대신 신기선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번 민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루도 그치지 않는 노동자의 강제모집으로 인하여 마침내 각 마을이 밤을 틈타 연락하여 관아가 전쟁터가 되었다. 군수 부자가 횡사하고 외국인(일본인)도 와중에 살해되었음은 전에 없던 변고라. ~이하 생략~』【高宗純宗實錄】(下) 光武 8년 9월 18일

당시의 상황을 주한일본공사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군(일본군)이 사용할 인부모집의 사건에 관해 시흥군수의 부정행위가 있어 동군내의 촌민 일동이 크게 격앙되어 14일 오후 3시 경에 많이 모여 관아를 습격하고 ~중간 생략~ 본 사건은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니 모두 前郡守에 대한 촌민의 격앙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며 피해를 당한 본 방인(일본인)은 ~이하 생략~』【日韓外交史料】6』 363 페이지

이상의 세 가지 사료는 비록 농민봉기의 주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관점은 가지고 파악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는 사료이다. 위의 사료는 공통적으로 민란발생의 원인을 노동자를 모집할 때 군수가 저지른 비행이라고 보았다. 첫째의 신문기사는 노동자의 품삷을 군수가 그들의 가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음에 대한 항거이고, 둘째는 노동자의 과다한 모집에 대한 반항이었으며, 셋째도 역시 노동자의 모집에 있어 군수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촌민의 분노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모집에서 있는 군수의 불법행위가 농민봉기의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차 농민봉기의 주모자 내지 관련자로 연루되었던 사람의 증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自京里 執綱이었던 이연향의 증언이다.

『지난 7월 초에 노동자 모집 일로 관령이 엄하더니 동월 9월에 모든 군민이 모여 호소하니 그때의 광경은 흡사 민란과 같아 관아에서 여러 사람을 불러 다른 읍의 사례와 같이 시행한다 하고 효유하여 해산시키어 다행이 변란의 실마리가 없더니 불과 며칠만에 모두 30여명을 차정하여 빨리 모집을 독려한즉 각 마을 집장이 서울과 시골로 도망함에 빗 있는 일꾼으로 겨우 인원수를 추원하였다. 품삯과 오래 머무르는 비용이 매우 과다하여 노동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3천 수백여 냥이고 적으면 1,500여 냥인데 내가 사는 동네는 가장 몰락한 마을인데도 그 비용이 1,500냥이 할당되니 다른 마을은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심이 동요됨에 난리를 만난 것과 같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관청에서 일본인의 지폐 수백원을 받았다고 노동자를 보낼 때에 일본인이 노동자 일인당 5원씩과 식비 30냥 5전씩을 지급하는 것을 읍민 모두가 보았다고 했다... ~ (이하 생략) ~』

관청의 首書記이었던李宗烈의 증언이다.

『지난 7월 초에 노동자 80명을 모집하라는 관찰부의 훈령이 엄한 고로 군청의 훈령을 위임받아 각 면에 당량하게 했더니 같은 달 7일에 군민 수천 명이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차 시흥농민봉기의 발생원인은 봉건체제의 누적되어온 모순 즉 지방관의 수탈과 이러한 불법을 방조 내지 묵인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일본이라는 외세에 대한 적개심의 발로가 증충적으로 혼재되어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農民蜂起의 經過

광무 8년(1904) 9월 14일(음력 8월 5일)에 발생한 2차 시흥농민봉기는 1차 농민봉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면서 진행되었다. 1차 농민봉기의 실패의 예와는 달리 조직화되고 계획적으로 주도해 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通文의 전달 방법은 이전과 상이하지 않으나 사태의 진행을 파악하면서 지도한 능력은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사발통문에 의해 聚會의 소식이 각 마을의 집강을 통해 8월 13일까지 6개면의 집강들에게 전달되자 始興郡 내의 모든 집에서는 가구당 1명씩을 차정하여 약속된 한천면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앉거나 서서 그 동안에 노동자 모집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이때의 첫 사회자는 성우경으로 노동자 모집의 일에 그가 아전배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곧 바로 삼막동에 사는 河周明이 뛰어나와 성우경의 아전배와의 결탁은 사실이라 하면서 서로 힐책하였다. 한참을 다투다가 一直里에 사는 주사 閔用勳과 더불어 노동자 모집의 작폐에 대해 관가로 가서 재판을 한다면 서로 모여 있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관가로 향해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운집한 사람들 수천명 혹은 1만명이었다고 하니 그 기세는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이들 중 선두에 섰던 일부가 관가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관문 3개가 폐쇄되었다. 이



◆ 시흥직산 안핵사주본

때가 바로 오후 3시 경으로 대문이 폐쇄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20여 명의 일본인들은 갇혀 있는 몇 명이 안되는 군민들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밖에서 관가로 들어오지 못한 군민들은 이에 흥분하여 일제히 관가 내로 돌을 던져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숫자의 열세로 관아를 지키던 일본인과 아전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관아를 장악한 분노한 군민들은 군수 박우양과 그 아들 그리고 아전들을 포박하였으며 관가의 기물을 파괴하고 의류와 비단을 창고에서 끄집어내어 마당에 쌓아 불을 질렀으며 관속배의 가사도 파괴하였다.

관아의 난입과정에서 일본인과의 충돌로 군민은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했겠으나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최영선의 증언에 의하면 1명의 심한 중상(나중에 사망한 민점식)과 2명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이 관아에 돌입하는 선두 군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이들이 부상당하자 민심이 격양되어 군중의 투석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군수와 그의 아들이 분노한 군중에 의해 장작더미에 올려져 불타 죽었다는 「대한매일신보」의 잡보란(1904. 9. 17.)은 잘못된 기사이다. 공초와 다른 자료에 비추어 보면 군중들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始興郡은 6년전과 같이 무법천지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도 觀察府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순검을 파견하였고, 일본공사관도 始興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고 사건의 조사를 위해 헌병과 순사를 잇따라 파견했다. 이에 운집해 있던 군중은 해산하였고 그 동안 도망갔던 衙前들과 일본인들은 파견되어 온 이들과 협조하여 민란에 가담한 자와 주모자를 색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기도 관찰사 李根敎는 의정부 참정 申箕善에게 농민봉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하였으며 신기선은 그 다음 날에 상주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흥농민봉기의 안핵사로 安鍾惠를 차정 파견하여 조사 보고하게 했다. 안중덕은 농

민봉기의 주모자로 민용훈, 성우경이 일본사령부에 피검된 상황과 이외 다른 주모자들이 도주하여,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봉기의 발생원인은 始興郡守의 노동자 모집시의 불법행위이며 피해의 상황 정도를 9월 17일 보고했다.

한편 주모자들은 한천변의 聚會時에 군수와 아전들의 불법행위를 논의 성토하고 청원서를 작성하여 鐵山里에 사는 양인 崔永先으로 하여금 다음날에 청원서를 경기도 관찰부에 전달토록 하였으나 도중에 최영선이 체포되어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비록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런 발상은 보다 진일보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다른 조선후기 농민봉기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방법론이 모색된 것이 2차 시흥농민봉기의 특색일 것이다. '독특한 방법'은 지방관의 비리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이를 신문에 투고하여 광범위한 사회적인 여론을 진작시킨다는 것이었다. 전주사였던 南重熙는 군수 박우양과 아전들의 비리 사실을 열거한 투고지를 작성하여 마침 서울에 가는 퇴임한 서리 金元錄에게 7월 14일(음력) 이를 주면서 서울 도착 즉시 황성신문사에 보내라는 부탁을 하였다. 김원록은 급한 일이 있어 이기춘에게 부탁했고 이기춘도 읍내인 李明秀에게 부탁했더니 이명수가 여러 날을 집에 두었다가 의심하여 뜯어보니 군수의 비리에 대한 투서인지라 관가에 밀고함으로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민봉기의 발생이 음력 8월 5일인데 거의 20여 일전에 투고지를 신분사로 보내려고 했다는 시도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일면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활동지역도 종래의 편협한 지역내에서 탈피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전직 이서배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그곳도 정보를 입수하여 상황에 대처한 면도 있을 것이나 이를 규명키 위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議政府에서 9월 20일 度支府에 부탁하여 시흥농민봉기 사건 시에 관아를 난입하는 군민들을 막아내다 사망한 일본인 2명과 부상당한 4명의 일본인에 대해 예비금 중에서 3,232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는 발생원인의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국가의 주권이 사실상 일본인에게 장악되고 있는 상황의 반증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들이 시흥 관아에 들어와 오히려 군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더욱 격양시켜 봉기를 폭력으로 유도해 했는데 국가의 공급으로 이들의 진흙비를 지급함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에 농민봉기의 연루자들이 속속 체포됨으로써 총 11회에 걸친 심문조사서를 토대로 이들에게 죄의 중량에 따라 처벌하고 그 결과를 成案을 만들어 10월 11일 按察使 안종덕이 보고함으로 2차 시흥농민봉기에 관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상의 농민봉기의 결과 상황을 도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농민봉기의 결과 상황

월 일	내 용	비 고
9. 13	▶각 마을 집감에게 한천변의 취회통문 전달	
9. 14	▶한천변에 모인 1만여명 성우경의 사회로 집결	11시
	▶운집한 군중 관아로 난입하여 일본인과 충돌 (군중 3명 부상, 일본인 2명 사망, 4명 부상)	15시
	▶군수 박우양 부자와 관속배의 포박(군수부자 살해)	
	▶관가의 기물 파괴와 관속배의 가사 파괴	
	▶경기 관찰부 다수의 순검 파견	
	▶경기관철부 조사관 파견	
	▶일본의 후비대 도착	200여명
	▶군중들의 해산	
	▶주모자의 색출시작	

월 일	내용	비고
9. 15	▶경기관찰사 외무대신에 보고 : 시흥민란의 개요 ▶서울의 일본후비대 1개소대 파견 ▶일본 주차군 조사관 파견 경찰서장과 순사 1명 / 헌병장교와 병 5명 ▶광명리에 집강들의 재모임 : 청원서 작성 ▶최연선 족치__각 집강들의 청원서를 관찰부로 이송 도중 체포 ▶의정부 안핵사로 안종덕 차정 ▶의정부 상주__경기관찰사 보고서	光明理 (현 광명시 광명동)
9. 16	▶의정부 안핵사 파견 ▶안핵사 안종덕의 조사	
9. 17	▶의정부 경기 관찰사의 보고를 상주	
9. 18	▶의정부 안핵사 안종덕의 사건개요보고를 상주 ▶경기관찰사 외무대신에 보고__일본 후비대가 10명씩 조를 이루어 각 마을의 집강을 족치중	
9. 20	▶의정부 탁지부에 시흥농민봉기 사망한 일본 2명과 4명 에 대한 진출금 지급(3,232원) ▶안핵사에게 민관관련 연루자의 조사 지시 ▶철산리 양민 최영선, 광명리 양민 민선규, 광명리 유학 한성회의 조사	철산리 (현 광명시 철산동)
9. 21	▶안양리 유학 조병익, 박달리 두민 박낙서 ▶일직리 유학 이범학, 자경리 정3품 이연희, 소산리 소 임 최덕순, 안현리 부유사 강선교, 율일리 유학 김교 성, 우와피리 유학 이용, 철사리 유학 서삼이, 도야미 리 유학 이교회 등의 심문조사	안양리(현 안양시 석수동) 박달리(현 안양시 박달동) 일직리(현 광명시 일직동) 자경리(현 광명시 일직동)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 안현리(현 광명시 하안동) 율일리(현 광명시 하안리) 우와피리(현 서울 대림동) 철산리(현 광명시 철산동) 도야미리(현 서울 도림동)

월 일	내용	비고
9. 22	▶당산리 유학 조동석, 원지목리 유학 권종우, 구로리 유학 한백준, 구로2리 유학 이최선, 양평리 유학 이원지 목리(현 서울 도림동)인구, 독산리 유학 송정현, 봉천리 유학 최재상, 신림리 유학 윤행근, 가학동 유학 석근식, 광화대리 유학 안광원, 성도화리 유학 신동희, 가리봉리 유학 송학현, 문교리 유학 김희찬, 삼막동 양인 하주명, 서울 전주사 남중희, 광명리 유학 한경희, 광명리 소임 박점석, 광명리 유학 권경천 전주사 남중희, 광명리 유학 한경희, 광명리 소임 박점석, 광명리 유학 권경천, 광명리 유학 한백규, 광명리 유학 신치옥, 봉천리 유학 김학주, 봉천리 양인 옥석화 등의 심문 조사	당산리(현 서울 당산동) 구로리(현 서울 구로동) 양평리(현 서울 양평동) 독산리(현 서울 독산동) 봉천리(현 서울 봉천동) 신림리(현 서울시 신림동) 가학동(현 광명시 학온동) 광화대리(현 광명시 광명동) 성도화리(현 서울시 상도동) 가리봉리(현 서울 가리봉동) 문교리(현 서울시 독산동) 삼막동(현 안양시 석수동)
9. 23	▶안핵사 안종덕이 외무대신에 보고 ▶농민봉기 주모자로 연루된 자들을 일본 사령부로부터 인수받음 ▶아방래 동몽 김복성, 관속 이종렬, 퇴리 김원록, 서울 양인 이명수의 심문조사	아방리(현 광명시 학온동)
9. 24	▶퇴리 김원록, 전주사 남중희의 2차 심문 ▶서울 이기춘 심문조사 김원록과 이기춘의 대질 심문	
9. 25	▶전주사 남중희, 퇴리 김원로의 3차 심문 ▶김원록과 남중희의 대질심문	
9. 26	▶대무 안핵사에게 일본사령부와 협조조사 지시	철산리(현 광명시 철산동)
9. 27	▶읍내 동몽 이좌득, 군수별실 오소사 ▶읍내 양인 이학돌 군내 박소사 ▶전관이비 옥례의 심문 ▶읍내 이좌득 재심문 ▶퇴리 김원로 3차 심문	읍내(현 서울시 시흥동)

월 일	내 용	비 고
9. 28	▶최영선, 하주명, 김학주의 2차 심문	
9. 29	▶박점석, 송학현, 송정현의 2차 심문	
9. 30	▶안핵사 외무대신에게 보고 : 직산 농민봉기의 조사를 위해 시흥농민봉기 연루자의 조사 연기 요청 ▶한청회, 권경천의 2차 심문	
10. 1	▶한신규, 한경희, 김복성의 2차 심문	
10. 2	▶조병익 임오상 김주현 윤광영 설근식 유광백 안광원 이법학 최덕순 엄선민 김교성 강성교 민재호 서상이 강운형 윤형근 최재상 강 희 신동희 김희찬 한백준 이최선 백점보 조동석 권중우 이민국 이인수 이규희 이 용 김희상 이규항 이원용 이춘심 이용운 강영식 등의 첫 심문과 2차 심문	
10. 3	▶한백규 2차 심문 옥석화 2차 심문 김원록 5차 심문	
10. 5	▶민신규 한성회 3차 심문	
10. 6	▶ 하주명 3차 심문	
10. 8	▶이종렬 3차 심문	
10. 11	▶그 간의 심문조사를 토대로 농민봉기 연루자들에게 죄질에 따른 처벌과 그 결과를 보고 사건의 종결	

3. 證 言

1) 參加者의 證言

農民蜂起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모자를 찾아 이를 처벌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2차 시흥농민봉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민봉기 발생의 보고를 접한 정부는 순검을 파견하여 이를 무력적으로 진압하고 한편 조사관을 파견하여 군민들을 회유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침략을 적극화할 구실을 찾기에 부심하던 때라 일본인의 사상자 발생은 절호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일본공사관은 동대문에 주차하고 있던 수비대중 1개 소대를 시흥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현지에 도착하여 무력시위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억압했다. 그리고 10명 혹은 7~8명씩을 1개조로 편성하여 각 마을을 순방하면서 민란의 주모자로 執綱과 유학인 농촌지식인들을 체포하여 헌병주재소에 수감하였다. 그것은 聚會가 각 마을의 집강을 통해서 연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한 증거이다.

물론 많은 집강과 지식인들이 농민봉기의 연루자로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이들의 증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서술코자 한다.

..... [6]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제1절, 19세기 조선왕조의 사회적 상황]

① 安養地域

안양지역에서 농민봉기의 주모자 및 취회시의 수창자로 연루된 세 사람의 증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安養里(현 안양시 석수동) 집장이며 유학인 曹秉翼(당시 63세)은 9월 15일 관찰부에 이송하려던 소장의 장두였다. 다음은 그의 증언이다.

『나는 연로하고 귀머거리에다 배우지 않아 무식한 자였는데 초 5일(양력 14일) 博達里로부터 통문이 내도하기에 나는 한천교에 가본 즉 각 마을 집장과 사람들이 일제히 모인 중 忠勳府에 사는 成禹慶이 먼저 군중에게 연설하던 말 중에서 이번 노동자 모집은 내부의 관찰부 훈령에 의해 모집한 것이요 본 군수의 자의에 의한 강제 모집은 아니다. 다른 읍보다 먼저 모집한 것은 비록 좋은 처사는 아니지만 그 외에 가히 두려워 할 단서는 없다고 운운하니 군중 중에서 태반은 옳다 하나 유독 삼막동의 河周明이 뛰어나와 큰 소리로 성우경이 본 군수와 야합하여 노동자 모집 중에 돈을 받았기에 이런 엄호의 말을 한다 하니 군중이 일제히 뛰어나와 성우경을 구타하니 장내가 대단한 난장판이 되었다. 이에 재판을 한다 하고 일제히 읍내에 들어갔는데 나는 연로하고 병이 있어 이들을 따라 갈 수 없어 뒤떨어져 귀가하였더니 뒤에 소식을 들은 즉 군수와 외국인(일본인)이 죽었다 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이것 뿐이요, 그것을 범한 자가 누구인지 가히 알지 못하며 6일 광명리 재모임시는 내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관찰부로 소장을 발송한 사실은 듣지 못했는데 소장 밑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행인지 모른다』

博達里(현 안양시 박달동)에 사는 소민 朴洛西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사발)통문이 一直里에서 도달하는 까닭에 나는 집장의 위임으로 한천으로 가서 군중의 뒤에 서있었기에 단지 성우경 하주명의 연설만 들었고 읍에

들어갈 때에는 뒤따라 가다가 배가 고파 귀가하였다. 주동자와 관가의 변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들은 알 수 없으며 본동 집강인 임오상을 일병이 족치하여 서울로 데려갔기에 나는 마을을 대표하여 대신 명령에 따랐다』

三幕洞(현 안양시 석수동)의 양인 河周明(33세)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집이 郡內面 三幕洞에 있는데 가세가 대단히 빈곤하여 쫓신을 팔아서 생활하는 고로 항상 과천 땅에 있었는데 이번 달 5일(음력)에 일하는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6개면의 백성이 집집마다 모두 한천교에 모인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아버지 백부가 모두 일이 있어 갈 사람이 없었으나 참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을 파괴하고 벌을 받게 됨이 근심이 있으니 빨리 가서 聚會에 참석하라고 전해 나는 즉시 한천에 가니 군민이 들어와 모인 자가 이미 수천 명이라. 모두 노동자 모집의 일로 말했는데 유등리 집강 成禹慶이 군민을 지휘하여 앉거나 서게 하고 연설하던 중 노동자 모집의 일로 나와 관가가 돈을 가로챘다는 말이 낭자하니 어떤 마을 執綱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하였는가. 나와서 변명과 질문을 운운하는 바 나는 본래 성우경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금번 노동자 모집시에 그의 작간은 군민이 모두 아는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니 분한 마음이 더욱 일어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월 초의 노동자 모집시에 6개 면이 모두 모여 호소한 즉 관가가 다른 읍이 시행하는 사례에 따른다는 뜻으로 퇴송케 하니 그때 관가의 의도는 정말 강제로 모집함이 아니었다. 온 국민이 선정을 칭송하였으니 너는 그 날 관가의 상경행차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먼저 유덕리로 나아가 노동자를 많이 모아 납부한 즉 일본인이 이를 독촉하여 마침내 우리 군에 미치게 되어 다른 읍보다 먼저 모집하여 납부하니 그 비용이 수만 금이니 이것은 모두 너의 작간의 죄이거늘 어찌 감히 군민에게 변명인가. 말을 다하기 전에 군중이 모두 분

기하여 주먹이 서로 합하거늘 나와 민용훈은 힘을 다해 해산코자 한즉 성우경이 이번 일은 마땅히 관가에서 재판해야 한다하고 나와 군민을 인솔하여 일제히 읍내로 들어가니 관아에 들어갈 때에 이르러 成禹慶의 관리와 수작은 요란한 중에 듣지 못했다. 이 때 갑자기 관가의 세 문이 폐쇄되고 일본인 10여 명이 긴 칼 혹은 철봉을 휘두르고 때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관청은 대변관이라.

나는 성우경을 향해 나갈 것을 요구한 즉 성우경은 긍정하지 않고 어찌 살해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같은 말을 할 때에 문 밖에서 비가 내리는 만큼 돌이 날아 왔고 세 문도 저절로 열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나는 머리 뒤의 세 곳에 돌을 맞아서 유혈이 심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옆 사람이 관아의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했으니 거의 사경이라. 그 후의 일은 도저히 모르고 店幕에 도착하여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불로 상처를 치료하고 비로소 관아의 일을 들으니 변란이 되었다는 고로 나는 두려움이 있어 도주하여 상경하던 길에 성대점에 도착하여 비로소 일본인 수십 명이 시흥으로 내려가는 소식을 듣고 상점 주인의 권고로 의복을 갈아 입고 머리에 큰 수건을 쓰고 총총히 월파정에 도착했다. 그 후 순검에 피촉되어 경무청에 구속되었다가 직급 압송되었으나 당초 通文 발송시에 나는 미리 듣지 못했고 그 후 관가의 변란 때에 역시 보지 못한 즉 나의 죄는 오직 한천번의 회집에서 成禹慶과 서로 다툰 것 뿐이니 함께 모의한 사람과 관아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을 지목할 수가 없다』

이상은 安養 지역의 농민봉기 연루자들 중의 세 사람의 증언이다.

② 光明地域

광명지역은 군청과 가까운 곳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검되었다. 차례로 이들의 증언을 살피고자 한다.

『鐵山里의 양인 崔永先(36세)은 9월 15일 光明里的 재모임시에 집강들이 토의하여 작성한 소장을 가지고 경기도 觀察府로 이송 중 체포된 사람이다.

나는 鐵山里에 사는 소민으로 마을의 집강과 같이 한천의 민회에 참석하고 같이 읍내에 들어 갔으나 나는 군중의 뒤에 있어 단지 먼저 들어간 자가 일본인을 살해한 소식을 들었을 뿐이고 동헌의 작변이 일어남으로 인해 오후에 해산하고 귀가하여 작변의 일은 정말로 보지 못했다.

4일에 사발통문이 광화대리에서 우리 마을에 전달되었는데 三幕洞의 河周明 집에서 나왔다고 들었으나 역시 자세한 것은 모른다. 5일에 각 마을 집강이 마을 사람과 같이 한천교에 모두 모여 하주명, 충훈부에 사는 성우경과 一直里에 사는 주사 민용훈이 노동자의 모집건을 재판한다 칭하고 군민을 거느리고 읍내로 들어가 관가에 다다랐다. 일본인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돌진하여 앞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이로 인하여 변란이 격앙되었고, 많은 사람이 투석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되었고 동헌내에 난입하여 이런 대변란에 이르렀는데 변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나는 정말로 알지 못하나 대개 피살된 사람이 사는 마을사람과 친척이 먼저 변란을 일으킨 것으로 여러 사람에게 들었으며, 삼막동의 하주명은 칼에 귀를 부상당하여 즉시 물러나고, 光明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지만 민가는 칼에 심하게 부상을 당해 그의 조카 閔大介가 숙부의 사망을 호소하고 동헌내에서 난동을 먼저 일으킨 자는 이들이고, 그 외의 성화도리 이름은 모르지만 젊은 한 사람과 신림리 이름은 역시 모르지만 상제인 한 사람이 부상당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과연 듣지 못했다.

6일에 광명리에 再會시에 각 마을 執綱이 모두 모였는데 그 중에서 민주사가 소장을 나에게 주면서 왈 많은 사람이 관내로 들어감은 소동이라 도리어

근심스럽다. 너의 수고비는 각 마을에서 엽전 1냥이니 소장을 가지고 관찰부에 제출하라기에 나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 소장의 뜻이 어떠한 지를 모르고 관찰부에 제출하려다가 이에 체포되어 어제(19일)에 본군으로 압송되었으며 만약에 과히 물을 것이면 도리어 민주사의 전하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였고 5일 오후에 내가 먼저 귀가한 고로 일본인의 타살과 수서기 및 사령의 가사 파괴는 보지 못했으나 뒤에 그것을 들은 즉 광명리의 마을 사람과 閔大介가 그 두목이다』

4. 農民蜂起의 結果

1904년 9월 14일 10시경 시흥 관아가 있는 寒川橋 부근에서 시작되었던 제2차 시흥농민봉기는 경기 관찰부에서 즉시 내부로 보고하여 이틀 후 현지에 파견된 按察使 安鐘應은 농민봉기 발생의 원인 규명과 관련자들을 조사 심문하여 그 처리 결과를 동년 10월 11일 내부로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봉기의 주모자는 聚會를 주도했던 成禹慶과 河周明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관리를 협박한 죄로 각각 종신형과 15년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그 후에 이들은 각각 1등급씩 감하여 15년과 10년으로 되었다.

그런데 농민봉기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방식은 너무 무능했고 구태의연했으며 한편으로 침략군주의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봉기가 발생한 이후의 이에 대한 사후처리에서 그대로 반증되었다.

농민봉기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군국주의 일본이 러·일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일본군 군수시설 확충에 필요한 노동자의 모집을 시행하자 이 기회를 이용한 시흥군의 관속들이 노동자를 강제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포탈하여 지급하지 않자 그 동안 관속들의 착취에 대해 쌓였던 분노가 이를 계기로 폭발되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파악한 중앙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농민봉기의 주모자 색출에만 급급하였고 아울러 분노한 군민들의 안정을 기하는 효유에만 노력을 경주하는 작태를 노출하였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대응책에 반하여 이미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던 일본제국주의 대응책은 농민봉기가 발생하자 일본 거류민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대문에 주차하고 있던 후비대 중에서 약 200명을 차정하여 다음날 곧바

[6]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 [제1편, 19세기 조선왕조의 사회적 상황]

로 현지에 급파하였다. 이들은 농민봉기의 주모자를 색출한다면서 7~8명 혹은 10명을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군내의 마을을 순행하면서 執綱과 미심쩍은 자가 있으면 무조건 체포하여 그들의 군영으로 강제 송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엄연히 대한제국정부의 주권을 존재하고 있었지만 부패와 무능으로 일관된 당시의 위정자들에 의해 주권이 외국의 군대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그냥 묵인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始興群民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방자한 일본군의 행동에 대해 시흥군민들은 겉으로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보냈겠지만 속으로는 나날이 한국으로 세력의 침투를 피하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고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국민들의 관아 돌입시에 이를 저지하다 사망한 2명과 부상당한 4명의 일본군에 대해 대한제국정부는 度支部에 의뢰하여 국고의 예비비 중에서 3,232원을 이들의 진휼금으로 일본공사관에 지급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는 곧 대한제국정부가 대외관계의 명분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당시의 위정자들의 정치의식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정도인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여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방편인 미봉책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러·일전쟁이 더욱 치열해 짐에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은 군용지의 사용과 군수물자의 징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한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요구에 응하기만 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의 내정간섭은 본격화되어 한국의 제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여 그들의 의도에 충실한

사람을 고문으로 요직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국호만 존재하고 실권은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한 국가로 전락되어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그 후 광무 9년(1905) 을사늑약의 체결에 의해서 통감부가 설치되어 1906년 초대통감 伊藤博文(이토오 히로부미)이 부임함으로써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高宗의 강제퇴위 정미조약의 체결 군한말 군대해산 등으로 한국의 식민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점으로 한민족사에 있어 가장 치욕적인 일제식민지배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光武二年九月日始興群民擾再查案】，서울大學校奎章閣圖書.

【始興稷山按覈使奏本(全)】，서울大學校奎章閣圖書.

【官報】，光武八年九月十七日字，光武十年三月二十日字，光武十一年二月十二日字

【高宗純宗實錄】下，【高宗實錄】卷四十四 光武八年九月·十月，卷四十七

光武十年三月條.

■ 시흥지방의 농민봉기에 관한 사료

현 광명시 지역을 포함한 시흥지방의 농민봉기는 조선말기인 광무 2년(2898) 음력 7월 9일 前군수 文鳳梧의 탐학에 대한 제1차 농민봉기, 광무 8년(1904) 9월 14일 조선의 식민지화를 기도하던 일본이 청나라 安東縣에 兵站地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役夫를 강제모집하지 이에 대한 저항한 제2차 농민봉기로 크게 나뉜다.

제3차 농민봉기 때는 郡守父子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군인을 살해하는 등 봉건지배층과 외세에 저항하는 반봉건·반침략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시흥지방의 1·2차 농민항쟁의 면모를 밝혀주는 기본사료로는 규장각 소장의 《始興群民擾再査案》(규장각 No.26138)과 《始興稷山按覈使奏本》(규장각 No.17147)이 있다.

첫 번째 사료는 광무 2년(1898)에 일어난 농민봉기가 진정된 후 제1차 明査官으로 파견된 파주군수 李弼永이 같은 해 9월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 조사한 63장의 供草이다.

심문조사 대상자는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연루된 시흥군 남면 가학리(현 광명시 학온동) 출신의 남면(집강) 成禹(祐)慶(1842~1916)을 비롯한 13명의 각 面里의 집강, 前鄉長·서기·捕校 등의 官屬輩, 면민들이다. 《시흥군민요제사안》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내용, 피해상황, 경기재판소 판사 金永惠의 보고서 등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法務編으로 된 이 책에는 법무문서과장·경기재판소·파주군수인이 각기 날인되어 있어 이 심문조사서가 成冊된 과정과 담당 책임자들을 밝혀 주고

있다. 문서의 내용은 명사관의 보고서를 主案으로, 毀破家舍摘奸成冊과 應問諸罪人囚徒成冊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이 사료는 19세기말 시흥군의 농민봉기를 밝혀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관변측이 군수의 탐학과 지방관속의 불법행위를 가능한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 진상규명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지방관과 지방관속들의 수탈상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특히 불법적인 탐학과 가렴주구에 항거한 농민들의 鄉會를 병자하여 집강과 소임을 중심으로 농민봉기를 추진하는 과정, 향회의 운영방식과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한편 《시흥직산안핵사주본(전)》은 안핵사 安鍾惠이 광무 8년(1904) 9월 4일에서 10월 8일까지 주모자와 관련자들을 심문·조사하여 같은 해 10월 11일에 上奏한 61장의 공초이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국 안동지방에 병참기지화 철도를 건설하였는데 국내에서 한국인 역부를 강제모집한 바 있었다. 이때 시흥군의 관속들이 이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포탈하자 그 동안 관속들의 농간과 作弊에 대하여 쌓였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여 군중들이 던진 돌에 군수 朴岬陽과 그의 아들이 맞아 사망했고, 일본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료는 2차 농민봉기 때 주모자로 활약한 남면 가학리 출신의 집강 성우경 등이 당시 시흥군의 관아가 있던 寒川橋 부근에서 수천 명의 주민을 聚會한 뒤 관아를 파괴하고 소각하기까지의 동기·과정·결과 등을 관련자의 심문조서를 통해 밝힌 매우 귀중한 지방사 자료이다.

이 사료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이 한국인 역부를 강제모집하는 과정, 봉건지배층인 수령과 관속들이 對民作弊를 일삼은 실상을 생생히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심문 조사에 일본군이 지나친 협박으로 관여하였으며, 조사기간 또한 매우 짧았으므로,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당시 분격하고 있던 시흥군 농민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위의 두 사료를 통해 시흥지방의 1·2차 농민봉기의 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始興郡 民擾 裁判宣告 記錄 文書

시흥민요농민 항쟁을 주도했던 주동자에 대한 재판선고판결문이 1904년 제 2차 농민항쟁이 발생한 지 101주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判決文은 광무 9년(1905) 4월 17일 平理院(의금부·고등재판소)의 심리를 담당한 검사의 이름이 있고 재판장과 판사의 이름과捺印이 있으며, 國漢文混用으로 大明律 형법과 大典會通 刑典의 法條文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으며, 官報 광무 9년(1905) 5월 3일 수요일 司法條에 실린 判決文은 漢文體로 平理院 裁判長 閔景植이 4월 17일 判決宣告한 것으로 4월 21일자로 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被告 退吏前主事 金元錄은 大明律 鬪毆編 毆制使及 本管長官條 部民毆本屬知縣 死者文에 依해 絞에 處하고

被告 成祐慶과 被告 河周明은 大明律 訴訟編의 越訴條 附則 口稱奏訴의 直入衙門 脅制官吏制 者發 邊衛充軍律로 大典會通 罪犯準計條인 邊遠充軍者는 準 杖1百, 流 三千里 條와 并히 笞1百에 懲役 終身刑에 處하고,

被告 退吏前主事 閔用勳은 同律 同編 同條 同文으로 同律 作爲 編訴 教誘人 犯法條의 凡諸人 設計用言 教誘人 犯法者는 與犯人同罪란 文에 依하여 笞1百 懲役 終身에 處하노라

光武 9年(1905) 4月 17日

■ 판결 선고서 국역문

판결선고서 제 호

경기시흥군 거 퇴리 피고 김원록 年五十七

경기시흥군 거 농민 피고 성우경 年六十三

경기시흥군 거 농민 피고 하주면 年三十三

경기시흥군 거 전주사 피고 민용훈 年五十

위 피고 김원록과 피고 성우경과 피고 하주명과 피고 민용훈의 안건을 검사의 심리를 거쳐 공소한 피고 김원록을 광무 8년(1904) 음력 7월 4일에 시흥군수(박우양)의 관아의 비리와 역부모집의 부당성 등을 폭로하는 투서를 황성신문에 게재코자 하다가 반피고 이명수의 고발로 관아에서는 9월 10일 김원록은 즉시 잡아다가 순교청에 수감함은 남중희, 이희춘, 오소사 등의 증언에 의해 명백하고 광무 8년(1904) 음력 8월 초 5일 신시(오후 5시)경에 시흥군의 많은 군중이 관아에 돌입해 난동하여 돌이 비 오듯 쏟아져 군수가 충상을 입고 객사로 피신하여 안방으로 피하여 누워 있을 때 피고가 가채를 풀고 탈출하여 큰돌을 가지고 돌입하여 방에 누워 있는 군수를 향하여 공갈 협박하고 들고 있던 큰돌로 군수의 복부를 내리쳐서 절명케 하였거늘 피고가 군수의 복부를 큰돌로 연거푸 찍어서 운명케 하였다 함은 군수의 첩 오소사가 그 때 방에 같이 있다가 상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손을 모아 애걸하며 피고의 얼굴을 보고 기억하였다가 그 사람이 김원록이라 한 사실은 오소사의 고소 및 증언으로 명백하며 이좌득의 증언에 김원록이 큰돌을 들고 관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목격하였다고 한 바, 피고가 황성신문에 군수의 비리를 고발 투고 게재코자 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어 순교청에 수감된 것에 불만과 앙심이 쌓여 있다가 민중들이 관아로 진입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가뒤편을 풀고 군옥을 탈출하고 돌을 가지고 흉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잠적한 것이라 하였으니 중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피고 성우경은 말하기를 광무 8년(1904) 음력 8월초 4일에 군수와 면담하여 첫째 역부모집을 연기하고, 둘째 다른 군이 시행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실시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군수가 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군수는 내일이 본군 군민이 역부모집으로 군중집회를 연다 하니 성생원이 잘 설득해서 해산케 하여 달라 하기에 내가 초 5일 상오 9시경 한천교 집회장소에 가보니 각 동리에서 온 농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여 있었고, 역부 모집의 부당성으로 설왕설래하니 군수의 전갈이나 요망사항을 전할 기회가 없었으며, 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각 동리의 집강 등과 농민들이 앉거나 서거나 한 가운데 성우경이 첫 사회자로 나서 관에 발명하는 자가 있다 하고 한성회·하주명이 나서 피고가 역부모집의 일로 상호 비방하고 다투다가 관가에 가서 재판하자고 칭하고 군민들이 뒤 따라 관아에 들어간 것은 피고로 인한 것이다.

피고 하주명은 한천교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성우경의 작간은 시흥군민이다 아는 사실이라고 성토했고 관아에 가서 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군수도 부모와 같으며, 역부 30명 차정하여 모집하는 일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는 바이니 불가불 관아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군중을 선동하여 관아로 진입하여 군중들도 뒤따라 관아로 난입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명백한 사실이며, 피고 민용훈은 공술하기를 내가 상년 음력 8월 초 5일 동내 소임을 인솔하여 한천교 군중집회에 나갔으나 관아에 진입할 때는 뒤로 처져 들어가지 않았고, 서울 집으로 귀가한 후 며칠 뒤에 체포되었으며, 통문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관아에서 일어난 일들은 듣지 못하였다고 극구 변명하나 이용의 증언에 그대가 시흥군 42개동 집강 동민 등에게 집회에 나오라는 사

발통문은 일직리에 거주하는 민용훈으로부터 나왔음은 소장과 같으며, 수보 문장이 안핵사라 하고 이봉선의 공술에 통문필적이 민용훈이 손수 쓴 필적과 같았고, 김회찬, 이학범, 임오상의 증언에 일직리 소임 오한철이 서장을 가지고 와서 발달리에 전하라 하며, 오한철이 말하기를 상년 음력 8월 초 3일 아침에 민주사가 불러서 가본 즉 민주사가 종이에 직접 써서 급히 알리는 서찰이니 네가 즉시 박달리 집강 임오상에 전하고 회보하라기에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으나 나중에 들은 바로는 급한 서찰이 아니고 집회에 모이라는 통문이였다고 하며, 오한철과 피고 민용훈과 대질에서 피고가 자백하고 시인하며 용서를 빌었으나 통문이 발송된 후이니 무슨 소용이 있으며 흉모를 꾸며 군민을 모이게 한 것이 이 통문으로 인한 것이니 중벌을 면할 길이 없으며, 이좌득은 병으로 해서 죽었으며 일본군인 2명이 죽은 사실을 본 군민 민점석이 일본군인의 칼에 찔려 죽은 뒤 군중들이 돌을 던져 일어난 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일이요, 민점석의 친척 민준염, 민대기와 같은 마을의 김자근봉, 박치운의 주살을 막고자 한 것은 박점석의 증언이 있었으나 범인 등은 도망하여 체포하지 못하였고, 군수와 그 아들이 죽은 사실은 오소사의 증언에 의하면 농민들이 관아에 진입할 때 그자가 담을 넘어 도주하다가 콩밭에 쓰러져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은 농민들이 한천교에 모여 관아로 진입할 때 군중에게 호소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 역시 군수가 민중의 호소에 따르지 못하여 급소를 칼에 찔렸을까마는 관문을 걸어 잠궜던 칼에 찔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각자 방위하다가 칼에 찔렸은 즉 그 난리통에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 하겠으나 이미 죽음을 당하였으니 추궁할 수가 없으며, 피고 등은 응분의 죄가 있으니 중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피고 김원록은 대명읍 투구편 구제사 및 본관 장관조 부민구본속지현 사자 조문을 적용하여 교살에 처하고, 피고 성우경과 피고 하주명은 대명읍 소

송편의 월소조 부례의 주소 직입아문의 협제관리자는 변위충군율의 대전회
통 죄범준계조의 변원충군자는 준 장일백에 유삼천리 조문을 적용하여 태일
백에 징역 중신형에 처하고, 피고 민용훈은 같은 율 같은 편 같은 조문으로
같은 율의 사위편 사교유인 범법조와 법제인 설계용인 교유인 범법자는 범법
인 통죄라는 조문에 따라 태일백에 징역 중신형에 처하노라.

광무 9년(1905) 4월 17일

평 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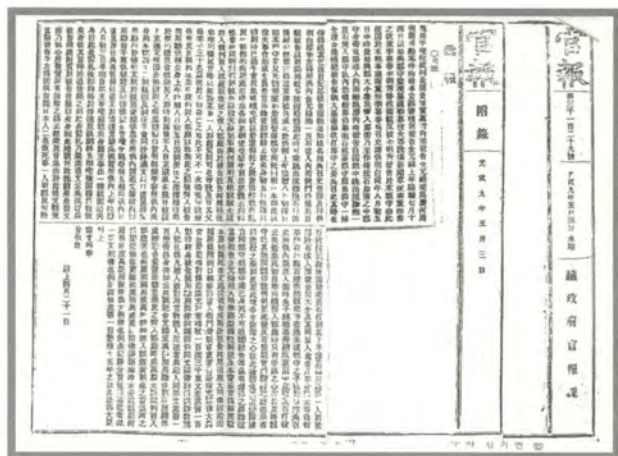
검사 홍종억 판사 이규항 인

검사 함태영 판사 이병화 인

입회 이면우 판사 태명식 인

판사 심헌택 인

재판장 민경식 주사 김기연 인



◆ 관보에 실린 판결선고서 상주본

■ 피고 재판일지

김원록	57세	전주사 퇴리	경기 시흥군 거주
	광무 8년	1904.9.1	무고 모함죄로 피검 수감
	광무 8년	1904.9.14	민요시 군옥 탈출
	광무 8년	1904.10.1	피검 구속
	광무 9년	1905.4.17	평리원 선고 판결, 교에 처함
		1905.4.21	대명율 변란죄를 적용 교(絞)에 처하고(법무대신 상주) 교살형(絞殺刑)으로 집행
성우경	64세	농민	경기 시흥군 남면 유등리 (현 광명시 가학동 공세동)
	광무 8년	1904.9.14	시흥군 민요주도
	광무 8년	1904.9.16	일본군사령부에 피검
	광무 8년	1904.10. 3	평리원 한성재판소 신병인수
	광무 8년	1904.10.17	재판개시 일본군 사령부 이사입회
	광무 9년	1905.4.17	선고 판결(평리원), 종신형에 처함
	광무 9년	1905.4.21	대명율형법 협제관리죄 적용
			종신형에 처함(법무대신 상주)
	광무 10년	1906.1.25(음)	종신형에서 15년 징역으로 감형
	광무 11년	1909. 1. 27	순종 33회 탄신천추경절 평리원 기결수
			석방령으로 특사석방
하주명	33세	농민	경기 시흥군 삼막동
	광무 9년	1905.4.17	선고판결(평리원)
	광무 9년	1905.4.21	징역15년 대명율형법 협제관리죄(법무대신상주)
	광무 10년	1906.1.25(음)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
	광무 11년	1907.1.27	순종 33회 탄신천추경절 평리원 기결수
			석방령으로 특사석방
민용훈	50세	전주사퇴리	시흥군 서면 일직동
	광무 9년	1905. 4. 17	선고판결(평리원)
			대명율형법 사위죄 적용 종신형에 처함
	광무 9년	1905. 5. 2	지도군(智島郡)에 유배 되었음

■ 始興郡 民擾事件連累者 名簿 ①

始興郡 行政區名 面里(現 行政區名)	光武(1898年) 2年 9月(음7.9)1次 連累者	光武(1904年) 2年 9月 2次 連累者
▶縣內面(3)		
•安養里(10)_安養市 萬安區 石水洞	•三幕洞 河周明(33)	•河周明(33) •曹東翼(63)
•博山里_서울특별시 九老區 始興洞	•嚴宇永(34)	•嚴宇永(34)
•上坪里(5)_서울특별시 九老區 始興洞		
▶東 面(10)		
•上道里(15)_서울특별시 銅雀區 上道洞		
•成道化里(15)_서울특별시 銅雀區 上道洞	•申東熙(63)	•姜熙奉 •童蒙 申秉熙
•奉天里_서울특별시 冠岳區 奉天洞	•李德鼎(53) •崔在象(50)	•玉石花(50) •崔在象(50)
	•金學柱(43)	•姓名未詳 尹行根(51)
•新林里_서울특별시 冠岳區 新林洞	•尹行根(51)	
•場內里_서울특별시 冠岳區 新林洞(?)		
•書院里(10)_서울특별시 冠岳區 新林洞		
•蘭谷里_서울특별시 冠岳區 新林洞		•新吉洞 李奎桓
•文橋里_서울특별시 九老區 ()山洞	•金會瓚(62)	•姜玉響 •金會瓚
•()山里_서울특별시 九老區 ()山洞	•宋泰鉉(58)	•宋鼎鉉(58)
•加里山里_서울특별시 九老區 加里峯洞	•朴仁鎬(57) •宋鶴鉉(84)	
▶西 面(8)		
•博達里(15)_安養市 萬安區 博達洞		•朴洛西(51) •林五相
•一直里_光明市 日直洞		•閔用勳 •李範學(40)
•四大隅里(一自鷺里):光明市 日直洞		•李淵迴(74)
•所下里_光明市 所下洞	•羅淳吉(40)	•崔德順(34)
•加里大里_光明市 所下洞		•嚴善敎
•栗日里_光明市 下安洞	•李東植(65)	•姜善敎(56) •金敎性(65)
•鐵山里_光明市 鐵山洞	•徐相怡(58) •崔永先(36)	•姜聖敎 •崔永先(36)
•已省里(10)_光明市 鐵山洞		•徐相怡 •閔在鎬

■ 始興郡 民擾事件連累者 名簿 ②

▶ 南 面(6)

- 場基里_光明市 駕鶴洞
- 柳等里_光明市 駕鶴洞
- 阿方里_光明市 老溫寺洞
- 老溫寺里_光明市 老溫寺洞
- 光明里_光明市 光明洞

- 廣火大里_光明市서 光明洞

▶ 上北면面(7)

- 堂山里_서울특별시 永登浦區 堂山洞
- ()坪里_서울특별시 永登浦區 ()坪洞
- 仙遊峯里(25)_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堂山洞
- 沙村里_서울특별시 永登浦區 道林洞(?)
- 道也味里(20)_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道林洞
- 遠之牧里(15)_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道林洞
- 九老里_서울특별시 永登浦區 九老洞

- 成禹慶(50) • 薛根植(43)

- 韓兢會(60) • 朴点石(45)

- 權敬天(55) • 韓百揆(29)

- 申致玉(55) • 朴致云

- 閔信奎

- 李必奉 • 裴又成

- 金吉甫 • 韓百濬

- 安光遠(43)

- 金自斤奉, 吳哥, 李哥

- 羅漢女(57) • 趙東() (59)

- 李仁國(67)

- 李奎會(65)

- 權鍾祐(61)

- 成禹慶

- 金卜成(20) • 尹光永

- 柳景伯 • 金周鉉

- 閔点石 • 閔大介 • 閔俊兼

- 金吉甫 • 裴又成 • 金自斤奉

- 閔信奎 • 韓性會(54) • 李必奉

- 朴致玉 • 安光遠(43) • 朴点石

- 趙東錫

- 李仁秀

- 白占甫

- 李奎會

- 權鍾祐 • 韓百駿 • 李最善

■ 始興郡 民擾事件連累者 名簿 ㉔

▶ 下北面(5)

- 放鶴湖里(속칭 方下串里)_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永登浦洞

- 麻浦里(20)_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永登浦洞(?)

- () 塘里(15)_서울특별시 銅雀區 大方洞

• 金會祥

- 牛臥陂里(10)_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大林洞

- 高寺里(20)_

서울특별시 銅雀區 鷲梁津洞

• 李源容 • 李春心

• 番大方里 • 金會祥 • 李甲云

• 李會祥 • 重宗里 • 姜永植

• 李容年(55)

【始興郡 行政區域名稱】

조선시대 금천현(-시흥현-시흥군)의 방리(坊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없다. 더욱이 조선전기의 자료는 전무하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영조 35년(1759)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완성을 목적으로 각 관읍(官邑)에서 편집하여 올린 내용을 종합·편집하여 발간한 <여지도서>(輿地圖書)가 가장 오래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한다. 영조대 금천현의 행정구역 내용은 위와 같다. ()안의 숫자는 치소와 떨어져 있는 거리(단위:里)를 표시하며, ()안의 숫자는 동·리 수를 말한다.

成祐慶(禹慶)

1842年 헌종(憲宗) 8年(壬寅)生 집강공(執綱公 東學의 敎職인 六任의 第四位職) 抗日闘士 1864年 고종황제(高宗皇帝)가 一二歲에 즉위(卽位)하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섭정집권한 後 시부(嫗父)인 대원군(大院君)과 며느리 민비(閔妃)와의 반목불화(反目不和)가 계속되고 국내(國內)의 제반 정국(政局)이 어지러움을 틈타서 美·日·淸·獨·露·佛



◆ 成祐慶(禹慶)

等 제강대국(諸強大國)이 호시 탐탐 한국(韓國)을 넘보고 있을 때, 1894年의 일청전쟁(日淸戰爭), 同年의 갑오경장(甲午更張) 以後 日의 努力이 득세함에 따라 친일정권(親日政權)이 강력(強力)해지던 中, 1895年 八月 二十日 국모(國母)인 민비(閔妃)가 일인(日人)에 의해 시해(弑害)되자 반일(反日)감정은 더해 갔다.

때마침 1898年(光武 2年) 친일주구시흥군수문봉오향장이종열(親日走狗始興郡守文鳳梧鄉長李宗烈), 순교이희장(巡校李熙章), 이희창(李熙昌), 사령김명학(使令金明學), 홍복득(洪福得), 이석봉(李錫奉), 전수서기이희복(前首書記李熙福), 형방서기김홍식(刑房書記金鴻植) 등이 官令을 빙자하여 일인(日人) 세력을 배경으로 포악무도한 학정(虐政)을 자행(恣行)하자 당시(當時) 시흥군남면유등리(始興郡南面柳等里)(現 光明市) 거주(居住) 집강(執綱·東學軍이 稅政改革을 實施하기 爲하여 地方에 設置한 一種의 革命政權의 民政機構의 職位)이었던 성우경(成祐慶·禹慶)이 총지휘관(總指揮官)이 되어서 광무2년(光武二年) 八月에 第一次叛亂을 일으켜 수년간(數年間)의 옥고(獄苦)를 치르게 되었다.

정국(政局)은 완전(完全)히 친일(親日)로 기울어져 급기야(及其也)

1904年(光武8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締結)하고 국내요지(國內要地)의 일군수용(日軍收用)을 인정(認定)하고 한일제일차협약(韓日第一次協約)이 맺어지고 재정외교 등(財政外交等)의 일인고문정치(日人顧問政治)가 실시(實施)됨에 따라 반일감정(反日感情)이 극(極)에 도달(到達)하자 성우경(成祐慶)이 재차(再次)로 총지휘관(總指揮官)이 되어 1904年(光武8年) 9月 14日을 期하여 사발통문(沙鉢通文)(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돌리는 통문)을 돌려 시흥군(始興郡)의 六個面 사십이동(四十二洞)의 천수백명(千數百名)의 군민(郡民)이 일시(一時)에 봉기(蜂起)하여 노동자(勞動者) 강제모집 부당동원 등(強制募集 不當動員等)에 반발 폭동(暴動)하자 이를 수습차(收拾次) 부임중(赴任中)인 신임군수(新任郡守) 박우양부자(朴隅陽父子)와 긴급출동(緊急出動)한 일병(日兵) 二名 等 四名을 살해(殺害)하게 된 것이다.

당시(當時)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는 주모자(主謀者)인 총지휘관(總指揮官)이 성우경(成祐慶·禹慶)임이 밝혀지자 협제관리죄(脅制官吏罪)로 종신형(終身刑)에 처(處)해 평리원(平理院)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기결죄수중(既決罪囚中) 가합감등건(可合減等件)을 법무대신(法務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상주(上奏)하여 기결수감등(既決囚減等) 法을 適用하여 「성우경 협제관리죄(脅制官吏罪), 역종신(役終身), 감일등(減一等) 一五年」이라는 감등처분(減等處分)이 내려 종신형(終身刑)에서 십오년형(十五年刑)으로 감등판결(減等判決)이 내려진 것이다.

그후 천만다행(千萬多幸)히도 1907年(光武 11年) 純宗이 卽位함과 同時 三三回誕辰祝賀인 천추경절(千秋慶節)이란 일대국경일(一大國慶日)을 맞이하게 되자 1907年 2月 27日자로 평리원기결수(平理院既決囚) 석방령(釋放令)에 의하여 고령자(高齡者)에 對한 특사령(特赦令)으로 석방하게 되었다.

■ **以上 고증서 (考證書)**

- ① 경기재판소제사판호(京畿裁判所第四八號)
훈령(訓令)에 의한 보고서(報告書) 제(第) 124號
- ② 국사편찬위원회편(國史編纂委員會篇) 각사등록(各司謄錄)
경기도편(京畿道篇) 614쪽,
光武8年 9月 30日 보고서(報告書) 按?使 安鍾惠이
외부대신(外部大臣)에게 보고(報告)한 내용(內容)
- ③ 황성신문(皇城新聞)
光武8年 9月 篇 119쪽
- ④ 일한외교자료집오(日韓外交資料集五),
明治 37年 9月 16日篇(日人編輯)
- ⑤ 의정부(議政府) 관보과발행보(官報課發行報)
第3405號 光武 10年 3月 20日 火曜 36쪽
- ⑥ 왕조실록(王朝實錄)
光武8年 9月 15日, 同 10月 18日等.



◆ 執綱 成祐慶(公慶)_光明市 駕鶴里 貢稅洞 千山麓

■ 成祐慶 (禹慶) 年譜

연도	주요 내용
1842(憲宗 8年)	1916(辛酉) 壽 75
1842(憲宗 8年)	始興郡 南面 柳等里(현 광명시 가학동 공석골)에서 出生
1892	始興郡 南面 狀頭執綱
1898(光武 2) 9	始興郡 民擾事件 農民蜂起를 領導(57歲)
1898. 9. 24.	始興郡民擾再査案 報告 第124號 明査官 坡州郡守
9. 28	京畿裁判所 判事 金永惠 報告書 主謀者로 囚 始興郡 監獄에 收監
1899. 9.	釋放
1904(光武 8) 9. 14	第二次 始興郡 民擾事件 農民蜂起를 主導(63歲) 始興郡 南面 狀頭 執綱으로 있으면서 沙鉢通文으로 始興郡 六個面 四十二洞 郡民 數千名 이 寒川邊에 集結하여 排日과 批政을 규탄하고 蜂起하여 始興郡 官衛를 襲撃하여 朴嵎陽 郡守 父子와 叛亂을 鎮壓하 出動한 日本軍 二名을 殺害하였다.
9. 23	總指揮官 主謀者로 逮捕되어 日本軍 司令部로 押送
10. 11	按覈使 安鍾惠의 始興郡稷山 안핵사 奏本報告 脅制官吏罪 終身刑으로 西大門監獄에 收監
1906(光武 10) 3. 5	송소문에 依해 平理院 漢城裁判所의 既決罪囚中 可合減等으로 終身刑에서 15年刑으로 減刑
1907(光武 11) 2. 27	純宗即位와 33回 誕辰 千秋慶節의 國慶日을 맞이하여 平理院 既決囚 釋放에 依한 高齡者 特赦令으로 釋放 (66歲)
1911(庚戌)	古稀(70歲)
1916(辛酉) 음 6. 7	卒壽75

※墓는 始興郡 南面 柳等里 千山(현, 광명시 가학동 공석골 천산) 南向에 있고, 1987年 碑를 建立

註 <昌寧成氏 文獻誌>, <始興郡民擾再査案>, <始興郡誌>, <京畿人物誌>

<光明市誌>, <京畿道郷學總覽>

註 • 1898年 再査案에 年50은 年57의 誤記임.

■ 광명지역 독립운동가_성우경

<p>京畿道 鎭興縣 西面 所下里 五八番地 駕鶴里 七八番地</p>											
<p>之全成禹慶受三國リ大正五年六月六日之主トシテ 鎭興郡西面所下里五八番地ニ轉籍南大正拾九年三月六日受附 京畿府光化鎭通志郡番地ニ轉籍南大正拾九年五月四日受附 日京成府尹伊達四郎受附同月於四日送付全戶籍除籍</p>											
妻						主 戸					
<p>李 龍 姬</p> <p>出生 民國四年 乙亥年 九月 朔 戌 式</p>						<p>成 祐 慶</p> <p>前主 成 禹 慶</p> <p>姓及本貫 成 禹 慶 長男 昌寧</p>					
<p>父 李 泰 祐 式女 龍 仁</p> <p>母 李 氏</p>						<p>姓及本貫 成 禹 慶 長男 昌寧</p>					

允默 윤묵

字執中
一七六六年癸卯四二
年丙戌生
純祖七年丁卯十一月
一日卒
配成松尹氏 父壽哲祖
道謙承旨忠輔后外祖
同知廣州李之聲己巳
生丁丑二月四日卒
墓光明市駕鶴洞屯田
堤(引堂)良堂雙封
開發地區豆一九八五
年四月大葬

樂義 락의

字明瑞
一七七七年正祖丁巳
生
一八四二年憲宗壬寅
卒
配慶州李氏 父昉祖彦
仁曾祖格外祖安東權
宗壽正祖丙辰生
卒
墓光明市駕鶴洞屯田
堤(引堂)附 開發地
區豆一九八五年大葬

子 祐慶 유경

(高慶)生父文孝公派
樂基(一名夏洛)字致
英
一八四二年憲宗壬寅
生
一八六六年趙進陰六
月七日卒壽七十五
墓光明市駕鶴洞貢稅
里(引堂)舊始興郡
西南駕鶴里南向
光武二年(一八九八)
光武八年(一九〇四)
兩次始興郡民捷事件
總頭領役終身刑
純祖元年(一九〇七)
持敎王朝實錄文獻誌
參照
一九八七年碑建立
配善山金善仁父鼎容祖
在民曾祖聲無德郡
外祖文化柳籍一八三
九年憲宗己亥生
陰五月六日卒
墓附
一 女夫 全州 李東述
二 女夫 全州 李東植

長子 耆兼 지겸

字聖民
一八六〇年哲宗庚申
八月三日生
一九四四年甲申陰三
月一三日卒壽八五
墓光明市駕鶴洞貢稅
里南向
配龍仁李龍姬 父榮祐
祖晉臣曾祖大聖
一八六一年哲宗辛酉
九月二日生
一九四一年辛巳陰二
月九日卒壽八三
墓附
一九八七年墓碑建立

長子 建鏞 건봉

一八八九年高宗己丑
一月二六日生
一九六四年甲辰陰三
月四日卒壽七六
墓光明市駕鶴洞貢稅
里南向
配文化柳允姬
一八八六年丙戌二月
二四日生
一九五二年閏五月一
〇日卒壽六七生一男
墓附一九八七年墓碑
建立
配金海金彦順
一九〇三年癸卯九月
一〇日生
墓光明市駕鶴洞貢稅
里南向 生一男
一九八七年墓碑建立

長子 喜洙 희수

號仁谷
一九一九年己未陰一
月二八日生
前歷朝鮮銀行次長經
由信託銀行傍系會社
擔任不動產株式會社
常務理事歷任
廟令公派宗會會長
儒靖公派宗會會長
宗谷公派宗會副會長
大宗會常任理事
文獻誌編纂主幹
德靖公派建立委員
長一九八九年己巳一
月一日卒壽七〇
墓光明市駕鶴洞貢稅
洞祖父墓下 一九八九
年己巳五月墓碑建立
配漢陽趙文子
舊名廷愛
一九二六年丙寅八月
二九日生
父麟章 前歷京城紡
織株式會社專務理事

여 백

7_ 경성방송국 단
해외연락사건

[illegible]

여 백

제1장 “短波放送事件을 再照明한다.” 放送史研究家—俞炳殷

先輩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아는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短波放送事件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事件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제 나름대로 熱心히 工夫했습니다.

裁判 紀錄上에 나와 있는 分명한 事項도 있고, 獄苦를 치르고도 生存해 계시는 여섯분의 생생한 證言도 앞으로 있을 것이기에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裁判을 비롯한 이 事件에 直接的인 關係로 登場하는 人物이 55名이나 되고 間接적으로 關聯이 있는 분이 서너분을 합쳐 約 60名の 人脈이 舉論되어야 하며, 제가 研究한 아이টে을 추려 보아도 約 80 아이টে이나 되어 主催側이 주어진 時間엔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實情입니다. 要點에 따라 人脈을 떠나서 事件自體만을 말씀드리겠으니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主題發表를 하게 된 것은 短波放送事件으로 先輩放送人이 日警에 檢舉됨에 따라 缺員이 생겼고 또한 그러했기에 뒤처리를 해야 할 位置에 놓이게 되고 一時나마 警察에 불려가 苦生하신 金斗植, 한덕봉, 이남용 씨 등의 經驗談에 따른 短波放送事件 內容을 어느 程度 體驗에 가까운 느낌으로서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또한 日帝에 抗拒한 民族運動의 一環으로 事件化 된 것이 世上에 알려져야만 된다는 一念에서 꾸준히 研究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特히 諒解를 먼저 求하고자 하는 것은 心血을 기울여 史料를 發掘하고 調査를 했습니다만 事實이 完全히 破해쳐진 것이 못되

는 未完成品이라는 點입니다. 放送史를 研究하는 敎授님들에게 그리고 後學들에게 하나의 앞으로의 課題를 드린다는 뜻에서 誠意것 事件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日帝下의 放送歷史는 1927년부터 1945년까지 不過 18年間이었으며 短波放送事件은 18年中 3分之1인 6年間に 걸쳐 發生한 重大한 事件입니다.

短波放送事件에 對해 雜誌等 出版物에 그 輪廓이 斷片的으로 나와 있고, 몇 분이 獄苦를 치르시고 獄死한 분이 여섯 분이나 되었다고 소개되고 있어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獨立運動史에도 短波放送事件이 나와 있습니다.

事實이 重大한 事件임을 立證하는 것으로 裁判所, 檢察과 警察의 調査等에 記載된 人物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0名이나 되었고, 有罪라고 認識되어 刑을 받은 분, 略式裁判에 依해서 刑을 받은 분, 未決囚로 獄苦를 치르신 분 등을 합치면 70名에 이르렀으며 全國的으로 警察에 끌려간 사람이 約 350名에 이르고 있습니다.

日帝의 言論彈壓이 極에 達해 民族誌인 朝鮮日報과 東亞日報가 強制廢刊된 關係로 短波放送事件은 當時 단 한줄 단 한자도 報道된 바가 없습니다.

刑을 받은 사람이 70名, 連行된 사람이 350名이 넘는 事件이 全혀 報道되지 않았다는 事實은 日帝의 言論彈壓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放送歷史를 되돌아 볼 때 一部學者들은 日本 NHK의 屬物이었다는 表現을 쓴 것 같은 記錄이 있는데 勿論 植民地下에 1927年 發足한 社團法人 京城放送局이기에 日人의 絶對 支配下에 있었던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다음 例舉하는 事實은 JODK가 우리 放送史의 一部임에는 틀림없고 또 한 방송의 嚆矢는 1927年인 것입니다.

첫째 理由로 JODK는 日人의 計劃에 依한 것이지만 當時 世界的인 無線 技術者로 國內外에 알려진 朝鮮의 마르코니라고 까지 불리웠던 韓德奉氏와 放送管理局制度를 6.25 收復後 創設한 盧昌成氏 이 두 분에 依해서 JODK가 電波를 發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事實입니다. 日人의 技術에 依해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韓人의 技術에 依해서 햇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社團法人 京城放送局의 株式問題인 것입니다. 株當 額面價 200圓인 株式를 實際로 팔러 다니시던 분으로 江陵에 살고 계신 정갑천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社團法人 京城放送局의 株主가 우리 한국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政府樹立後 朝鮮放送協會 財産中 放送現業財産은 國有化 措置되었으나 殘餘財産은 敵産으로 處理된 것이 아니라 大韓放送事業協會 財産으로 處理된 事實만 보아도 社團法人 京城放送局 設立 當時 뜻있는 民族資本이 投入되었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입니다.

初創期 放送은 日本 對 우리말放送 比率이 7對 3에서 3對2로 바뀌고 끝내 2重放送으로 1937年에 우리말放送 單獨 채널이 생겼고, 우리말 放送의 出力도 10KW에서 50KW로 크게 늘린 바 있는데 50KW 出力은 日本東京放送局보다도 한발 앞선 施設이었고 送信技術者인 韓人 黃泰永씨가 있어서 可能했던 것입니다. 當時 黃泰永씨의 無線送信에 關한 論文은 特許權에 該當된다고 해서 學界의 注目을 끈 바도 있습니다.

技術面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放送編成面에서 우리말 放送의 初代 責任者는 白南薰先生 二代가 金靜鎮先生 三代가 沈雨燮先生 四代가 李惠求先生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文字 그대로 巨木이시었으며, 金靜鎮先生은 우리말 放送 안에 朝鮮語講座를 新設해 放送하다 日人에 依해 强制로 中斷되게 되자 辭表를 던지셨고, 沈雨燮課長은 우리말 放送에 通用되지 않는 日本地名等 日本말을 쓸 것을 強要當하게 되어 이를 拒絶하다 亦是 辭表를 쓰고 放送局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四代 李惠求博士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解放後 混亂期속에서

放送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컴퓨터라이즈된 韓國放送公社가 偶然히 생겨난 게 아니라 實로 1927년부터 어어져 내려 온 하나의 傳統위에 서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日帝下 19年間の 우리 放送史 中 特記할 것은 우리말 抹殺政策을 편 總督政治에 反旗를 들고 우리말을 갖고 닦아 왔으며, 우리의 傳統文化 特히 宮中音樂의 大衆化와 民俗音樂의 普及 등은 빼놓을 수 없는 業績이며, 野談, 野史 등의 방송은 愛國心を 불러 일으킨 事例로 그 功課는 學術的인 研究課題인 것입니다.

日帝 18年間 放送歷史를 더듬었습니다만 短波放送事件의 背景 說明을 爲한 것입니다.

短波放送事件은 放送內部와 放送外部로 區分해서 말하자면 兩大山脈으로 이루어진 事件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證言席에 나와 계신 宋南憲先生 그리고 獄苦로 出監後 幽明을 달리 하게 된 東亞日報 記者였던 洪翼範先生이 放送外部의 한 크나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이며 放送內部의 山脈은 放送局職員이 主流를 이루었으나 여기에는 言論, 言論人, 商人, 農業人 등 各界各層이 關聯된 것입니다.

宋南憲先生으로 말하자면 오직 獨立을 爲해 盡力하신 분으로서 日帝末葉 東京에 있는 呂運亨씨를 찾아가 民族의 앞날을 걱정하시기까지 했으며, 金炳魯先生, 李仁先生, 許憲先生, 宋鎮禹先生 等과도 交分이 있었고, 海外連絡을 맡으신 분입니다. 한便 洪翼範先生은 東亞日報 平記者이시었으나 日本와세다 大學과 美國미네소타州立大學을 마치신 분입니다. 特히 敝新中學校를 나오신 關係로 當時 敝新中學校 校長 淸스씨의 사랑을 받고 큰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宣敎師이시기도 한 淸스씨로부터 短波放送에 依한 中日戰爭, 太平洋戰爭에 關한 情報를 宋鎮禹先生을 비롯해서 尹潛善氏에게 提報하고 나라 앞날을 크게 걱정하신 분입니다.

裁判記錄에 依하면 1939年 2月에 洪翼範, 宋南憲 두 분이 接線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1年 12月 8日 日本이 二次大戰인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文字 그대로 國內는 完全에 가까운 暗黑世界가 되고 만 것입니다.

海外連絡을 맡아 온 宋南憲先生, 洪翼範先生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困境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逆境에 處해 있을 때 短波放送事件의 主流인 外部山脈과 放送局內部山脈이 糾紛된 것입니다.

放送內部에서 特記할 人物이 있습니다. 바로 李二德氏라는 분입니다. 李二德氏는 美國 인디애나 州立大學을 卒業한 電子學徒로서 美國市民權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不幸히도 太平洋戰爭의 砲火가 터지기 前에 서울에 계신 母親이 危篤하여 歸國하였다가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발이 묶이게 되어 道理없이 就職을 한 게 JODK이었는데 美國大學은 認定해 주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學력을 高等學校만 取扱해 줌에 따라 待遇問題로 不平分子이었습니다.

JODK 貞洞 演奏所 2層 建物에 放送 指揮所라는 게 있었습니다. 먼지가 있으면 안된다는 規則에 따라 슬리퍼를 신든지 그렇지 않으면 맨발로 들어가야만 指揮所입니다.

指揮所에는 勿論 各地方 放送局에 布告令에 依하여 宣敎師로부터 押收한 短波放送受信機가 各各 두 臺씩 配置되어 있었습니다.

指揮所에 配定된 短波放送受信機는 結果적으로 李二德氏의 專有物이 自然스럽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李二德氏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는 美國放送의 제네랄 서비스를 不便없이 들을 수 있었으니 戰況에 關한 뉴스는 正確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JODK 2層 建物 地下室에는 成基錫氏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말씨가

드문 이분은 그야말로 땀쟁이였습니다. 放送機材 補修는 도맡아 하신 분이지요. 그런데도 이 분 春府丈은 그야말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愛國者이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成基錫氏가 所聞을 들었는데 그는 李二德氏로부터 所聞 아닌 事實을 듣고 어찌 短波放送受信機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 들었습니다. 정말 만든 것입니다.

들려 오는 소리는 雜音이 있었지만 重慶에서 나오는 臨時政府의 방송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朝鮮의 白頭山 호랑이가 어흥 짓는 소리와 더불어 나오는 뉴스와 뉴스 解說 그리고 李承晩博士가 直接 肉聲으로 하는 “故國의 同胞 여러분이 放送을 듣고 서로 서로 傳하고 組織을 하십시오. 우리의 所願인 獨立은 멀지 않았습니다.” 放送은 繼續되었습니다. 成基錫氏는 피가 끓어 오름을 느낀 나머지 그 분의 春府丈(成禧慶)께 事實대로 아뢰었습니다.

短波放送을 들어도 안되며 하물며 短波受信機를 남몰래 갖고 있기만 해도 鐵窓行이니 普通 아버지는 장작으로 때리는 척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普通 사람인 것입니다.

成基錫氏의 父親은 야단을 치기는커녕 “重慶 臨時政府엔 어느 분이 계시다고 하더냐.” “美國에서는?” “美國에선 美洲議會라고 하면서 李承晩이라고 하는 분의 尊稱을 들었습니다.” 父親은 어떻게 된 것인지 洽足해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고는 “앞으로는 操心하도록 해라. 왜놈들의 監視가甚하다.” 이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횡하니 밖으로 나가시는게 아니겠습니까? 成基錫氏도 父親의 뒤를 따랐습니다. 父親의 意氣揚揚 만난 분은 바로 趙炳玉 博士이였습니다. 倭警의 눈을 避해 다니신다는 趙炳玉 博士를 相逢한 父親은 더더욱 힘이 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成基錫氏도 閑寂한 敦岩洞으로 혼자 移舍를 해서 短波放送에 넋을 잃고

또 잃기만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같은 狀況下에서 2層에 있는 李二德氏와 地下室에 있는 成基錫氏도 歴史的인 相逢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눈으로 만난 두 사람은 意氣相通을 直感한 것입니다. 그 後 몇 날 몇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런데 運命의 作亂은 成基錫氏가 光州로 轉勤을 하게 되어 約 8個月을 만날 機會를 喪失하고 만 것입니다.

日人을 徹底하게 排斥하는 開城에 放送所를 設置하게 되어 李二德氏가 所長으로 赴任하게 되었습니다.

所長이 된 李二德氏도 同僚로서 成基錫氏를 指名하게 됩니다.

洪翼範氏와 宋南憲氏는 海外連絡이 안되는 가운데 苦心 끝에 JODK 어린 이시간 當時 지금으로 말하면 PD인 楊濟賢氏와 接線이 된 것입니다.

海外連絡事業은 順調롭게 再開되었습니다. 再開되어 몇 개월 일이 잘 되어 獨立한다기 보다 어떻게 우리 政府가 다시 樹立되어야 하는 마당에 李二德氏가 開城으로 떠났습니다. 客地인 開城에 百萬援軍인 成基錫氏가 高麗의 都邑地에 入城을 하게 됩니다.

楊濟賢氏\의 발길은 서울에서 開城으로, 洪翼範氏와 宋南憲先生님은 開城에서 淸進洞 四子會議로 奔走하였습니다.

短波放送事件의 兩大山脈이 合心하여 民族運動을 展開한 것입니다.

民族運動은 超 스피드로 번져 나갔습니다.

번져 나가는 民族運動을 日警이 坐視만 하고 있을 理가 萬無합니다. 檢舉旋風이 마치 회오리바람과 같이 일기 始作하였습니다.

結果는 다음과 같습니다.

■ 短波放送事件 關聯 被害者

凡例 ① 朝鮮臨時保安法, ② 流言蜚語 流布罪, ③ 陸海軍 刑法, ④ 無線電信法

獄 死 者

姓名 / 本籍	出身校	職業	未決期間	刑量	適用法
洪翼範 / 咸南	美콜롬비아 大卒	東亞日報記者	8個月	2년	①②③
景祺鉉 / 未詳	未詳	民衆醫院醫師	未詳	2년	①②③
李二德 / 平南	美인디아나 州立大	開城放送所長	9個月	2년	①②③
文錫俊 / 咸南	東京高等師範	朝鮮日報經營局長	未詳	1년	①②③
金安邦 / 未詳	未詳	朝鮮放送協會	未詳	1년	④

姓名未詳의 獄死者 1名이 別途로 있음

獄苦를 치르신 분

姓名/本籍	出身校	職業	未決期間	刑量	適用法
成基錫 / 京畿	京城電氣學校	放送人	9個月	2年	①②③
許 憲 / 未詳	未詳	辯護士	未詳	2年	①②③
朴炯完 / 서울	未詳	鐘路日本商會經營	8個月	1年6月	①②③
白 氏 / 京畿	未詳	라디오商會 經營	未詳	1年6月	①②③
廉準模 / 서울	京城電氣學校	放送人	7個月	1年2月	①②③
楊濟賢 / 서울	延禧專門	放送人	未詳	1年	①②③
宋進根 / 京畿	日本早稻田大卒	放送人	7個月	1年	①②③
高漢均 / 京畿	日本明治大卒	人蔘團 經營	未詳	1年	①②③
金東河 / 平北	日本中野無線學教	放送人	未詳	1年	①②③
孫正鳳 / 平北	日本早稻田大卒	放送人	未詳	1年	①②③
崔用熙 / 未詳	未詳	民間人	未詳	1年	①②③
黃文哲 / 咸南	未詳	民主日報記者	未詳	1年	①②③
盧鉉重 / 未詳	未詳	放送人	未詳	1年	①②③
洪鎮奭 / 京畿	未詳	放送人	未詳	1年	①②③
洪瑾鎬 / 未詳	未詳	放送人	5個月	1年	①②③

凡例 ① 朝鮮臨時保安法, ② 流言蜚語 流布罪, ③ 陸海軍 刑法, ④ 無線電信法

獄苦를 치르신 분

姓名 / 本籍	出身校	職業	未決期間	刑量	適用法
金南得 / 未祥	未祥	放送人	未祥	1年	①②③
金健二 / 未祥	未祥	放送人	未祥	1年	①②③
趙琮國 / 京畿	培材學校卒	放送人	6個月	1年	①②③
金鍾浩 / 忠南	未祥	放送人	未祥	1年	④
宋南憲 / 慶北	大邱師範卒	文學家	7個月	1年	④
李昌得 / 京畿	日本中卒	放送人	5個月	8月	①
李根昌 / 未祥	未祥	放送人	2個月	8月	①③④
安弼洙 / 慶南	未祥	朝鮮 / 東亞日報	100日	10月	④
朴龍信 / 京畿	京畿高等卒, 法學專門卒	放送人	8個月	6월	①
朴鎭信 / 全南	京城電氣學校	放送人	5個月	6월	④
宋龍雲 / 未祥	未祥	放送人	7個月	6월	④
朴()祥 / 未祥	未祥	放送人	7個月	6월	④
金貞雄 / 未祥	未祥	放送人	未祥	6월	④
金弼柱 / 서울	未祥平壤大成 平壤	放送人	7個月	6월	④
吳建泳 / 京畿	神學校	勝洞教會堂會長	5個月	6월	①②
韓振東 / 서울	京城電氣學校	放送人	80日	100日	④
陸鍾寬 / 忠北	漢學	農 業	80日	罰金	④
申相雲 / 서울	德壽商高卒	放送人	5個月	罰金	②
趙國煥 / 서울	東京在學中	放送人	7個月	未祥	④
朴斗夏 / 京畿	未祥	松都高普學監	未祥	未祥	③
李教敦 / 京畿	日本大學經濟科	果樹園 經營	未祥	未祥	②
金俊浩 / 京畿	未祥	未祥	未祥	未祥	②
黃瑋淵 / 서울	未祥	未祥	未祥	未祥	②
白英睦 / 未祥	未祥	未祥	未祥	未祥	②
白寬洙 / 全北	日本明治大法大	前東亞日報社長	未祥	未祥	②

凡例 ① 朝鮮臨時保安法, ② 流言蜚語 流布罪, ③ 陸海軍 刑法, ④ 無線電信法

獄苦를 치르신 분

姓名 / 本籍	出身校	職業	未決期間	刑量	適用法
鞠泰一 / 全南	未祥	삼양사	未詳	未詳	②
咸尙勳 / 서울	未祥	著述家	未詳	未詳	②
李海鎭 / 서울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申昌福 / 未祥	未祥	理髮館 主人	未詳	未詳	②
韓永煜 / 未祥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韓雪野 / 未祥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韓昌桓 / 未祥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李增林 / 咸南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姜東模 / 未祥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李俊淳 / 未祥	未祥	未祥	未詳	未詳	②

거짓은 恒常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JODK가 옳은 放送만 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民族運動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放送은 어느 政權集團의 侍女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短波放送事件으로 獄死하신 先烈에겐 勿論 獄苦를 치르시다 祖國의 解放은 보았으나 獨立도 보지 못하고 幽明을 달리하신 분에게 또한 그러한 苦生 끝에 老齡임에도 이 나라 이 民族의 放送을 걱정하시는 분에게 應分の 報勳이 있어 마땅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저절로 생긴게 아닌 KBS는 그 뿌리를 찾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論文도 아니고 野史도 아니고 그렇다고 爐邊談話도 아닌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린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證言

“海外放送을 들은 게 무슨 罪가 되나? 오늘을 사는게 面目이 없다.” 成基錫

외국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며 죄가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군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개성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단파방송사건은 우리 민족의 단순한 일이며, 활로를 찾으려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이야기를 하려면 길니다만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개성에서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지요.

1942년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 그 때 단파수신기로 이이덕씨와 몇 사람이 미국에서 나오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방송을 들어 보았습니다.

방송내용은 그야말로 뽀쩍찌근한 내용이었는데 뉴스도 있고 뉴스 해설도 있었으며 이승만박사의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뉴스에 이어 뉴스해설 그리고 이승만박사의 동포에게 고한다는 방송이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본토를 떠났음으로 늦어도 9, 10월경에는 남태평양 해전이 있겠으며 일본 주변 국가의 독립은 미국을 비롯한 열강이 절대 보장하며 침략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박사는 일본은 패망할 것이므로 고국에 있는 동포는 서로서로 조직을 해서 왜놈 전쟁에 협조하지 말고 항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컷

속말로 전했습니다. 개성까지 멀다 않고 내려온 양제현씨 등에게 알려 줌은 물론 그러한 방송을 단파로 수신하여 중파로 내고자 하는 충격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동경방송을 중계하면서 다이알을 약간 돌리기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데 하면서 괴롭기가 한량 없었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나 자신이 애국심은 있어도 나약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옥중에서 안 일입니다만 말을 전해 준 양제현씨가 송남현씨에게 전해 주고 민족운동 지사인 4자회의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앞 날을 걱정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꾸며 나가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비록 비겁해서 단파방송은 중파방송으로 내지 못한 자신이 지금에 와서는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참으로 숨 막찬 일이었으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당시 느꼈습니다.

교육계와 체육계의 원로이시고 교회의 장로이시기도 한 박도화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송도고보 학감이신 박도화씨도 긴히 할 말이 있으니 나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성방송소 앞 큰길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갔더니 김교돈씨라는 분도 같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본대학을 나온 개성에서 크게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분을 알게 됐는데 큰길에서 만난 세 사람은 그 곳에서 가까운 중국요리집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집에 들어가니 맥주를 한타나 시켜놓고 이것을 다 마시지 않으면 못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주량이 그분들을 따라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박사가 말한 동지의 규합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이덕씨의 사위로 고한경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단파수신기를 그분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이박사는 방송을 통해 젊은 청년은 일본군의 열차를 탈선시키고 군수열차를 폭파하라는 격렬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들은

24~25세의 젊은이가 3~4 사람이 있었는데 안색이 변하고 당장 철도를 폭파하러 나갈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이덕씨도 미국의 제네랄 서비스방송을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물어 보았더니 태평양전쟁은 뉴기니아를 기점으로 해서 비올빈 쪽으로 즉 서쪽으로 우선 전선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솔로몬 해전에서 승전했다고 했는데 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중추부대는 패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공군의 폭격은 없을 것 같고 일본에 대한 것도 미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객지인 개성에서 정확한 정세를 알 수 없어 서울에 올라와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달라졌습니다. 골목마다 일본 놈이 붙인 경고문이 나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

둘째 유언비어를 퍼트린 자는 엄벌에 처하며 그런 자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라.

셋째 세 사람 이상 모이면 안되며 필요한 사람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달라진 서울에서 전에 단과수신기를 만들어 준 박형완이란 사람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종로에 사는 그 사람 집을 갔는데 요즘 집에 자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못 만나면 낭패인데 하면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집 식구들이 저를 알고 있어서 다행히 그날밤 늦게 잠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박형완씨는 귓속말로 정말 놀라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머지 않아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

하게 피졌다.”

이 얼마나 쇼킹한 뉴스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소원은 통일이고 당시의 소원은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어져 종로거리를 지나가는데 내왕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뭔가 수군대는 것 같았습니다. 활기 찬 거리가 아니고 아주 갈아 앉은 거리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총독부도 말 못할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징용기피, 유언비어 유포죄, 통제제품판매죄, 도박죄 등으로 사람을 마구 잡아 넣었는데 통제제품판매죄 이외는 전부 단파방송사건과 관련된 듯 덮어놓고 잡아 가두기 시작하여 탄압의 강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시법으로 제정돼서 대부분이 형을 받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이 망한다는 것을 아신 분들은 일제에 항거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징용이나 노력동원을 나가기보다 직결재판을 받아 형무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942년 11월경 미국방송은 솔로몬 3차해전에서 일본은 패전해서 동남아 각지에 있는 일본군은 보급품이 끊겨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승전의 환호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서 다시 개성으로 가서 그 해 12월 중순경 어느 날인데 경기도 경찰부에서 방송소를 온통 수색하고 이이덕씨를 포승으로 묶어 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섬뜩한 느낌 속에서 저도 다음날 아침에 사이가(齊賀)라는 악질적인 일본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齊賀는 고문은 말할 수 없이 극에 달했으며 단파송수신기를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齊賀는 해외 우리 독립투사 다시 말해 중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와 미국의 이승만박사와 단파로 송수신을 했으니 송수신기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신기도 감추었다가 그들에게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들이 송신기가 아니라는게 확인하게 되어 10개월 간 모진 고문을 받았고 이 이덕씨는 이이덕氏대로 모진 고문 끝에 사경을 헤매게 되고, 홍익범씨도 마찬가지로여서 명분은 병 보석이라는 미명 하에 석방되었읍니다만 그로 인해 다행히 해방 조국을 보기는 하였으나 유명을 달리 하고 말았습니다. 애석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유치장 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에서는 경찰서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서울에 압송되어 경기도 경찰부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 보니 박용신 아나운서도 이미 들어와 있고 방송국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 와 있어 유치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안은 오전 중에 참으로 조용했으며 오후 4시가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면 그때부터 불러 나가 고문을 당하게 되어 몹시 분주했습니다.

말하자면 오후 4시까지 무고한 우리 동포를 마구 잡아 드리기에 바쁘고, 오후 4시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불러내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잡아넣기가 바쁘고 밤에는 사람을 패기가 바빴던 것입니다.

조서라는 것을 써 본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두툼하게 누가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서라는 것을 내밀고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강제로 잡아 지장을 찍게 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만 오늘날까지 산 면목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일제의 악독한 발톱에 짓 눌려 옥사하신 분들과 석방은 되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남긴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3장 성기석(成基錫, 1920. 1. 15 ~ 1990. 4. 7)



증조부 성종영 할아버지 성낙유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살았고, 기석씨는 거주지를 과주로 옮겨 살았다.

1940년 조선방송국(朝鮮放送局)에 기술직으로 근무할 때 단파수신기(短波受信機)를 제작하여 해외방송을 청취하면서 임시정부(臨時政府) 소식과 구미외교부

※ 獨立運動家成基錫先生 遺影 (歐美外交部) 활동을 알게 되어 독립운동 상황을 가진 (家親 성희경)을 통하여 이인(李仁)·조병옥(趙炳玉) 등에게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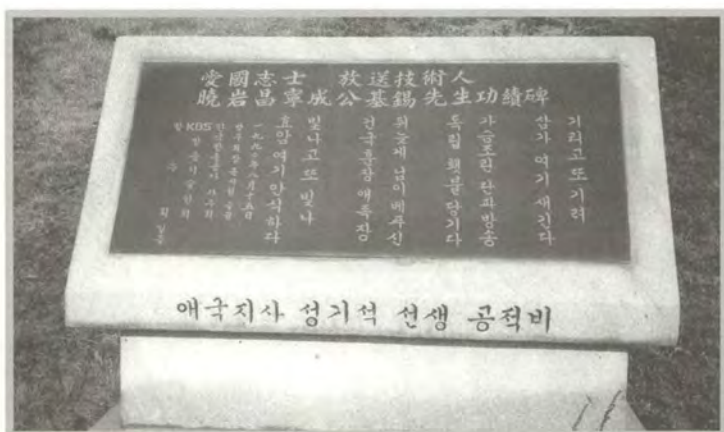
1942년 8월 개성방송소(開城放送所)로 전근되어 소장인 이인덕(李仁德)과 단파수신기를 제작하여 미국과 임시정부의 한국어 방송을 통하여 연합군(聯合軍)의 승전과 광복군(光復軍)의 활동 등 국제정세를 수시로 청취하여 민족지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1942년 12월 27일 일경에게 발각되어 피체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1943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무선전신법(無線傳信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서울중앙방송국(KBS) 앞에 물망비(勿忘碑)가 있으며, 광명시 가학동(장터말)에 묘와 애국지사 묘비(愛國志士 墓碑)가 있다註.

..... 【7】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해외연락사건과 성기석



◆ 성기석 선생 공적비



◆ 광명시 가학동 소재 묘와 애국지사묘비

註・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3卷 314~551面

・韓國電氣通信 100年史(下) 453面 ・韓國放送60年史 73面

・短波放送海外連絡事件(1988. 9. 10 放友會刊) 12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878面 ・昌寧成氏 文南大誌

접 수 번 호	공 적 조 서			
6328				
본 적	京畿 坡州 月籠 內浦 611	주소	서울 鐘路 蓮池 44	
소 속 (독립운동당시)	國內抗日	직위 및 계급	朝鮮放送協會 技術部 技手	
성 명	成 基 錫	생 년 월 일	1920. 1. 15.	사망년월일 1990. 4. 7.
독립운동기간	1943. 3 ~ 1943. 8	활 동 지 역	京畿 開城	
수 형 년 수	懲役 2年	복 역 년 수	1年 11月	
변 절 여 부		추 천 훈 격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1960. 1. 1.	綠條昭星勳章	1977. 2. 16.	文化褒章

조 사 자

소 속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성 명	金 永 吾 ㉠
의 견	<p>1935. 5월부터 1942. 12월까지 朝鮮放送局 技術者로 在職時 短波受信機를 製作하여 海外放送을 聽取하면서 臨政消息과 歐美外交部活動, 聯合國의 勝戰, 光復軍의 活動, 國際情勢 등을 民族指導者들에게 傳達하다가 1942.12.27 全貌가 發覺되어 被逮되어 懲役 2년을 받고, 1945. 8. 15 光復으로 出獄한 功績이 認定되므로 建國勳章受族章에 該當하신 분으로 思料됨.</p>		
<p>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p> <p>1990. 7.</p> <p>국 가 보 훈 처 장</p> <p>총무처장관 귀하</p>			

공 적 사 항

유공자명 : 成 基 錫 이명 : _____

1. 1940年 朝鮮放送局 技術者으로 勤務時 短波受信機를 製作하여 海外放送을 聴取하면서 臨政消息과 歐美外交部活動을 알게 되어 家親을 통하여 李仁, 趙炳玉 등에게 傳達됨.

[新東亞(1988. 3) 590面 參照]

[短波放送海外連絡事件:(1988.9.10 放友會刊) 12面 參照]

2. 1942. 8月 開城放送所로 轉勤되어 所長인 李仁德과 短波受信機를 製作하여 美國과 臨政의 韓國語 放送을 通하여 聯合軍의 勝戰과 光復軍의 活動 등 國際情勢를 隨時로 聴取하여 民族指導者들에게 傳達함.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878面 參照]

[韓國放送 60年史 73面 參照]

[韓國電氣通信 100年史 (下卷) 453面 參照]

3. 1942. 12. 27 日警에게 發覺되어 아나운서인 宋珍根, 朴龍信 등이 被逮되자 全貌가 綻露되어 被逮됨.

[日帝侵略下 韓國 36年史 第13卷 314面 確認]

4. 1943. 9月 京城地方法院에서 所謂 保安法 無線電信法으로 懲役 2年을 받음.

[日帝侵略下 韓國 36年史 第13卷 551面 確認]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878面 參照]

때는 1943년(日帝昭和18年) 9월부터 始作된 일이다. 公은 高校時節부터 短波機製作 組立技術을 가진 天才의 技能所有者였다. 그때 重慶에 있는 臨時政府 우리말 放送에서는 여기는 中國臨時首都에 있는 重慶放送입니다. 各 戰線에서 勇敢奮斗하시는 獨立軍 勇士 여러분 그리고 同胞 여러분 오늘도 敵을 殲滅하는 搜索戰과 奇襲攻擊에 적극 加担하여 다대한 전과를 올리는데 對하여 藏介石總統께서는 우리 臨時政府 金九主席에게 叱하하시고 적극 支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를 비롯하여 每日의 大戰果의 報導와 함께 國內同胞 여러분 抗日運動에 總攪기하자는 힘찬 放送……

電波를 타고 重慶의 臨時政府와 美國의 소리를 타고 들어오는 李承晩 博士의 (VOA) 獨立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國內外同胞는 抗日反日戰線에 總攪기하자는 것과 日帝侵掠軍을 몰아냅시다! 라고 VOA는 격렬하게 愛國獨立志士들의 敢斗할 것을 呼訴하고 있다는 事實을 每日 하루와 같이 秘密히 이불속에서 聽取하여 12名의 同志를 通하여 抗日愛國志士, 知識人, 愛國政治人인 宋鎮禹, 金炳魯, 李仁 等에게 알리어 倭國自體崩壞를 企圖하였던 抗日獨立鬭爭에 앞장선 鬭士요, 主謀者가 바로 成基錫氏이다.

公은 1919(己未)年 11月 26日生이니 獨立運動(己未)의 해에 태어났기에 獨立精神이 몸에 배었다는 一說도 있지만 家門이 自主, 自尊, 自立 精神이 강한 先祖와 父親祖父任의 訓導의 結果라고도 한다.

京城地方法院 西大門拘置所에 拘束된 后裁判이 끝나기까지의 德澤으로 刑期 40日을 남겨 놓고 半송장이된 물골로 出獄하였지만 모진 拷問과 혹독한 몽둥이질 전기고문 등으로 허까지 굶어 반병어리가 되다시피 되었다 한

다. 同志 中에는 李二德(1年 6個月 服役中 死亡), 洪翼範(左同 死亡), 宋南憲(1年刑), 楊濟賢(1年刑), 高漢均(明治大生 1年刑 中 死亡), 廉準模(1年 死亡), 金東河(1年刑), 朴渡信(6月刑), 朴龍信(6月刑), 成基錫(主謀者로 2年 實刑) 아까운 人材로는 李二德氏는 美州立大卒로 개성 방송소장이였고, 洪翼範氏는 美콜롬비아 大卒로서 東亞日報記者出身 愛國志士였는데 獄中에게 間諜으로 몰아 慘殺당한 것이었다 한다. 【昌寧 成氏 文獻誌】■ 成基錫의 家系

禹圭

長子 鍾永

二子 鍾永

字仲亮 號西隱 一八二七年丁亥十一月一日生 乙丑司馬甲戌墓仕建山郡守
數寧府都正 一八九〇年庚寅七月二五日卒 墓始興面南等里場基村現光明市駕鶴洞對峙豐民堂

子 樂濬

子 樂游

字堂吉 號遠庵 一八六五年乙亥三月二三日生 主智始興大廟農員
一八八四年甲申五月四日生 主智普尊出身漢學者 一九六一年辛丑十一月一日卒 墓上同南側
配 康城具氏父念祖 一八八四年甲申一月二〇日生 一九三一年辛未八月一七日卒 墓右同
配 慶州崔氏 一九〇一年辛丑四月二八日生 一九六九年己酉九月二一日卒 墓先墓下

長子 禧慶

生父余谷派樂嘉初名 最慶字致乘 號桑雲 一八八四年甲申五月四日生 主智普尊出身漢學者 一九六一年辛丑十一月一日卒 墓上同南側
配 康城具氏父念祖 一八八四年甲申一月二〇日生 一九三一年辛未八月一七日卒 墓右同
配 慶州崔氏 一九〇一年辛丑四月二八日生 一九六九年己酉九月二一日卒 墓先墓下

長子 基錫

生父文安公派學慶字甫汝 號晚岩 一九一九年己未十一月二六日生 電子學校正公報部課長 一九六〇年二四故送文化賞 一九六一年錄修昭星勳章 九十七年文化獎賞授與故送短波事件主動獎
配 全州李氏父象在一九二四年甲子一〇月三〇日生

長子 用鉉

一九四九年己丑二月四日生 成均館大生 產課長
配 金化金氏 淳姬父升娘 一九五三年一月二日生 大年教員
二子 俊鉉
一九五二年壬辰九月二〇日生 工學博士大學助教授 字瑞日 尚大年
配 密陽朴氏 貞淑父錫媛 一九五九年二月二十二日生 生大學碩士
女夫 密陽朴景東

二子 基完

부록

여 백

【경기도 광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 일람표】

光明地域 3・1獨立運動 參與者 名單

參與者名(이명, 호)	戰時 年齡	出身地 또는 活動地	舉證文獻	備考
金巨奉		京畿 始興	독운(2) 141	
柳志浩		京畿 始興	독자(5) 283	
尹宜炳	1919 / 20才	京畿 始興	독자(5) 282~287	'83 表
		京畿 始興	독운(2) 140・141	
李宗遠	1919 / 56才	京畿 始興	독자(5) 282	
崔正成	1919 / 22才	京畿 始興	독자(5) 283・287	
崔周煥	1919 / 35才	京畿 始興	독자(5) 283・287	
		京畿 始興	독운(2) 140	
崔浩天	1919 / 21才	京畿 始興	독자(5) 282・283・285・286・287	
李永來	1919 / 45才	京畿 始興	독자(5) 279	
			공훈록(2) 234	
李貞石		京畿 始興	독운(2) 140	
			공훈록(2) 242	

◆ 판결문 원본

광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姓名(異名)	生沒年代	出生地(活動)	活動事項	典據	褒賞
成基錫	1920 ~ 1990	파주	국내 독립운동	『독운』(4) 878 『36史』(13) 314-551 『공훈록』(7) 159 『공훈록』(9) 207 『색인』1034	'90 매족장
成禹慶	1842 ~ 1916	광명	국내 독립운동	『창령성씨문헌지』 『시흥군민요재사안』 『시흥직산안행사주본』 『시흥군지』(上) 738 『광명시지』	경기도 향학총감
張元謙	1867 ~?	시흥	의병운동	『독자』(別1) 105 『공훈록』(1) 403	'95 매족장



❖ (좌) 국가 기록문서 보존소에 보존되어있는 판결 선고서 원본. (우) 관보에 실린 판결선고서 상주본

【주요인용문헌 및 약호】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고경』
- 國外容疑朝鮮人名簿(朝鮮總督府警察局) 『국외용의』
- 騎()隨筆(國史編纂委員會) 『기려』
- 大韓季年史(國史編纂委員會) 『계년사』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1~10권) 『독운』(1~10)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1~17) 『독자』(1~17)
- 東國血史(1·2) 『혈사』(1·2)
-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매천』
- 明治百年史業書(金正明)(1·2·31分冊) 『명치』(1-3, 1分)
- 武裝獨立運動秘史(公報處) 『무장』
- 民族運動鬭爭史使料(民族運動研究所) 『투쟁』
- 壁翁金昌淑一代記(心山事業會) 『벽옹』
- 思想情勢視察報告書(社會問題資料研究會, 東京)(1~10) 『사상정세』(1~10)
- 3·1運動秘史(李炳憲) 『비사』
- 殉國(殉國先烈遺族會) 『순국』
- 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京畿道教育委員會) 『우독공』
- 日帝下社會運動人名索引集(여강출판사)(上·下) 『색인』
- 日帝侵掠과 親日派(林鍾國) 『일침』
- 日帝侵掠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36사』
- 臨時政府議政院文書(國會圖書館) 『의정』
- 資料韓國獨立運動(秋憲樹)(1~4) 『추헌수』(1~4)
- 朝鮮民族運動年鑑 『민족』
- 朝鮮統治史料(韓國史料研究所)(1~10) 『통사』
- 親日文學論(林鍾國) 『친일』

- 韓國獨立史(金承學)(上·下)『김승학』(上·下)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한독』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한독(자료)』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독(문일민)』
- 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上·下)『박은식』(上·下)
-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민족』
- 韓國民族運動史料(3·1篇)(國會圖書館)『민족』(3·1)
-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史)殉國烈士傳『인대』
- 抗日殉國烈士傳『의열전』
- 鄉土遺蹟總攷『향총』
- 每鶴遺書(國史編纂委員會)『해학』

【광명지역 삼일운동과 항일농민항쟁사】

지은이_성동수

발행처_광명문화원

발행인_안수남

기획_최영주

주 소_우편번호423-062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산 22번지

홈페이지_<http://gmcc.or.kr>

북디자인_머스터드

발행일_2006년 12월

❖ 이 책자는 광명시의 지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